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18. 12



## INDONESIA

인도네시아 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인도네시아 편 -

2018. 12

---

연구총괄 정다운 부연구위원

연구자 양지영 연구원  
이재선 관세사

# 목차

|  |    |
|--|----|
| 제1편 개관 .....   | 1  |
| I. 일반 개황 .....   | 1  |
| II. 경제 개황 .....  | 5  |
| 1. 주요 경제지표 .....   | 5  |
|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  | 6  |
| 3. 외국인 투자 동향 .....   | 9  |
| III.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   | 14 |
| 1. 한-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 14 |
| 2. 우리나라와의 FTA .....  | 16 |
| 가. 한-ASEAN FTA .....   | 16 |
| 나. 한-인도네시아 CEPA .....  | 20 |
|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 22 |
| 1.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   | 22 |
| 2. 기타 FTA .....  | 24 |
| 제2편 통관제도 .....   | 25 |
|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 25 |
| 1. 관세행정조직 .....  | 25 |
| 가. 관세·소비세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의<br>설립과 기능 ..... | 25 |

|                         |    |
|-------------------------|----|
| 나. 관세·소비세 총국의 조직 .....  | 27 |
| 2. 통관 관련 법 .....        | 30 |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 34 |
| 1. 관세의 과세요건 .....       | 34 |
| 가. 과세물건 .....           | 34 |
| 나. 납세의무자 .....          | 35 |
| 다. 과세표준 .....           | 36 |
| 라. 관세율 .....            | 37 |
| 마. 과세환율 .....           | 38 |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 38 |
| 가. 신고와 납부 .....         | 38 |
| 나. 결정 및 재결정 .....       | 40 |
|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 41 |
| 가. 부가가치세 .....          | 41 |
| 나. 소비세 .....            | 42 |
| 다. 사치품 판매세 .....        | 43 |
| 라. 소득세 .....            | 45 |
| III. 관세평가제도 .....       | 52 |
| 1. 관세평가 .....           | 52 |
|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 53 |
| 가. 거래가격 .....           | 53 |
| 나. 동일물품 거래가격 .....      | 57 |
| 다. 유사물품 거래가격 .....      | 57 |
| 라. 공제가격 .....           | 58 |
| 마. 산정가격 .....           | 60 |
| 바. 대체가격(Fallback) ..... | 60 |
| 3. 관세평가 절차 .....        | 62 |
| 가. 가격심사 .....           | 62 |
| 나. 가격자진신고 .....         | 65 |

|  |     |
|--|-----|
|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도 .....                      | 67  |
| 1. 품목분류 .....                                | 67  |
| 가. 품목분류 체계 .....                             | 67  |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                           | 69  |
| 2. 관세율 제도 .....                              | 71  |
| 가. 관세율 수준 .....                              | 71  |
| 나. 관세율 종류 .....                              | 77  |
| V. 감면 및 환급제도 .....                           | 93  |
| 1. 관세감면제도 .....                              | 93  |
| 가. 면세 .....                                  | 93  |
| 나. 조건부 감면 .....                              | 109 |
| 2. 관세환급제도 .....                              | 121 |
| 가. 과오납 환급 .....                              | 121 |
| 나. 수출용 원재료 환급 .....                          | 123 |
| VI. 원산지 제도 .....                             | 127 |
| 1. 특혜 원산지 규정 .....                           | 127 |
|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                          | 132 |
| VII. 보세제도 .....                              | 135 |
| 1. 보세구역 .....                                | 135 |
| 2.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             | 140 |
| 3.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er) .....     | 141 |
| VIII. 수출입규제 .....                            | 144 |
| 1. 수입규제 .....                                | 144 |
| 2. 수입허가 및 인증 .....                           | 146 |
| 가. 수입허가 .....                                | 146 |
| 나. 국가표준인증(Standard National Indonesia) ..... | 148 |
| 다. 할랄인증 .....                                | 154 |

|                         |     |
|-------------------------|-----|
| 3. 수출규제 .....           | 158 |
| 4. 라벨링 .....            | 159 |
| IX. 행정구제제도 .....        | 164 |
| X. 벌칙 .....             | 168 |
| XI. AEO제도 .....         | 173 |
| 1. AEO 신청 조건 및 절차 ..... | 174 |
| 2. AEO 혜택 .....         | 177 |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 178 |
| I. 수입 통관절차 .....        | 178 |
| 1. 수입 통관절차 .....        | 178 |
| 가. 서류준비 .....           | 178 |
| 나.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    | 180 |
|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 181 |
| 라. 물품반출 .....           | 182 |
| II. 수출 통관절차 .....       | 184 |
| 1. 수출 통관절차 .....        | 184 |
| 참고문헌 .....              | 188 |

## 표 목차

### 제1편

|  |    |
|--|----|
| 〈표 1-II-1〉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                     | 6  |
| 〈표 1-II-2〉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출입 현황 .....           | 6  |
| 〈표 1-II-3〉 2017년 인도네시아 수출입 상위 10개국 .....           | 7  |
| 〈표 1-II-4〉 2017년 인도네시아 수출입 상위 10품목 .....           | 9  |
| 〈표 1-II-5〉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FDI) 현황 .....        | 10 |
| 〈표 1-II-6〉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        | 11 |
| 〈표 1-II-7〉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FDI) 상위 10 국가 ..... | 12 |
| 〈표 1-III-1〉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        | 14 |
| 〈표 1-III-2〉 2017년 인도네시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 .....    | 15 |
| 〈표 1-III-3〉 한-ASEAN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 양허품목 .....       | 18 |
| 〈표 1-III-4〉 2017년 우리나라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 .....    | 19 |
| 〈표 1-IV-1〉 인도네시아 FTA 체결 현황 .....                   | 24 |

### 제2편

|   |    |
|---|----|
| 〈표 2-I-1〉 「인도네시아 관세법」의 구조 .....                   | 32 |
| 〈표 2-II-1〉 인도네시아 소비세율 .....                       | 43 |
| 〈표 2-II-2〉 인도네시아 사치품 판매세 대상 및 세율 .....            | 44 |
| 〈표 2-II-3〉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 세율 .....     | 46 |
| 〈표 2-II-4〉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대상 수출물품 ..... | 51 |

|   |     |
|---|-----|
| 〈표 2-IV-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                    | 72  |
| 〈표 2-IV-2〉 인도네시아 관세율 수준 .....                     | 73  |
| 〈표 2-IV-3〉 인도네시아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        | 74  |
| 〈표 2-IV-4〉 인도네시아 산업별 관세율 수준 .....                 | 75  |
| 〈표 2-IV-5〉 인도네시아 협정관세율 관련 규정 .....                | 79  |
| 〈표 2-VI-1〉 인도네시아 FTA별 불완전 생산물품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  | 130 |
| 〈표 2-VI-2〉 인도네시아 FTA별 원산지 증명서 양식 .....            | 131 |
| 〈표 2-VIII-1〉 인도네시아 반덤핑 현황 .....                   | 145 |
| 〈표 2-VIII-2〉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현황 .....                 | 146 |
| 〈표 2-VIII-3〉 식품통제 책임 정부기관 외 협력 정부기관 및 주요 임무 ..... | 154 |
| 〈표 2-X-1〉 인도네시아의 추정액에 따른 벌금액 .....                | 171 |

### 제3편

|                                      |     |
|--------------------------------------|-----|
| 〈표 3-II-1〉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적용대상과 세율 ..... | 186 |
|--------------------------------------|-----|

## 그림 목차

### 제1편

|  |   |
|--|---|
| [그림 1-I-1] 2010~2017년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변동 추이 ..... | 4 |
|--|---|

### 제2편

|                                      |    |
|--------------------------------------|----|
| [그림 2-I-1]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조직도 ..... | 31 |
|--------------------------------------|----|

|                                 |    |
|---------------------------------|----|
| [그림 2-IV-1] 인도네시아 관세율표 예시 ..... | 77 |
|---------------------------------|----|

|                              |     |
|------------------------------|-----|
| [그림 2-VIII-1] SNI 인증절차 ..... | 153 |
|------------------------------|-----|

|                                 |     |
|---------------------------------|-----|
| [그림 2-VIII-2] 온라인 할랄 인증절차 ..... | 157 |
|---------------------------------|-----|

|                                    |     |
|------------------------------------|-----|
| [그림 2-VIII-3] 돼지고기 함유 라벨링 표시 ..... | 160 |
|------------------------------------|-----|

|                                     |     |
|-------------------------------------|-----|
| [그림 2-VIII-4] 돼지 원재료 접촉 시 라벨링 ..... | 161 |
|-------------------------------------|-----|

|   |     |
|---|-----|
| [그림 2-IX-1] 이의신청서(contoh surat pengajuan keberatan) ..... | 167 |
|---|-----|

|                             |     |
|-----------------------------|-----|
| [그림 2-XI-1] 인도네시아 AEO ..... | 175 |
|-----------------------------|-----|

|                                |     |
|--------------------------------|-----|
| [그림 2-XI-2] 인도네시아 AEO 절차 ..... | 176 |
|--------------------------------|-----|

### 제3편

|                          |     |
|--------------------------|-----|
| [그림 3-I-1] 수입 통관절차 ..... | 178 |
|--------------------------|-----|

|                           |     |
|---------------------------|-----|
| [그림 3-II-1] 수출 통관절차 ..... | 184 |
|---------------------------|-----|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

- 인도네시아의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으로 동남 아시아에 위치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의 군도국가임<sup>1)</sup>
  -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국가로 총섬의 수는 13,466개이며, 그 중 922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
  - 국토의 총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9배인 190만 4,569㎢로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가 적도에 걸쳐 있어서 고온 다습한 열대성 몬순기후를 보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화산활동이 빈번함<sup>2)</sup>
  - 연평균 기온은 25~28℃, 습도는 73~87%이며, 우기(11~2월)와 건기(3~10월)가 구분되나 2010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줄어들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일정치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sup>3)</sup>

---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d.html>(검색일자: 2018. 8. 17)

2)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d.html>(검색일자: 2018. 8. 17)

## 2 제1편 개관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라피, 크라카타우 등 76개의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sup>4)</sup>
  
-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 6,058만)의 인구대국이며, 350여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600여 종에 이룸<sup>5)</sup>
  - 자바족(40.1%), 순다족(15.5%)이 인도네시아의 다수 종족이며, 그 밖에 말레이족(3.7%), 바타족(3.6%), 마두족(3%), 베타위족(2.9%), 미낭카바우족(2.7%), 부기족(2.7%), 화교(1.2%) 등이 있음<sup>6)</sup>
  - 인도네시아의 표준어는 바사하 인도네시아어지만, 영어, 네덜란드어와 자바어 등의 지방어도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사회·생활·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기독교(7%),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 2004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 구조가 확립됨<sup>7)</sup>
  -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5년의 임기를 마치면 재임이 가능하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구성함<sup>8)</sup>
  - 의회는 선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대표회의(상원)와 국민대표회의(하원), 양원 합동회의 성격인 국민평의회로 구성됨<sup>9)</sup>
    -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 기능은 국민대표회의(하원)에만 부여

3) 외교부, 『인도네시아 개황』, 2017. 10, p. 5

4)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d.html>(검색일자: 2018. 8. 17)

5) 외교부(2017), p. 93

6)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d.html>(검색일자: 2018. 8. 17)

7) 외교부(2017), p. 20

8) 외교부(2017), p. 22

9) 외교부(2017), p. 25

되고 지역대표회의(상원)와 국민평의회는 제한적 기능을 수행함

- 법원은 보통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및 행정법원으로 구성되고, 이들 법원은 각각의 1심법원, 항소법원이 존재하며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3심제로 심리함<sup>10)</sup>
  
- 1999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sup>11)</sup>에 의해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지방자치제도 개혁<sup>12)</sup>이 이루어지면서 2005년부터 주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음<sup>13)</sup>
  - 지방정부는 34개 주(Provinsi), 416개 군(Kabupaten), 98개 시(Kota), 7,160개 읍면·구(Kecamatan)로 구분됨<sup>14)</sup>
    - 수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는 특별행정주, 아체와 파푸아 및 서부 파푸아는 특별자치주임
  - 주·군·시의 장은 투표로 선출되지만, 그 아래 행정구역인 읍면·구와 마을(Desa 또는 Kelurahan)의 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임명함
  
- 인도네시아의 화폐단위는 루피아(Rupiah: Rp: IDR)로 2017년 미국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3,380.87루피아임
  - 루피아화는 2011년부터 가치 하락되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비교적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sup>15)</sup>

---

10) 외교부(2017), p. 36

11) Law on Local Government No.22/1999

12) Law on Local Government No.32/2004

13) 외교부(2017),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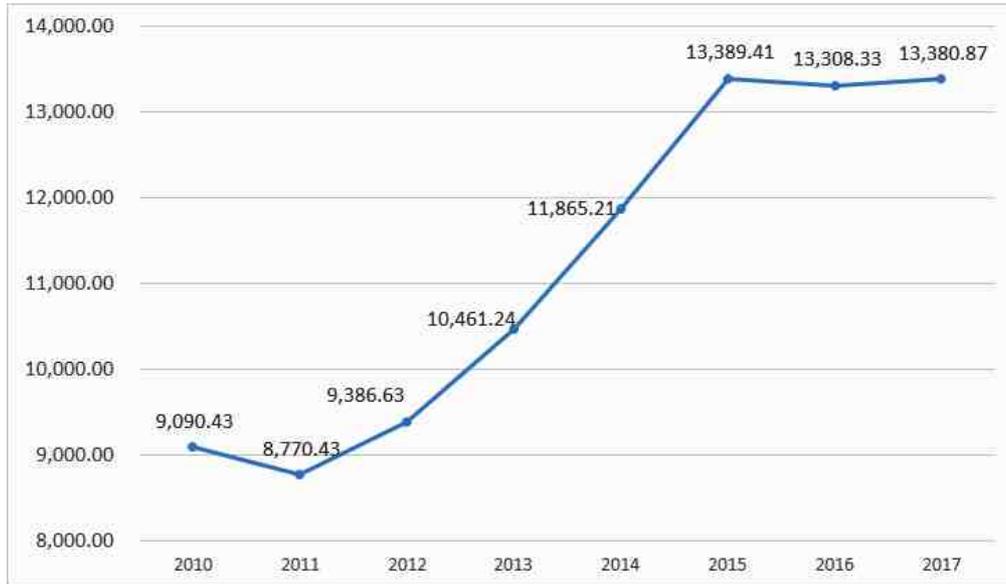
14) 외교부(2017), p. 50

15)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49>(검색일자: 2018. 8. 21)

4 제1편 개관

[그림 1-1-1] 2010~2017년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변동 추이

(단위: IDR/USD)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end=2017&locations=ID&start=2010>(검색일자: 2018. 8. 20)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인도네시아는 6%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 둔화되었으며<sup>16)</sup>, 2016년부터 5%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음
  - 2018년 경제성장률은 5.3%로 2017년의 5.1%보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명목GDP와 1인당 명목GDP 또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각각 9,324억달러, 3,604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각 1조 749억달러, 4,05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증감률은 6.4%를 유지하다가 2016년 3.5%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16) 외교부(2017), p. 77

〈표 1-11-1〉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10억달러, 달러,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sup>1)</sup> |
|-----------|----------|----------|----------|----------|----------|--------------------|
| 명목GDP     | 916.65   | 891.05   | 860.74   | 932.45   | 1,015.41 | 1,074.97           |
| 1인당 명목GDP | 3,684.00 | 3,533.61 | 3,369.36 | 3,604.28 | 3,875.77 | 4,051.65           |
| 경제성장률     | 5.6      | 5.0      | 4.9      | 5.0      | 5.1      | 5.3                |
| 소비자물가증감률  | 6.4      | 6.4      | 6.4      | 3.5      | 3.8      | 3.5                |

주: 전망치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IDN>;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IDN>;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IDN](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IDN);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IDN](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IDN)(검색일자: 2018. 8. 21)

##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17년 인도네시아의 총교역액은 3,257억달러로 총수출액 1,688억달러, 총수입액 1,56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19.1억달러 흑자를 보임
- 2015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2013년 이후 수출 및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교역액도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였음<sup>17)</sup>
- 2017년에는 수출 및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도 2016년 89.7억달러, 2017년 119.1억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표 1-11-2〉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 구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금액      | 증감률 <sup>1)</sup>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수출 | 1,825.5 | -3.9              | 1,762.9 | -3.4 | 1,502.8 | -14.8 | 1,444.9 | -3.9 | 1,688.0 | 16.8 |
| 수입 | 1,864.4 | -2.7              | 1,780.0 | -4.5 | 1,425.7 | -19.9 | 1,355.2 | -4.9 | 1,569.0 | 15.8 |

17) 외교부(2017), p. 80

| 구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금액      | 증감률 <sup>1)</sup>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교역규모 | 3,689.9 | -3.3              | 3,542.8 | -4.0 | 2,928.5 | -17.3 | 2,800.1 | -4.4 | 3,257.0 | 16.3 |
| 무역수지 | -38.9   | -                 | -17.1   | -    | 77.0    | -     | 89.7    | -    | 119.1   | -    |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검색일자: 2018. 8. 22)

- 2017년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년 대비 37%의 증가를 보인 230.5억달러 규모를 수출함
  -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순으로 많은 수출을 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전년 대비 39.5%가 증가한 140.8억달러를 기록함
  
- 2017년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입국 또한 중국으로 357.7억달러임
  -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중국의 뒤를 이었으며, 9번째로 많은 수입을 한 인도의 경우 전년 대비 40.9%가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17년 수출 81.9억달러, 수입 81.2억달러를 기록, 이는 수출과 수입 모두 7위 규모임
  -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이 16.8%로 對세계 수출 증감률 16.8%와 동일하였고, 수입은 21.7%가 증가하여 對세계 수입 증감률 15.8%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표 1-II-3〉 2017년 인도네시아 수출입 상위 10개국

(단위: 억달러, %)

| 수출 |     |       |                   | 수입 |      |       |      |
|----|-----|-------|-------------------|----|------|-------|------|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증감률 <sup>1)</sup>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증감률  |
| 1  | 중국  | 230.5 | 37.3              | 1  | 중국   | 357.7 | 16.1 |
| 2  | 미국  | 178.1 | 10.1              | 2  | 싱가포르 | 168.9 | 16.1 |

8 제1편 개관

| 수출 |       |       |                   | 수입 |       |       |      |
|----|-------|-------|-------------------|----|-------|-------|------|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증감률 <sup>1)</sup>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증감률  |
| 3  | 일본    | 177.9 | 10.5              | 3  | 일본    | 152.4 | 17.4 |
| 4  | 인도    | 140.8 | 39.5              | 4  | 태국    | 92.8  | 7.1  |
| 5  | 싱가포르  | 127.7 | 13.5              | 5  | 말레이시아 | 88.0  | 22.2 |
| 6  | 말레이시아 | 84.7  | 19.0              | 6  | 미국    | 81.5  | 11.4 |
| 7  | 한국    | 81.9  | 16.8              | 7  | 한국    | 81.2  | 21.7 |
| 8  | 필리핀   | 66.3  | 25.7              | 8  | 호주    | 60.1  | 14.3 |
| 9  | 태국    | 64.6  | 19.8              | 9  | 인도    | 40.5  | 40.9 |
| 10 | 대만    | 42.2  | 15.5              | 10 | 독일    | 35.4  | 12.0 |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Ctr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8. 22)

- 2017년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팜유(정제한 것)로 138.1억달러를 수출하였음
  - 그 외에 유연탄, 무연탄, 기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갈탄 등 광물성연료의 수출규모가 컸음
  
- 2017년 최대 수입품목은 92.6억달러 규모의 경질유와 조제품이며, 석유와 역청유, 기타 경질유와 조제품이 그 뒤를 이어 액체연료의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화기의 부분품이 35.1억달러로 4순위의 교역규모를 보였으며, 밀, 사탕수수당, 대두의 오일케이크 등 농업생산품이 그 뒤를 이었음
  - 액화한 부탄과 프로판도 각각 14.3억달러, 12.7억달러를 수입하여 상위 순위를 기록하였음

〈표 1-11-4〉 2017년 인도네시아 수출입 상위 10품목<sup>1)</sup>

(단위: 억달러, %)

| 수출 |                  |        |                   | 수입 |                 |       |      |
|----|------------------|--------|-------------------|----|-----------------|-------|------|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sup>2)</sup>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
| 1  | 팜유와 그 분획물(원유 제외) | 138.15 | 24.9              | 1  | 경질유와 조제품        | 92.65 | 36.8 |
| 2  | 기타 석탄            | 104.82 | 60.5              | 2  | 석유와 역청유         | 70.64 | 4.9  |
| 3  | 유연탄              | 73.80  | 15.9              | 3  |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 48.54 | 53.3 |
| 4  | 무연탄              | 61.85  | 20.2              | 4  | 전화기 부분품         | 35.12 | 22.3 |
| 5  | 석유와 역청유          | 52.38  | 0.8               | 5  | 기타 밀과 메슬린       | 26.37 | 13.5 |
| 6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     | 49.60  | 53.0              | 6  | 기타 사탕수수당        | 20.18 | 1.2  |
| 7  | 팜 원유             | 46.98  | 42.1              | 7  | 대두의 오일케이크       | 16.42 | 4.3  |
| 8  | 구리광과 그 정광        | 34.40  | -1.2              | 8  | 부탄(액화한 것)       | 14.31 | 56.9 |
| 9  | 천연가스 (가스 상태)     | 26.00  | 40.8              | 9  | 면(카드·코움하지 않은 것) | 13.25 | 21.9 |
| 10 | 갈탄(응결시키지 않은 것)   | 25.94  | 60.8              | 10 | 프로판 (액화한 것)     | 12.75 | 69.5 |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ItemImpExpList.screen?ctr\\_cd=ID](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ItemImpExpList.screen?ctr_cd=ID)(검색일자: 2018.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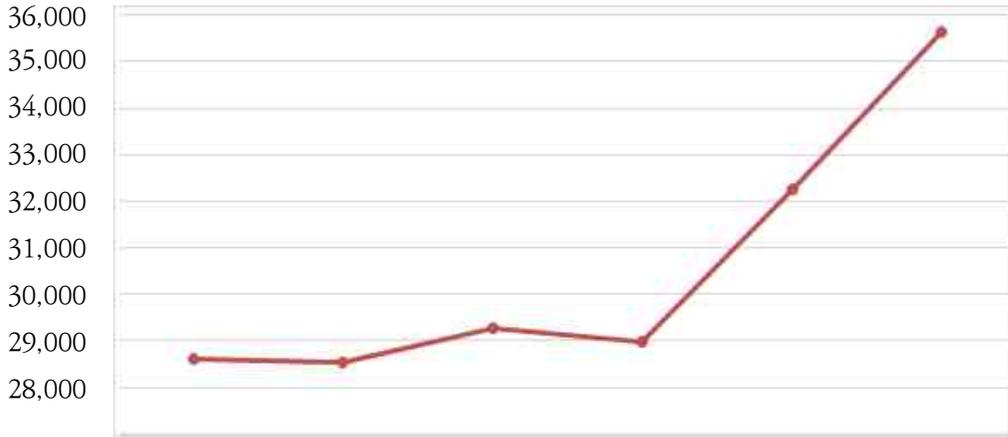
### 3. 외국인 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32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2018년 외국인 투자 목표치를 356억달러로 설정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 이후 약 28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22억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1-11-5〉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sup>1)</sup>    |
|-------------------|----------|----------|----------|----------|----------|------------------------|
| FDI               | 28,617.5 | 28,529.7 | 29,275.9 | 28,964.1 | 32,239.7 | 35,626.9 <sup>2)</sup> |
| 증감률 <sup>3)</sup> | 16.5     | -0.3     | 2.6      | -1.1     | 11.3     | 10.5                   |

주: 1) 목표치

2) 477조 4천억루피아로 2018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 환율인 US\$ 1= Rp. 13,400 적용

3)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Statistic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Based On Capital Investment Activity Report by Sector 2017," 2017;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I and January-June 2018," 2018. 8, p. 4

- 2017년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광업으로 43.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광업은 2013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항상 4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기록하였음
- 2017년 기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약 13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특히 3차 산업은 최근 5년간 투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2013년 화학 및 의약품, 금속·기계 및 전자 산업, 자동차 및 운송기기 등 제조 산업이 투자를 이끈 반면, 2017년은 전기·가스·수도 공급, 부동산·산업단지·사무공간 등의 분야 투자액이 크게 상승하였음

〈표 1-11-6〉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분야              | 2013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1차 산업           | 6,471.8  | 6,991.3  | 6,236.4  | 4,502    | 6,076.1  |
| 농업              | 1,605.3  | 2,206.7  | 2,072.0  | 1,589.1  | 1,433.1  |
| 축산업             | 11.3     | 30.8     | 75.1     | 48.9     | 159.7    |
| 임업              | 28.8     | 53.3     | 19.0     | 78.2     | 48.1     |
| 수산업             | 10.0     | 35.3     | 53.1     | 43.3     | 59.3     |
| 광업              | 4,816.4  | 4,665.1  | 4,017.2  | 2,742.4  | 4,375.9  |
| 2차 산업           | 15,858.8 | 13,019.3 | 11,763.1 | 16,687.6 | 13,148.6 |
| 식품              | 2,117.7  | 3,139.6  | 1,521.2  | 2,115.0  | 1,970.3  |
| 섬유              | 750.7    | 422.5    | 433.4    | 321.3    | 372.2    |
| 가죽 및 신발         | 96.2     | 210.7    | 161.6    | 144.4    | 368.9    |
| 목재              | 39.5     | 63.7     | 47.1     | 267.5    | 395.7    |
| 지류 및 인쇄         | 1,168.9  | 706.5    | 706.9    | 2,786.6  | 595.6    |
| 화학 및 의약품        | 3,142.3  | 2,323.4  | 1,955.7  | 2,889.1  | 2,578.5  |
| 고무 및 플라스틱       | 472.2    | 543.9    | 694.5    | 737.3    | 633.1    |
| 비금속 광물          | 874.1    | 916.9    | 1,302.8  | 1,076.0  | 671.7    |
| 금속, 기계 및 전자     | 3,327.1  | 2,471.9  | 3,092.5  | 3,897.1  | 3,781.6  |
| 의료기기 및 광학용품, 시계 | 26.1     | 7.2      | 6.9      | 8.8      | 5.3      |
| 자동차 및 기타 운송기기   | 3,732.2  | 2,061.3  | 1,757.3  | 2,369.3  | 1,271.4  |
| 기타              | 111.7    | 151.8    | 83.2     | 75.2     | 504.3    |
| 3차 산업           | 6,286.9  | 8,519.2  | 11,276.5 | 7,774.6  | 13,015.0 |
|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 2,221.8  | 1,248.8  | 3,028.9  | 2,139.6  | 4,241.4  |
| 건설              | 526.8    | 1,383.6  | 954.5    | 186.9    | 224.7    |
| 무역              | 606.5    | 866.8    | 625.1    | 670.4    | 1,294.1  |
| 호텔 및 식당         | 462.5    | 513.1    | 650.2    | 887.8    | 1,089.6  |
| 운송, 보관 및 통신     | 1,449.9  | 3,000.9  | 3,289.9  | 750.2    | 1,899.6  |
| 부동산, 산업단지, 사무공간 | 677.7    | 1,168.4  | 2,433.6  | 2,321.5  | 2,873.7  |
| 기타              | 341.7    | 337.5    | 294.3    | 818.2    | 1,391.9  |
| 총계              | 28,617.5 | 28,529.7 | 29,275.9 | 28,964.1 | 32,239.7 |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Statistic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Based On Capital Investment Activity Report by Sector 2017," 2017.

12 제1편 개관

-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2017년 84억달러를 투자하였음
  - 2017년 기준 일본, 중국, 홍콩,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뒤를 이었으며, 중국의 경우 2015년 6.2억달러에서 2017년 33.6억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였음

〈표 1-Ⅱ-7〉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FDI) 상위 10 국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
|    | 국가명   | 금액      | 국가명   | 금액      | 국가명   | 금액      |
| 1  | 싱가포르  | 5,901.1 | 싱가포르  | 9,178.7 | 싱가포르  | 8,441.6 |
| 2  | 말레이시아 | 3,076.9 | 일본    | 5,400.9 | 일본    | 4,996.2 |
| 3  | 일본    | 2,876.9 | 중국    | 2,665.3 | 중국    | 3,361.2 |
| 4  | 네덜란드  | 1,307.7 | 홍콩    | 2,248.3 | 홍콩    | 2,116.5 |
| 5  | 한국    | 1,213.4 | 네덜란드  | 1,475.0 | 한국    | 2,024.6 |
| 6  | 홍콩    | 937.2   | 미국    | 1,161.9 | 미국    | 1,992.8 |
| 7  | 미국    | 893.1   | 버진군도  | 1,157.3 | 네덜란드  | 1,489.4 |
| 8  | 버진군도  | 730.5   | 말레이시아 | 1,115.6 | 말레이시아 | 1,213.6 |
| 9  | 중국    | 628.3   | 한국    | 1,065.8 | 모리셔스  | 1,056.6 |
| 10 | 영국    | 503.2   | 모리셔스  | 576.5   | 버진군도  | 844.8   |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5,” 2016. 1, p. 26;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6,” 2017. 1, p. 20;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7,” 2018. 1, p. 20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 간소화, 조세감면제도 적용 확대, 소득세 기초공제 요건 변경 등의 혜택을 개편하였음<sup>18)</sup>

18)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6784>(검색일자: 2018. 8. 27)

-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으나 2017년 12월부터 투자자등록으로 대체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투자허가 절차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2018년 4월부터 효력이 시작된 재무부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등 직접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폭이 확대되었음
  -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감면이 기투자자에게도 확대되었으며, 감세 범위가 철폐되어 모든 산업군에 대해 100%까지 감세가 허용됨
- 또한 산업부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 고용인원,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원재료의 사용 여부 등 소득세 기초공제 요건이 개정됨
  - 다만 재무부를 통하여 감면받은 경우 산업부의 소득세 기초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Ⅲ.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 1. 한-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2017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로 81.9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우리나라로부터 81.2억달러를 수입하여 0.7억달러의 흑자를 보였음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은 2011년 300억달러<sup>19)</sup>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 160억달러로 급감한 후 하락폭이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음
- 2016년 우리나라와 무역수지는 3.3억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나 무역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의 흑자이며, 2017년 무역규모가 증가하자 흑자규모도 0.7억달러로 감소하였음

〈표 1-Ⅲ-1〉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 구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금액    | 증감률 <sup>1)</sup>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수출 | 114.2 | -24.1             | 106.2 | -7.0 | 76.5 | -28.0 | 70.1 | -8.4 | 81.9 | 16.8 |

19) 수출 172.1억달러, 수입 135.6억달러

| 구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금액    | 증감률 <sup>1)</sup>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수입   | 115.9 | -3.2              | 118.5 | 2.2  | 84.3  | -28.9 | 66.7  | -20.8 | 81.2  | 21.7 |
| 교역규모 | 230.1 | -14.8             | 224.7 | -2.4 | 160.8 | -28.4 | 136.8 | -14.9 | 163.1 | 19.2 |
| 무역수지 | -1.7  | -                 | -12.3 | -    | -7.8  | -     | 3.3   | -     | 0.7   | -    |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18. 8. 22)

- 2017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석유 조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였음
  -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광물성원료의 수출이 35.5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구리, 주석과 같은 광물과 고무, 합판, 펄프, 팜유와 같은 식물성 생산품이 상위를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로부터 석유·경질유, 조제품을 8.8억달러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준임
  - 그 외에 군함, 전자집적회로의 수입이 약 2억달러 정도 이루어졌으며,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등 합성고무의 수입이 많았음

〈표 1-Ⅲ-2〉 2017년 인도네시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sup>1)</sup>

(단위: 억달러, %)

| 수출 |                 |       |                   | 수입 |                   |      |      |
|----|-----------------|-------|-------------------|----|-------------------|------|------|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sup>2)</sup>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
| 1  | 천연가스<br>(액화한 것) | 13.41 | 1.9               | 1  | 기타 석유와<br>역청유 조제품 | 5.73 | 32.5 |
| 2  | 기타 석탄           | 12.88 | 66.3              | 2  | 경질유와 조제품          | 3.07 | 25.3 |
| 3  | 유연탄             | 5.43  | 27.6              | 3  | 군함                | 1.98 | 0.0  |
| 4  | 구리광과<br>그 정광    | 4.24  | 3.7               | 4  | 기타<br>전자집적회로      | 1.92 | 54.3 |

16 제1편 개관

| 수출 |                       |      |                   | 수입 |                                    |      |         |
|----|-----------------------|------|-------------------|----|------------------------------------|------|---------|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sup>2)</sup> | 순위 | 품목명                                | 금액   | 증감률     |
| 5  | 석유와 역청유               | 3.79 | 36.8              | 5  |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 미만)         | 1.64 | 124.4   |
| 6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          | 3.27 | 41.1              | 6  |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 1.63 | 49.1    |
| 7  | 주석의 괴                 | 1.88 | 97.1              | 7  | 부타디엔 고무                            | 1.28 | 54.6    |
| 8  | 합판(적어도 한쪽 외면이 열대산 목재) | 1.85 | 55.3              | 8  | 철·비합금강의 반제품(횡단면 직사각형)              | 1.03 | 1,031.4 |
| 9  | 활엽수류로 만든 화학목재펠프       | 1.73 | 10.0              | 9  | 이소시아네이트                            | 1.03 | 63.7    |
| 10 | 팜유와 그 분획물 (원유 제외)     | 1.34 | 7.4               | 10 |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0.5mm~1mm)      | 1.03 | 8.4     |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ItemImpExpList.screen?ctr\\_cd=ID](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ItemImpExpList.screen?ctr_cd=ID)  
(검색일자: 2018. 8. 22)

## 2. 우리나라와의 FTA

### 가. 한-ASEAN FTA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국가로 한-ASEAN FTA가 2007년 6월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되었음

○ 아세안은 총10개 회원국<sup>20)</sup>에 5억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우리나라에는 미

2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의 하나로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FTA임<sup>21)</sup>

-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한-ASEAN FTA는 모든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여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어느 품목군에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분류됨<sup>22)</sup>

- 민감품목군에 분류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국으로부터의 2004년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수는 HS 6단위로 200개로 제한되며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음<sup>23)</sup>

□ 인도네시아는 총 5,224개 품목 중 4,760개 품목(수입액 기준 90.43%)을 일반품목군으로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하였으며, 464개 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그 중 40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였음

-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송신기기, 에틸렌 중합체, 전기기기 부분품 등이 있으며, 민감품목군에는 다량어, 새우, 면제품 등이 포함되었음

21)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1/1/>(검색일자: 2018. 8. 28)

22)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4, pp. 43~44

23)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에만 적용되며,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은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표 1-III-3〉 한-ASEAN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 양허품목

| 구분    | 품목    | 일반품목군                  | 민감품목군                   | 초민감품목               |                   |
|-------|-------|------------------------|-------------------------|---------------------|-------------------|
|       |       |                        |                         |                     | 양허 제외             |
| 기준    | 품목 수  | 90%(4,702개) 초과         | 10%(522개) 이하            | 200개 이하             | 40개 이하            |
|       | 수입액   | 90% 초과                 | 10% 이하                  | 3%                  | -                 |
| 인도네시아 | 품목 수  | 91.12%(4,760개)         | 8.88%(464개)             | 156개                | 40개               |
|       | 수입액   | 90.43%                 | 9.57%                   | 2.93%               | -                 |
|       | 주요 품목 | 송신기기, 에틸렌 중합체, 전기기기부분품 | 다랑어, 새우, 사카린, 면제품, 연화비닐 | 천연진주, 평판압연제품, 철강금속제 | 쌀, 맥주, 발효주, 폐의료용품 |

자료: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4, p. 54

- 한-ASEAN FTA는 품목군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는데, 일반품목군은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며<sup>24)</sup>, 민감품목군 중 일반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여야 함<sup>25)</sup>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6개국은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합의품목은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철폐가 유예됨
  - 초민감품목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각각 2016년까지 50% 이하, 20% 이상, 50% 이상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최소수입물량의 적용 또는 양허 제외대상이 됨
  
- 한-ASEAN FTA는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을 기한, 품목 등만 열거하고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 세율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2016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2015년 8월 개최된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은 한-ASEAN FTA 상품

24)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25)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고, 개정의정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아세안 일부 국가 간 발효됨<sup>26)</sup>

-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재무부 규정<sup>27)</sup>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제3차 개정의정서가 발효됨

- 개정의정서는 수출입업자들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 기업별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 사전심사 조항 도입, 상호주의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감축일정 등을 포함함

□ 우리나라는 ASEAN 국가<sup>28)</sup>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중 수출 46.1%, 수입 75.5%가 한-ASEAN FTA를 활용하였음

-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475억달러 중 FTA 특혜대상 품목은 158.8억달러에 해당하며, 그 중 46.1%인 73.1억달러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반면 총 376.4억달러의 물품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였으며, 177.4억달러의 FTA 특혜대상 품목 중 134억달러의 품목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음

〈표 1-III-4〉 2017년 우리나라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 구분 | 총금액        | FTA 특혜대상   | C/O 발급액/<br>FTA 적용 | 활용률 <sup>1)</sup> |
|----|------------|------------|--------------------|-------------------|
| 수출 | 47,503,192 | 15,882,107 | 7,316,152          | 46.1              |
| 수입 | 37,642,326 | 17,744,189 | 13,403,791         | 75.5              |

주: 1) 수출 활용률 =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100

수입 활용률 = FTA 특혜 적용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100

자료: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 2. pp. 12~13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2017. 6. p. 34

2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4/PMK.010/2017

28)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가 체결됨에 따라 집계에서 제외

## 나. 한-인도네시아 CEPA

-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한 시 양자간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상품·서비스·투자 장벽 철폐 및 완화, 무역원활화,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양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추진함<sup>29)</sup>
  - 2011년 5월~10월 간 양자간 FTA 협정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함
  
-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2012년 7월 자카르타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로 중단됨<sup>30)</sup>
  - 상품 분야에서 양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수준 문제 및 인도네시아 측의 투자 확대 요구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하여 양 국가 간 이견이 있었음<sup>31)</sup>
  -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있었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 내부 협상안 마련이 지연되어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기로 함<sup>32)</sup>
  - 다자협상에서 반영이 곤란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양자협정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공조기로 함

29) 외교부(2017), p. 111

30) 외교부(2017), p. 111

3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 결과」, 2014. 3. 4.

3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2018. 11. 15.

- 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sup>33)</sup>
-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산 비중 약 97%(한국 약 0.2%)로 사실상 일본의 독점시장<sup>34)</sup>이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면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33)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한-인도네시아 CEPA』, 2018. 11, p. 5

3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 개최」, 2018. 8. 24.

##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1.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는 상품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체결함<sup>35)</sup>
  - 「ATIGA」는 상품의 관세철폐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비관세 장벽, 무역 원활화, 기술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6개국<sup>36)</sup>은 2010년까지, 후발 아세안 국가<sup>37)</sup>는 2015년까지<sup>38)</sup>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함<sup>39)</sup>
  -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아세안 역내관세는 품목 수 기준 95.99%가 무세이며, 아세안 6개국은 99.2%, 후발 아세안 국가는 90.9%의 수입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함<sup>40)</sup>

35) 한국무역협회,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 『Trade Brief』, 제67호, 2015. 12. 31, p. 3

36)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3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38) 2018년까지 유예될 수 있음

39) 「ATIGA」 제19조 1항

- 아세안 국가 간 비관세 조치는 WTO 또는 ATIGA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채택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되며<sup>41)</sup>, 3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함<sup>42)</sup>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2008년, 2009년, 2010년의 3단계로 철폐하여야 함
  - 필리핀은 2010년, 2011년, 2012년에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져야 함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3년, 2014년, 2015년의 3단계 철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2018년까지 유예가 가능함
  
- 아세안 국가는 무역 원활화 작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세 절차, 무역 규정 및 절차, 표준 및 적합성,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표준화 및 통일을 꾀하고,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를 마련하기로 합의함<sup>43)</sup>
  - 아세안 단일창구란 한 번의 절차로 통관과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형태임<sup>44)</sup>
    - 아세안 단일창구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역내 원산지 증명서(ATIGA Form D)와 아세안 세관신고서류 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를 아세안단일창구와 연동 완료하였음<sup>45)</sup>
    - 인도네시아는 국가단일창구인 Indonesia Single Window(<http://www.insw.go.id>)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 무역기록관(ASEAN Trade Repository)을 설치하여 교역 및 통관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규제의 투명성 및 거래의 확실성을 높여 함<sup>46)</sup>

40) 한국무역협회(2015), p. 3

41) 「ATIGA」 제40조 1항

42) 「ATIGA」 제42조 2항

43) 「ATIGA」 제46조

44) 광성일·김제국,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제16-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2, p. 8

45) 한국무역협회(2015), p. 4

- 무역기록관에는 관세품목분류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s: MFN) 세율, 협정세율, 원산지 규정, 비관세 조치, 국내 무역 및 통관 법령 및 규정, 절차 및 서류요건, 행정 판결, 무역 원활화 사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47)</sup>
  - 인도네시아는 국가무역기록관으로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http://eservice.insw.go.id>)를 운영하고 있음

## 2. 기타 FTA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아세안이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 파키스탄과는 단독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또한 EFTA, 호주, 한국,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칠레, EU와는 FTA를 협상 중임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위한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 협상 참여국 정상 간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18년 7월 현재 제23차 공식협상을 개최함

〈표 1-Ⅳ-1〉 인도네시아 FTA 체결 현황

|    | 발효  | 협상 중  | 검토 중                              |
|----|---|---|-----------------------------------|
| 다자 |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 RCEP  | 캐나다, EAEU                         |
| 양자 | 일본 EPA <sup>1)</sup> , 파키스탄 PTA <sup>2)</sup> | EFTA CEPA, 호주 CEPA, 한국 CEPA, 인도 CECA <sup>3)</sup> , 칠레 FTA, EU FTA | 터키 FTA, 페루 FTA, GCC, 이집트, 미국, 튀니지 |

주: 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3)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자료: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검색일자: 2018. 8. 29)

46) 광성일·김제국(2016), p. 8

47) 「ATIGA」 제13조 2항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1. 관세행정조직

##### 가. 관세·소비세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의 설립과 기능

- 인도네시아의 관세 및 소비세의 행정조직은 네덜란드 식민시대에 동인도회사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음<sup>48)</sup>
  - 왕국시절에도 세관 조직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서면 기록은 없으며, 지역적 단위의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 동인도회사 시대에 세관원을 지칭하는 Douane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소비세와 수입·수출·소비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임무를 수행함
  -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34년에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를 담당하는 업무는 폐지

---

48)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abt/sejarah-bea-dan-cukai.html>(검색일자: 2018. 8. 30)

되고, 소비세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현대적 의미의 관세 및 소비세 행정조직은 1946년 설립된 관세·소비세 본부라 할 수 있음<sup>49)</sup>
  - 1948년 관세·소비세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세·소비세 총국으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 관세·소비세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JB C50)은 재무부 산하에서 무역과 산업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 밀수와 거래로부터 국경과 국민을 보호하며, 관세 및 소비세의 세수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sup>51)</sup>
  -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 관세 및 소비세 관련 절차의 간소화,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수출입 물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및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감독하고, 방지함으로써 사회, 국내산업 및 국익을 보호함
  -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용, 정보의 활용, 강력한 관세 및 소비세 심사를 통하여 수출·입, 관세 및 소비세 관련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
  - 소비세 수단을 통하여 보건,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물품의 생산, 판매, 소비를 제한, 관리, 규제함
  - 수입관세, 수출관세, 소비세를 통하여 정부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

49)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abt/sejarah-bea-dan-cukai.html> (검색일자: 2018. 8. 30)

50)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51)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abt/visi-misi-dan-fungsi-utama.html>(검색일자: 2018. 8. 30)

## 나. 관세·소비세 총국의 조직

- 관세·소비세 총국의 조직과 역할은 대통령령<sup>52)</sup>에 의하여 규정하며, 총국을 구성하는 각 부서의 구조 및 역할은 재무부 규정<sup>53)</sup>에 명시됨
  
- 관세·소비세 총국장은 관세·소비세국의 리더로서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감독, 법 집행, 정부 세수의 최적화 업무를 담당함<sup>54)</sup>
  -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감독, 법 집행, 정부 세수의 최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
  - 또한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감독, 법 집행, 정부 세수의 최적화에 관한 규범·표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기술지도·감독, 감시·평가를 수행함
  - 그 외에 관세·소비세국의 행정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사무국은 관세·소비세 총국장의 임무 수행을 조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개발·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sup>55)</sup>
  - 관세·소비세 총국장의 활동 조정
  - 관세·소비세 총국의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국유자산 관리
  - 관세·소비세 총국의 행정, 내무, 통신 및 기록 보관
  
- 관세업무국은 수출입, 상품의 식별 및 분류, 수입관세율, 과세가격 및 가격 데이터 분야의 정책 수립, 표준화 및 기술 지침 마련, 이행 평가를 수행함<sup>56)</sup>
  - 다음 분야의 정책 수립, 표준화 및 기술 지침 마련, 이행 평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함

52) Presidential Regulation No. 28 of 2015

5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54) Presidential Regulation No. 28 of 2015 제19조 내지 제21조

5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691조 내지 제692조

5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718조 내지 제719조

- 수출입, 임시보관, 통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세관 서비스 우선 사용자 등 특혜 프로그램
  - 덤핑방지관세, 보상관세, 안보관세, 보복관세, 긴급조치 및 수출관세를 위한 물품의 식별 및 분류
  - 과세가격 및 가격 데이터의 축적 및 갱신
  - 기타 관세업무국의 행정업무
- 관세편의국은 관세편의 분야에서의 정책 및 표준을 수립하고 이행함<sup>57)</sup>
- 관세편의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소비세업무·편의국은 소비세 분야의 정책 및 표준을 수립하고 이행함<sup>58)</sup>
- 소비세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관세국제협력국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관세, 소비세, 무역 분야의 국제협력 정책과 표준을 수립, 이행, 평가하고 기술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sup>59)</sup>
-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관세, 소비세, 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규범·표준·절차·기준을 마련함
  - 또한 이와 관련한 기술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평가를 수행함
  - 해외에 주둔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훈련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이행함
  - 관세 및 소비세와 관련된 언론, 정보제공, 간행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표준·기술 지침을 제공하며 평가를 수행함

5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746조 내지 제747조

5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770조 내지 제771조

5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790조 내지 제791조

- 관세불복·규정국은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이의제기·항소·법적구제조치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 및 기술 지침을 마련하며, 관세·소비세 총국의 직무·기능·정책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설계·시행함<sup>60)</sup>
  - 또한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이의제기·항소·법적구제조치 관련 정책을 평가함
  - 관세 및 소비세 규정, 관세·소비세 총국의 직무·기능·정책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평가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함
  
- 관세·서비스 정보국은 정보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 및 기술 지침을 마련하며 이를 이행하고 평가함<sup>61)</sup>
  - 정보시스템의 기획·전략·개발, 안전 관리, 서비스 관리, 데이터 관리·서비스 정책의 수립·이행·평가를 담당함
  
- 내부규정 준수국은 내부규정 준수 정책과 표준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함<sup>62)</sup>
  - 또한 내부규정 준수 분야의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관세·소비세 심사국은 관세 및 소비세 심사, 재심사, 품질보증 정책과 표준을 수립하고 이행함<sup>63)</sup>
  - 관세 및 소비세 심사, 재심사, 품질보증 부분의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6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813조 내지 제814조

6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834조 내지 제835조

6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854조 내지 제855조

6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874조 내지 제875조

- 단속·조사국은 관세 및 소비세 규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조사 관련 정책과 표준을 수립·이행하며, 관련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sup>64)</sup>
  - 정보 활용, 단속, 해양순찰뿐 아니라 마약 추적견의 운영, 시설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함
  
- 세입·기획전략국은 전략적 기획, 세입 및 납부 계획의 평가, 업무절차·인력·조직·위험관리, 개혁관리를 기획·평가하는 부서임<sup>65)</sup>
  - 또한 관세·소비세 총국의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고, 업무계획 및 책임성 보고서 작성을 조정함

## 2. 통관 관련 법

- 관세법<sup>66)</sup>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의 이동을 감독하고 수출입 관세를 징수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은 관세 관련 법적 확실성·공정성·투명성 및 공공 서비스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집행을 명확하게 하여 국제무역과 관련한 국가경제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sup>67)</sup>
  - 또한 인도네시아의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감독의 효과를 높이며 밀수 예방 및 처벌을 최적화하기 위한 규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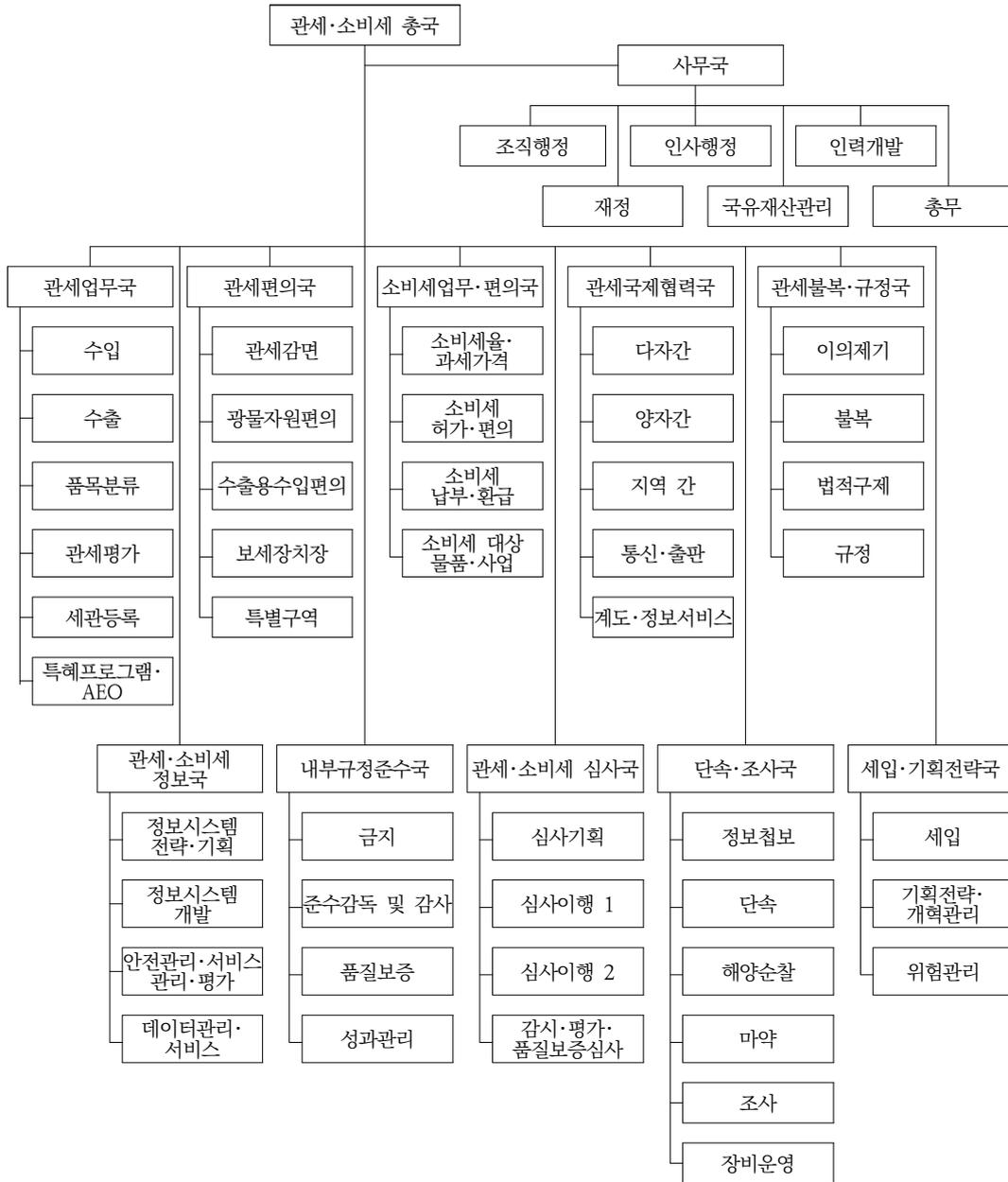
6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894조 내지 제895조

6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34/PMK.01/2015 제922조 내지 제923조

66) 1995년 5호 관세법(2006년 7호에 의하여 개정)

67) 「인도네시아 관세법」 고려사항

[그림 2-1-1]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조직도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abt/struktur-organisasi.html>(검색일자: 2018. 8. 30)

□ 관세법은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제정·개정되는 법령이므로, 법에서는 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은 정부령 또는 장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2-1-1〉 「인도네시아 관세법」의 구조

| 구분           | 장                               | 부          | 절           |
|--------------|---------------------------------|------------|-------------|
| 1            | 총칙                              | -          | -           |
| 2            | 수출입물품 운송                        | 물품운송       | 운송수단 도착     |
|              |                                 |            | 물품운송        |
|              |                                 |            | 운송수단 출발     |
|              |                                 | 수입         | 하역, 장치 및 반출 |
|              |                                 |            | 사용목적 수입     |
| 수출           | 임시수입                            |            |             |
| 3            | 세율 및 과세가격                       | 세율         | 수입세율        |
|              |                                 |            | 품목분류        |
|              |                                 | 과세가격       | -           |
| 세율과 과세가격의 결정 | -                               |            |             |
| 4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 | 덤핑방지관세     | -           |
|              |                                 | 상계관세       | -           |
|              |                                 | 긴급(수입제한)관세 | -           |
|              |                                 | 보복관세       | -           |
|              |                                 | 규정 및 제정    | -           |
| 5            | 관세 미징수, 면제, 감면 및 환급             | 관세 미징수     | -           |
|              |                                 | 관세면제와 감면   | -           |
| 6            | 세관신고 및 수입관세 책임                  | 세관신고       | -           |
|              |                                 | 세관신고서 관리   | -           |
|              |                                 | 관세 납부의무    | -           |
| 7            | 납부, 청구 및 담보                     | 납부         | -           |

| 구분  | 장  | 부                       | 절       |
|-----|--|-------------------------|---------|
|     |  | 채권청구                    | -       |
|     |  | 담보                      | -       |
| 8   | 세관감독하의 보관소   | 하선장소                    | -       |
|     |  | 보세구역                    | -       |
|     |  | 세관장치장                   | -       |
| 9   | 장부작성   | -                       | -       |
| 10  | 수출입금지, 제한,<br>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에<br>대한 통관보류 및 테러 및<br>국제범죄와 관련된 물품<br>처리 | 수출입금지                   | -       |
|     |  | 지적재산권 위반물품<br>통관보류      | -       |
|     |  | 테러 및 국제범죄와<br>관련된 물품 처리 | -       |
| 11  | 소유되지 않은 물품,<br>국가지배물품,<br>국가소유물품                                   | 소유되지 않은 물품              | -       |
|     |  | 국가지배물품                  | -       |
|     |  | 국가소유물품                  | -       |
| 12  | 세관 권한  | 일반                      | -       |
|     |  | 감독과 봉인                  | -       |
|     |  | 검사                      | 물품검사    |
|     |  |                         | 심사      |
|     |  |                         | 회계장부 검사 |
|     |  |                         | 운송수단 검사 |
|     |  | 신변검색                    | -       |
|     |  | 관세청의 특별권한               | -       |
| 13  | 이의신청 및 소송  | -                       | -       |
| 14  | 벌칙   | -                       | -       |
| 15  | 조사   | -                       | -       |
| 15A | 공무원지도  | -                       | -       |
| 16  | 기타 규정  | -                       | -       |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1. 관세의 과세요건

#### 가. 과세물건

-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입관세 의무가 있으며<sup>68)</sup>,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sup>69)</sup>
  - 수입관세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sup>70)</sup>, 수출관세란 국가가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sup>71)</sup>
  
- 수출관세는 국내 수요 충족 보장, 천연자원 보호, 국제시장에서 특정 물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 대비, 특정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하여<sup>72)</sup> 다음 물품에 부과됨<sup>73)</sup>
  - 가죽 및 목재
  - 코코아 두

---

68)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조 1항

6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A조 1항

70)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조 15항

7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조 15a항

7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A조 2항

7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2조

- 팜유, 팜 원유 및 이들의 파생품
  - 수출관세 대상물품 둘 이상의 혼합물 또는 대상물품과 아닌 물품의 혼합물도 포함되며<sup>74)</sup>, 이 경우 수출관세의 과세대상은 대상물품의 중량 또는 용량임<sup>75)</sup>
- 미가공 광물
- 특정 기준의 광물 제품

## 나. 납세의무자

-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납부 책임이 있으며<sup>76)</sup>, 수출업자는 수출부문의 관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sup>77)</sup>
  - 수입업자, 수출업자는 관세 이행을 위하여 세관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관용역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sup>78)</sup>
  -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통관용역업자는 해당 수입업자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수입관세에 대한 책임을 짐<sup>79)</sup>
- 하선장소 사업자는 하선장소 내 보관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해 책임을 지며,<sup>80)</sup> 보세구역 사업자는 보세구역 내 보관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한 책임을 짐<sup>81)</sup>
  - 하선장소 사업자와 보세구역 사업자의 수입관세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됨
    - 고의가 아닌 경우의 분실 또는 손실
    - 재수출, 사용을 위한 수입 또는 임시수입
    - 다른 하선장소,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치장으로의 이송

7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6조

7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8조

7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0조 1항

7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조 3항

78)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9조 2항

7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1조

80)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2조

8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3조

- 관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자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관세는 관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은 자가 부담함<sup>82)</sup>
  -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수입관세의 책임을 짐

#### 다. 과세표준

-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과세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입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임<sup>83)</sup>
  - 수입물품과 면세 및 경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물품의 수입관세는 수입신고일 당시의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됨<sup>84)</sup>
  - 하선장소 내 보관물품에 대하여 하선장소 사업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세관공무원이 정함<sup>85)</sup>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사업자가 수입관세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계산은 보세구역장치일의 과세가격에 기초함<sup>86)</sup>
- 수출관세의 산정에는 수출가격이 사용됨<sup>87)</sup>
  - 수출관세는 수출관세율과 수출가격(수출 수량 또는 용량×수출 단가)을 곱하여 산출됨<sup>88)</sup>

---

8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4조

8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5조

8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0조 2항, 제34조 2항

8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2조 3항

8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3조 3항

8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조 5항

8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3조 1항

## 라. 관세율

- 관세율은 품목분류와 수입관세·수출관세의 부과로 이루어짐<sup>89)</sup>
  - 수입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품은 품목분류시스템에 의하여 분류됨<sup>90)</sup>
  - 수출관세 대상물품과 관세율은 재무부 장관령<sup>91)</sup> 부록에 열거되어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가격의 최대 40%의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sup>92)</sup>
  - 특정 농산물
  -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근거한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
  - 승객, 승무원, 통행인의 운반 물품 또는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한 수입물품
  
- 수출관세 대상물품의 경우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준가격, 공장의 건설 진척도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기도 함
  - 코코아 두, 팜유·팜 원유 및 이들의 파생품은 기준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톤당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관세율이 부과됨
    - 코코아 두의 기준가격은 뉴욕의 코코아 국제거래소(Cocoa International Exchange)에서의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Freight: CIF)임<sup>93)</sup>
    - 팜유·팜 원유 및 이들 파생품의 기준가격은 로테르담(20%), 말레이시아(20%), 인도네시아(60%) 거래소의 가중평균 가격임<sup>94)</sup>
  - 미가공 광물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제련시설의 건설 진척도를 기초로 결정되며, 건설이 많이 진행될수록 관세율은 낮아짐<sup>95)</sup>

8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조 21항

90)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4조 1항

9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9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2조

9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0조 1항 a호

9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0조 1항 b호

9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3/PMK.010/2017 제11조 4항

## 마. 과세환율

- 수입관세는 루피아로 납부되며, 수입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환율은 주기적인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짐<sup>96)</sup>
- 세입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구현된 세관의 경우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때의 과세환율이 적용됨<sup>97)</sup>
  - 수입신고서류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 수입신고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때의 과세환율이,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관세율 및 과세가격이 결정된 때의 과세환율이 적용됨
- 세입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세관의 경우 관세가 납부된 때의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관세가 계산됨<sup>98)</sup>
  -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포괄담보를 제공하고 수입관세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수입신고가 등록된 때의 과세환율이 적용됨
  - 단일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출한 때의 과세환율이 적용됨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신고와 납부

- 세관신고란 관세법의 규정에서 정한 형태·조건에 따른 관세 이행을 위하여 특정인이 행하는 신고를 말함<sup>99)</sup>

9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7/PMK.04/2015 제12조

9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7/PMK.04/2015 제3조 a항

9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7/PMK.04/2015 제3조 b항

9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조 7항

-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후 수입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sup>100)</sup>
  - 사용을 위한 수입이란 사용을 위하여 세관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소유·사용을 위하여 세관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함<sup>101)</sup>
  - 여객, 승무원 및 세관지역을 통과하는 자가 반입하는 수입물품은 도착 시에 의무적으로 세관공무원에 신고하여야 함<sup>102)</sup>
  
- 수입관세는 세관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관세면제 또는 경감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 연장할 수 있음<sup>103)</sup>
  - 관세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납부의무가 연장된 때에는 이자 부담이 없으며, 관세면제 또는 경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자가 부과됨
  
- 수입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수입자는 체납된 수입관세와 행정벌금으로 수입관세의 10%가 추징됨<sup>104)</sup>
  - 수입관세의 과부족 금액이나 체납 행정벌금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sup>105)</sup>
  -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수입관세 납부기한 또는 행정벌금 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매월 2%의 이자가 부과됨
  
-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sup>106)</sup>

---

100)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B조 2항  
 10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B조 1항  
 10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B조 3항  
 10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7조  
 10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B조 6항  
 10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7A조  
 10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A조

40 제2편 통관제도

- 여객, 승무원 및 세관지역을 통과하는 자의 개인물품 및 특정 과세가격 이하 또는 특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가 적용되지 않음
-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수출업자는 5백만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됨

나. 결정 및 재결정

-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 제출 전 또는 세관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물품의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세율 또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sup>107)</sup>
  - 신고서에 명시된 세율 및 과세가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세관 자체심사에 의하여 세율 또는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sup>108)</sup>
  - 세관신고 전에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일시수입물품, 여행자의 휴대품, 위탁물품에 한함<sup>109)</sup>
- 세율 또는 과세가격이 신고된 것보다 높게 결정되어 수입관세에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낮게 결정되어 수입관세가 과다납부된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sup>110)</sup>
  - 수입업자는 세율 또는 과세가격 차이로 발생한 수입관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됨<sup>111)</sup>
  - 30일 이내에 수입관세의 과·부족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세율 또는 과세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됨
- 관세청장은 세관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세율 또는 과세가격을 재결정할 수 있음<sup>112)</sup>

107)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6조

108)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6조 해설

10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9조

11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9조

11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6조

- 원칙적으로 세관공무원의 결정은 구속력과 집행력이 있으나 세율 또는 과세가격의 신고오류로 인한 수입관세 납부액의 과·부족이 세관심사 결과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재결정할 수 있음<sup>113)</sup>
- 재결정금액이 결정금액과 상이한 경우 관세청장은 수입업자에게 수입관세 부족액의 납부 또는 과다납부액의 환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sup>114)</sup>
  - 수입관세 부족액 또는 환불금액은 재결정 금액에 근거하여야 함
- 세관공무원의 결정 또는 관세청장의 재결정 시 납부된 수입관세의 부족액이 수입업자의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부족액의 최소 100%에서 최대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됨<sup>115)</sup>
  - 수입관세의 과세가격인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만이 알 수 있고, 세관신고의 유효성은 당사자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오류는 행정벌금대상이 됨<sup>116)</sup>

###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가. 부가가치세

- 과세물품을 수입하거나 과세사업자가 유형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sup>117)</sup>
  - 다음의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sup>118)</sup>

---

11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7조  
11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7조 해설  
11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7조  
11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6조 내지 제17조  
11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7조 해설  
117)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제4조 1항

## 42 제2편 통관제도

- 천연자원에서 직접 채굴한 광물
-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쌀, 벼, 옥수수, 콩, 소금, 미가공육, 미가공 신선란, 우유, 과일류, 채소류)
- 호텔,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 화폐, 금괴, 유가 증권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며, 유형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sup>119)</sup>
  - 다만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정부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나. 소비세

- 소비세는 소비 수요를 관리하거나 유통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사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정의·균형을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함<sup>120)</sup>
  - 다음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는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에틸알코올·에탄올,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농축물
    - 담배 및 담배조제품

118)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제4A조 2항

119)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제7조

120)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cuk/cukai.html>(검색일자: 2018. 9. 5)

〈표 2-11-1〉 인도네시아 소비세율

(단위: Rp)

| 구분         | 기준                                       |              | 세율      |
|------------|--|--------------|---------|
| 에틸알코올      | 에틸알코올·에탄올                                |              | 20,000  |
|            |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 5% 이하        | 11,000  |
|            |  | 5% 초과~20% 이하 | 40,000  |
|            |  | 20% 초과       | 130,000 |
|            |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농축물                           |              | 100,000 |
| 담배 및 담배조제품 | 정향담배                                     |              | 590     |
|            | 무향담배                                     |              | 625     |
|            | 수제 정향담배                                  |              | 365     |
|            | 수제 정향필터담배                                |              | 590     |
|            | 수제 무향담배                                  |              | 365     |
|            | 수제 무향필터담배                                |              | 590     |
|            | 대향담배                                     |              | 25      |
|            | 시가                                       |              | 110,000 |
|            | 옥수수잎 담배                                  |              | 30      |
|            | 조각잎 담배                                   |              | 30      |
|            | 기타 담배조제품(담배 추출물·에센스, 당밀담배, 코담배, 씹는담배 포함) |              | 소매가격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11/2010 별표 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6/PMK.010/2017 별표 4

### 다. 사치품 판매세

- 사치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치품 판매세가 부과됨<sup>121)</sup>
  - 일반적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① 주요 생필품이 아닌 재화로, ② 사회 특정 계층에 의하여 소비되고, ③ 대체적으로 고소득 계층에 의하여 소비되

121)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제5조

거나 재산 상태를 과시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임<sup>122)</sup>

○ 사치품 판매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200%의 세율이 적용됨<sup>123)</sup>

〈표 2-II-2〉 인도네시아 사치품 판매세 대상 및 세율

| 구분                               |  | 세율                                     |     |
|----------------------------------|--|--|-----|
| 고급주거시설                           | 200억루피아 이상의 주택 및 단층의 타운하우스   | 20%                                    |     |
|                                  | 100억루피아 이상의 아파트, 콘도미디엄, 복층의 타운하우스  | 20%                                    |     |
| 항공기<br>(국가용 또는<br>무역운송수단용<br>제외) | 조종이 가능한 기구 등 무동력 항공기   | 8801.00.00                             | 40% |
|                                  | 헬리콥터   | 8802.11.00<br>8802.12.00               | 50% |
|                                  | 헬리콥터 외의 기타 항공기   | 8802.20<br>8802.30<br>8802.40          | 50% |
| 총기류<br>(국가용 제외)                  | 탄약과 그 부분품(공기총의 것 제외)   | 9306.21.00<br>9306.29.00<br>9306.30    | 40% |
|                                  | 포병무기   | 9301.10.00                             | 50% |
|                                  | 리볼버와 피스톨   | 9302.00.00                             | 50% |
|                                  | 기타 화기,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유사한 장치  | 9303                                   | 50% |
| 선박<br>(국가용 또는<br>대중교통용<br>제외)    | 순항선, 유람선, 페리 및 이와 유사한 여객선  | 8901.10                                | 75% |
|                                  | 요트   | 8903.91.00<br>8903.92.00<br>8903.99.00 | 75% |
| 자동차                              | 운전자 포함 10~15인승 자동차, 불꽃점화식·압축점화식, 전동기장착여부 불문, 모든 실린더 용량                             |  | 1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세단, 스테이션왜건 제외), 불꽃점화식·압축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1,500cc미만, 2륜구동 |  | 1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세단, 스테이션왜건 제외), 불꽃점화식·압축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1,500cc이상, 2륜구동 |  | 20% |

122)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2015. 12, p. 236

123)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제8조

| 구분                            |  | 세율   |
|-------------------------------|--|------|
| 자동차                           | 3~6인의 승객을 위한 2열의 좌석이 있는 화물차, 불꽃점화식·압축점화식, 전동기장착여부 불문, 모든 실린더 용량, 총중량 5톤 미만         | 2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 불꽃점화식·압축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1,500cc 미만, 세단·스테이션왜건 또는 4륜구동  | 3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세단, 스테이션왜건 제외), 불꽃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2,500cc~3,000cc, 2륜구동 | 4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 불꽃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1,500cc~3,000cc, 세단·스테이션왜건 또는 4륜구동   | 4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 압축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1,500cc~2,500cc, 세단·스테이션왜건 또는 4륜구동   | 40%  |
|                               | 골프용 차  | 50%  |
|                               | 250cc~500cc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모패드 포함),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                               | 60%  |
|                               | 설상, 해변, 산악 주행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60%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 불꽃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3,000cc 이상                           | 125% |
|                               | 운전자 포함 10인승 미만 자동차, 압축점화식, 전동기부착여부 불문, 실린더 용량 2,500cc 이상                           | 125% |
|                               | 500cc 이상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모패드 포함),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                                  | 125% |
|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 주거용·캠핑용) | 125%   |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5/PMK.010/2017 별표 1, 2, 3, 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3/PMK.010/2017 별표 1, 2, 3, 4, 5, 6, 7

### 라. 소득세

- 물품을 수입하거나 석탄제품·금속제품·비금속제품을 수출(정부와의 계약·협정에 따른 수출 제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됨<sup>124)</sup>
- 소득세는 수입관세와 함께 납부되어야 하며, 수입관세가 연기·면제되었지만 소

득세는 면제되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서류를 제출 시에 납부하여야 함<sup>125)</sup>

○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수출신고서류 제출 시에 납부하여야 함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자식별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의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의 2.5% 또는 7.5%가 소득세로 부과되며,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격의 1.5% 세율이 적용됨<sup>126)</sup>

○ 다만 특정 최종소비재의 경우 물품별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여 0.5~1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소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sup>127)</sup>

-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
- 수입관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 재수입되는 재화(수출되었다가 동일한 품질로 재수입되거나, 수리나 시험목적으로 수출된 물품)
- 수출용 보석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괴

〈표 2-11-3〉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 세율

| 구분         |               | 세율     |         |
|------------|---------------|--------|---------|
| HS         | 품명            | API 사용 | API 미사용 |
| 3303.00.00 | 향수와 화장수       | 10%    |         |
| 4015.90.20 | 고무제의 잠수복      |        |         |
| 4201.00.00 | 동물용 마구        |        |         |
| 4202(일부)   | 가죽제의 케이스·가방   |        |         |
| 4203(일부)   | 가죽제의 의류·의류부속품 |        |         |

12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제1조

12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제4조

12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제2조

12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제3조

| 구분         |   | 세율        |            |
|------------|---|-----------|------------|
| HS         | 품명  | API<br>사용 | API<br>미사용 |
| 4303(일부)   | 모피제의 의류·의류부속품(산업용 제외)                               | 10%       |            |
| 5701(일부)   | 결절한 양탄자류(기도용 제외)                                    |           |            |
| 5702(일부)   | 직조한 양탄자류(기도용, 제품으로 된 것 제외)                          |           |            |
| 5703(일부)   | 터후트한 양모·섬수모 양탄자류(기도용 제외), 터후트한 기타 섬유제의 양탄자류(차량용 제외) |           |            |
| 5705(일부)   | 기타 양탄자류(기도용 제외)                                     |           |            |
| 6113.00.10 | 침투·도포한 편물제의 잠수복                                     |           |            |
| 6401       | 고무·플라스틱제의 방수신발                                      |           |            |
| 6402       | 고무·플라스틱제의 기타 신발                                     |           |            |
| 6403       | 가죽제 갑피의 신발  |           |            |
| 6404       |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           |            |
| 6405       | 기타 신발   |           |            |
| 6802       | 비석·건축용의 석재  |           |            |
| 6910       | 도자제의 위생용품   |           |            |
| 6913(일부)   | 도자제의 소상, 장식용품(장식용 담배갑, 재떨이 제외)                      |           |            |
| 7013(일부)   | 납크리스탈제의 식탁·장식·주방·화장실·사무용품                           |           |            |
| 7114(일부)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세공품 (은으로 만든 것 제외)            |           |            |
| 7115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기타 제품                        |           |            |
| 7116       | 진주, 귀석의 제품  |           |            |
| 7321(일부)   | 철강제의 스톱브·레인지(액체연료용의 것, 부분품 제외)                      |           |            |
| 8415(일부)   | 공기조절기(고정형, 자동차용의 것)                                 |           |            |
| 8418(일부)   | 분리된 외부문이 있는 냉동고·냉장고(350ℓ 초과 제외), 가정형 냉장고            |           |            |
| 8419(일부)   | 즉시식·저장식의 가정용 물 가열기(비전기식의 것)                         |           |            |
| 8422.11.00 | 가정용 접시세척기   |           |            |
| 8450.20.00 | 10kg 초과 세탁기   |           |            |
| 8451.21.00 | 10kg 이하 건조기   |           |            |
| 8516(일부)   | 즉시식·저장식의 가정용 물 가열기(전기식의 것), 전기식 난방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            |

| 구분       |   | 세율        |            |
|----------|---|-----------|------------|
| HS       | 품명  | API<br>사용 | API<br>미사용 |
| 8521(일부) | 마그네틱형·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재생용기기<br>(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제외)                   | 10%       |            |
| 8525(일부) | 비디오카메라레코더(방송용의 것 제외), 디지털카메라                                  |           |            |
| 8527(일부) |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포켓사이즈형 제외)  |           |            |
| 8528(일부) |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단색의 것,<br>영상디스플레이·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제외)             |           |            |
| 8903     | 요트, 유람·운동용 선박, 보트, 카누   |           |            |
| 9004(일부) | 안경(선글라스, 시력교정용·보호용의 것 제외)                                     |           |            |
| 9006(일부) | 사진기(수중촬영용, 공중측량용, 내과·외과검사용,<br>법정비교용, 인화플레이트·실린더 준비용의 것 제외)   |           |            |
| 9101     | 귀금속제 휴대용 시계   |           |            |
| 9103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   |           |            |
| 9104     | 계기반 시계  |           |            |
| 9105     | 기타 시계   |           |            |
| 9201     | 피아노   |           |            |
| 9207     | 전자악기  |           |            |
| 9401(일부) | 의자(항공기용의 것 제외)  |           |            |
| 9403(일부) | 기타 가구   |           |            |
| 9404     | 침구 및 매트리스   |           |            |
| 9405(일부) | 램프와 조명기구(침실용, 가로등용, 철도용, 항공기용,<br>선박용, 비행장용 비섬광 표지, 파일럿램프 제외) |           |            |
| 9506     | 수상운동용구, 골프용품  |           |            |
| 9507(일부) | 낚시용구(낚시바늘 제외)   |           |            |
| 3924     | 플라스틱제 식탁·주방·가정·위생·화장용품  |           |            |
| 3926(일부) | 플라스틱제 소상, 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목주 제외)                                 |           |            |
| 4202(일부) | 케이스, 가방(가죽제 제외)   |           |            |
| 4205(일부) | 기타 가죽제품(기계용, 산업안전용 제외)  |           |            |
| 4419     | 목제 식탁·주방용품  |           |            |
| 4420     | 목제 장식용품   |           |            |
| 5703     | 터후트한 양탄자(나일론, 플로아미드, 기타 인조섬유)                                 |           |            |

| 구분         |   | 세율        |            |
|------------|---|-----------|------------|
| HS         | 품명  | API<br>사용 | API<br>미사용 |
| 5704       | 펠트제 양탄자류                                      | 7.5%      |            |
| 6103, 6203 | 남성용 슈트·바지                                     |           |            |
| 6204, 6204 | 여성용 슈트·바지                                     |           |            |
| 6105, 6205 | 남성용 셔츠  |           |            |
| 6106, 6206 | 여성용 블라우스                                      |           |            |
| 6110       | 저지·풀오버·카디건                                    |           |            |
| 6111, 6209 | 유아용 의류  |           |            |
| 6211       | 인조섬유제 비행용 전신복                                 |           |            |
| 6601       | 우산  |           |            |
| 6911       | 자기제의 식탁·주방·가정·위생·화장용품                         |           |            |
| 6912.00.00 | 도기제의 식탁·주방·가정·위생·화장용품                         |           |            |
| 6913(일부)   | 도기제의 소상, 장식용품                                 |           |            |
| 6914       | 도자제의 기타 제품                                    |           |            |
| 7013(일부)   | 유리제의 식탁·주방·화장·사무·실내장식품<br>(납크리스탈제 제외)         |           |            |
| 7113       | 귀금속제 신변장식품                                    |           |            |
| 7117(일부)   | 비금속제 모조 신변장식품                                 |           |            |
| 7321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액제연료용)                           |           |            |
| 7323       | 철강제의 식탁·주방·가정·위생용품                            |           |            |
| 7615       | 알루미늄제의 식탁·주방·위생용품                             |           |            |
| 8215       | 비금속제 스푼, 포크, 스키머 등 식탁·가정용품                    |           |            |
| 8415.10.90 | 공기조절기(고정형으로 26.38kW 이상의 것)                    |           |            |
| 8418(일부)   | 분리된 외부문이 있는 냉동고·냉장고(350ℓ 초과),<br>체스트형·직립형 냉동고 |           |            |
| 8433(일부)   | 공원·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           |            |
| 8450(일부)   | 10kg 이하 세탁기                                   |           |            |
|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           |            |
| 8471(일부)   | 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기(10kg 이하)                        |           |            |
| 8508(일부)   | 진공청소기   |           |            |

| 구분         |  | 세율        |            |      |      |
|------------|--|-----------|------------|------|------|
| HS         | 품명   | API<br>사용 | API<br>미사용 |      |      |
| 8509(일부)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                                     | 7.5%      |            |      |      |
| 8516(일부)   |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손건조기, 전기다리미, 전기오븐 등<br>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           |            |      |      |
| 8517(일부)   | 전화기  |           |            |      |      |
| 8525(일부)   | 웹카메라, 방송용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디지털카메라                          |           |            |      |      |
| 8528(일부)   | 영상 디스플레이·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텔레비전 수신용<br>기기                  |           |            |      |      |
| 8703(일부)   | 승용자동차(넉다운 형태의 것, 구급차, 카라반, 영구차,<br>구급용 밴 제외)         |           |            |      |      |
| 8711(일부)   | 모터사이클(50cc 이하, 넉다운 형태의 것 제외)                         |           |            |      |      |
| 8712       | 자전거  |           |            |      |      |
| 8715.00.00 | 유모차  |           |            |      |      |
| 9004(일부)   | 선글라스, 시력교정용·보호용 안경                                   |           |            |      |      |
| 9102       | 기타 휴대용 시계  |           |            |      |      |
| 9205       | 관악기  |           |            |      |      |
| 9206.00.00 | 타악기  |           |            |      |      |
| 9208       | 뮤지컬 박스 및 기타 악기                                       |           |            |      |      |
| 9503       | 완구   |           |            |      |      |
| 9501(일부)   | 비디오게임 콘솔, 비디오게임기                                     |           |            |      |      |
| 9506(일부)   | 설상스키용품, 탁구용품, 공, 아이스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br>기타 운동·체조·육상경기용품 |           |            |      |      |
| 9615       | 빗, 머리핀 등   |           |            |      |      |
| 9616       | 화장용 분무기, 화장용 분첩패드                                    |           |            |      |      |
| 9617.0.10  | 보온병  |           |            |      |      |
| 9620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1001(일부)   | 밀(종자 제외)   |           |            | 0.5% | 7.5% |
| 1101(일부)   | 밀가루  |           |            |      |      |
| 1201.90.00 | 대두(종자 제외)  |           |            |      |      |
|            | 기타 물품  | 2.5%      | 7.5%       |      |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별표 1, 2, 3

〈표 2-11-4〉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대상 수출물품

| HS         | 품명             | HS         | 품명          |
|------------|----------------|------------|-------------|
| 2502.00.00 | 황화철강           | 2601(일부)   | 철광과 그 정광    |
| 2503.00.00 | 황              | 2602.00.00 | 망간광과 그 정광   |
| 2504       | 천연흑연           | 2603.00.00 | 구리광과 그 정광   |
| 2505.10.00 | 규사             | 2604.00.00 | 니켈광과 그 정광   |
| 2507.00.00 | 고령토            | 2605.00.00 | 코발트광과 그 정광  |
| 2508       | 기타 점토          | 2606.00.00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 2510       | 천연인산칼슘         | 2607.00.00 | 연광과 그 정광    |
| 2511       | 중정석, 독중석       | 2608.00.00 | 아연과 그 정광    |
| 2519       | 마그네사이트         | 2609.00.00 | 주석광과 그 정광   |
| 2520.10.00 | 석고, 무수석고       | 2610.00.00 | 크롬광과 그 정광   |
| 2524       | 석면             | 2611.00.00 | 텅스텐광과 그 정광  |
| 2525(일부)   | 석회석(웨이스트 제외)   | 2613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
| 2526.10.00 | 천연동석(부수지 않은 것) | 2614       | 티타늄광과 그 정광  |
| 2528.00.00 | 장석, 형석         | 2615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
| 2530       | 기타의 광물         | 2616       | 귀금속광과 그 정광  |
| 2701(일부)   | 석탄             | 2617       | 기타광과 그 정광   |
| 2702       | 갈탄             | -          | -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4/PMK.010/2017 별표 4

### Ⅲ. 관세평가제도

#### 1.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함<sup>128)</sup>
  -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표준인 종가세 대상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임
  
- 관세액은 관세율에 과세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납세의 무자의 관세부담이 달라지며, 따라서 관세평가는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임<sup>129)</sup>
  - 과세가격이 저가로 결정되면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고가로 결정되면 국제무역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임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128)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l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a%b4%80%ec%84%b8%ed%8f%89%ea%b0%80&searchWord=&type=1&vocald=1188>(검색일자: 2018. 9. 6);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2017. 12, p. 73에서 재인용

129)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289;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2017. 12, p. 73에서 재인용

- 이에 따라 WTO는 GATT 제7조<sup>130)</sup>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관세의 과세가격 사용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일관되며 중립적인 관세목적의 물품평가제체를 마련함<sup>131)</sup>
- 인도네시아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하여 「관세법」 제15조에 명시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따른 관세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음<sup>132)</sup>

##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관세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33)</sup>
-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가격에 우선하여 산정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하고 일관된 기준 및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가. 거래가격

#### 1) 거래가격

- 거래가격이란 인도네시아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

13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관세평가의 일반절차를 규정한 조항

13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GATT 신평가협정) 일반서설

132)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일반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pab/nilai-pabeaan.html> (검색일자: 2018. 9. 6)

13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5조

54 제2편 통관제도

액 또는 비용을 합산한 가격임<sup>134)</sup>

가) 실제지급가격

□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계임<sup>135)</sup>

○ 공정한 거래관습에 따른 할인은 실제지급가격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sup>136)</sup>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수입 후에 발생한 금액 또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sup>137)</sup>

○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 시험 비용, 쇼룸 제작비용, 시장조사 비용,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sup>138)</sup>

○ 실제지급가격과 명백히 구분되는 수입 이후 발생한 비용

- 수입 후 발생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보수 또는 기술지원 비용

- 수입 후 물품 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 수입 관세, 소비세 및 기타 세금

○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배당금 또는 기타 지불금

- 배당금은 물품의 판매뿐 아니라 회사 사업 전체와 관련된 이익의 분배임

○ 수입물품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과한 이자

나) 가산요소

□ 실제지급가격에 다음의 가산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비용

13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1항

13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4항

13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6항

13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5항

138)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pab/nilai-pabean.html>(검색일자: 2018. 9. 6)

을 합산하여 거래가격을 계산함<sup>139)</sup>

-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함)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및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물품과 용역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생산지원비용)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자재,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몰드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 인도네시아 관세영역 밖에서 개발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도안 및 스케치
  - 수입물품의 구매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사후귀속이익)
  - 수입항 또는 인도네시아 관세영역 내의 지점까지의 운임
    - 선적, 하역, 화물취급 수수료를 포함함
  - 보험료
- 가산요소의 금액 또는 비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sup>140)</sup>
- 가산요소 외의 비용 또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13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3항

14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6항

## 2) 거래가격의 인정요건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141)</sup>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 관세영역 내에서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강제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제한
    - 그 외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거래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후귀속이익을 가산요소로서 가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이익이 없어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음의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법률적인 동업자인 경우
    -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 또는 점유한 경우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경우
    -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 동일한 제3자를 공동으로 통제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등 친족관계인 경우

---

14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5조 7항

## 나. 동일물품 거래가격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 있는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sup>142)</sup>
  - 동일물품이란 물리적 특성, 품질, 평판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또는 동일한 국가의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함<sup>143)</sup>
  
-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가 평가대상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와 같거나 30일 이내로서 거래단계, 수량이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의 것이어야 함<sup>144)</sup>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
  - 동일물품에 대한 동일 거래단계 및 동일 수량의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단계 또는 수량이 다르거나 거래단계 및 수량이 모두 다른 거래의 가격에 차이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sup>145)</sup>
    - 이러한 조정은 객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물품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음

## 다. 유사물품 거래가격

- 수입물품·동일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sup>146)</sup>

14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3조 1항

14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조 5항

14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9조

14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0조

14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3조 2항

- 유사물품이란 특성·구성요소가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물품으로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또는 동일한 국가의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함<sup>147)</sup>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가 평가대상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와 같거나 30일 이내로서 거래단계, 수량이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의 것이어야 함<sup>148)</sup>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
  - 유사물품에 대한 동일 거래단계 및 동일 수량의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단계 또는 수량이 다르거나 거래단계 및 수량이 모두 다른 거래의 가격에 차이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sup>149)</sup>
    - 이러한 조정은 객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음

## 라. 공제가격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제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50)</sup>
  - 공제가격이란 수입자가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을 관세영역 내에서 판매하는 단가에 수입 후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말함<sup>151)</sup>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단가로서 해

14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조 6항

14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1조

14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2조

15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3조 3항

15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3조

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될 수 없음<sup>152)</sup>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영역 내의 시장에서 수입신고일 또는 전후 30일 이내에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 이러한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 또한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가장 많은 양으로 판매된 거래의 단가여야 함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구매자가 생산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자료는 구매자가 제출하여야 함<sup>153)</sup>
- 관세영역 내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운송료, 보험료, 하역비용 등 관세영역 내의 목적항 도착 후 구매자가 지급한 기타 가격
  - 수입관세, 조세 및 기타 공과금
- 수입국 내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sup>154)</sup>
- 이 경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요소와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15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4조

15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5조

15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6조

### 마. 산정가격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공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sup>155)</sup>
  - 또는 수입자가 공제가격 대신 산정가격 적용을 요청한 경우 공제가격보다 우선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음
  -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사용이 가능함
  
- 산정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제조자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과세가격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sup>156)</sup>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가격 및 제조·가공 비용
  - 동종·동류의 물품 생산자가 관세영역 내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 관세영역 내의 목적항까지 운송비용(선적비, 하역비, 화물운송수수료 포함)
  - 관세영역 내의 목적항까지 적하보험료
  - 생산지원비용
  - 중개료 및 수수료(구매수수료는 제외)
  -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포장에 드는 노무비 및 자재비

### 바. 대체가격(Fallback)

-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sup>157)</sup>

15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3조 4항

15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7조

15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3조 5항

- 대체가격이란 수입물품·동일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을 적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관세영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sup>158)</sup>
  
- 다음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sup>159)</sup>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매가격
  -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의 가격
  -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 동일·유사물품의 산정가격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이외의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관세영역 이외의 국가에 수출된 물품의 가격
  - 최저과세가격
  - 자의적·가공적 가격
  
- 운송비 또는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다음 금액을 가산한 대체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sup>160)</sup>
  - 운송비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함
    - 해상운송 시 아세안 국가의 물품은 FOB 가격의 5%, 아세안 외의 아시아국가 또는 호주의 물품은 FOB 가격의 10%, 기타 국가의 물품은 FOB 가격의 15%
    - 항공운송 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요율표에 따름
  - 보험료는 CFR 가격의 0.5%를 가산하여 대체가격을 산출함

15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8조

15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19조

16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0조

### 3. 관세평가 절차

#### 가. 가격심사

- 수입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과 모든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야 함<sup>161)</sup>
  - 가격조사에는 다음이 포함됨
    - 수입물품이 판매대상인지 여부
    - 거래가격 인정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거래가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할 금액 또는 비용
    - 물리적 검사
    -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가격신고서의 공정성
  - 수입업자가 AEO업체, 시설인증을 받은 업체, 관세·소비세충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업체이거나 제조자가 저위험 업체인 경우, 중앙·지방정부가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가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 가격심사 생략 대상이더라도 가격심사가 이루어짐
    - 재수입물품
    - 무작위 선택 물품
    - 정부에서 수입한 특정 물품
  
- 가격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거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정성을 심사할지 결정됨<sup>162)</sup>
  - 가격심사 결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부인되고 과세가격은 후순위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 수입물품이 판매거래의 대상이 아닌 경우

16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2조

16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3조

- 거래가격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거래가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할 금액 또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거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 물리적 검사 결과 신고 수량·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반면 가격심사 결과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거래가격에 대한 공정성심사를 수행함
  - 수입물품이 판매거래의 대상인 경우
  - 거래가격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거래가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할 금액 또는 비용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물리적 검사 결과 신고 수량·규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성심사에는 수입신고의 진실성·정확성과 관련된 잠재위험을 파악하는 변수<sup>163)</sup>로서 수입물품의 CIF 가격 및 과세가격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sup>164)</sup>
  - 과세가격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으로 구성됨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로부터 60일 전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수입신고서
    -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수입신고서
    -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심사 자료
    -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수입물품의 이의신청 자료
    - 카탈로그, 홍보책자 등 기타 정보 자료
- 공정성심사에 따라 수입신고된 가격과 과세가격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65)</sup>

16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5조

16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4조

- 거래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봄
    -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보다 5% 이내로 낮은 가격
    -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
    -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
  - 거래가격이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보다 5%를 초과하여 낮은 경우는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아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함
- 데이터베이스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날짜로부터 60일 전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수입신고서만으로 공정성심사를 할 수 있음<sup>165)</sup>
-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상 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만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되며, 낮은 가격은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함
- 거래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게 수입물품과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함<sup>167)</sup>
- 진술서를 요청받은 수입업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술서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진실성·정확성이 없다고 간주하여 후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함
  - 수입업자의 답변을 심사한 결과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이 진실하고 정확하여 거래가격을 믿을 수 있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거래가격을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후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16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6조

16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7조

16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8조

- 수입업자의 제출 자료가 진실·정확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은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하여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와 관련된 구두진술을 하여야 함<sup>168)</sup>
  - 면담 결과 거래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고, 이를 실질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면담 결과 실질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거래가격이 진실·정확하다고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후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함

#### 나. 가격자진신고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과 가산요소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을 수입신고 시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는 가격자진신고를 할 수 있음<sup>169)</sup>
  - 가격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금액 또는 비용이 수입신고 시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선물가격(물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가격)
    - 로열티
    - 사후귀속이익
- 선물가격을 자진신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일 이후 결제일이 도래하여야 하고, 선물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서면의 협정서 또는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함<sup>170)</sup>

16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2/PMK.04/2018 제28A조

16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2조

17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3조 1항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에 선물가격 대상물품, 예상 선물가격, 결제일을 포함하여야 함<sup>171)</sup>
  - 선물가격의 결제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여야 함
  
- 로열티를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수입물품에 지식재산권이 체화되어 있고, 로열티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로열티 지급에 대한 법적인 협정서 또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sup>172)</sup>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에 로열티와 관련된 물품, 예상 로열티 금액, 로열티를 지급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sup>173)</sup>
    - 로열티의 지급 날짜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 사후귀속이익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전매·처분·사용에 대한 이익이 판매자와 공유되고, 그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어야 함<sup>174)</sup>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에 사후귀속이익과 관련된 물품, 예상 사후귀속이익 금액, 사후귀속이익을 지급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sup>175)</sup>
    - 사후귀속이익의 지급 날짜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 수입업자는 선물가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을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 관세, 소비세 및 기타 내국세의 부족분을 자진납부하여야 함<sup>176)</sup>
  - 자진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17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4조

17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3조 2항

17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5조

17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3조 3항

17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5조

17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7/PMK.04/2016 제6조

##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도

### 1. 품목분류

#### 가. 품목분류 체계

- 품목분류란 여러 가지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말함<sup>177)</sup>
  - 이러한 품목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당해 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작업은 관세의 과세요건의 확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인도네시아는 품목분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관세품목분류표인 HS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율, 통계,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음<sup>178)</sup>
  - 인도네시아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표를 재무부령<sup>179)</su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77)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l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d%92%88%eb%aa%a9%eb%b6%84%eb%a5%98&searchWord=&type=1&vocaId=4350>(검색일자: 2018. 9. 7)

178)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www.beacukai.go.id/faq/faq-terkait-buku-tarif-kepabeanan-indonesia-btki-.html>(검색일자: 2018. 9. 7)

17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부·류·소호의 주, 품목분류구조 및 관세율로 구성됨<sup>180)</sup>

- 품목분류구조 및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제정한 HS상 4단위 및 6단위의 품목번호와 품명, 아세안 품목분류표(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의 8단위 품목번호와 품명, 인도네시아에서 지정한 제98류 및 제99류로 구성됨<sup>181)</sup>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협정에 따라 아세안 품목분류표에 따른 8단위 품목번호를 사용하며, 이는 아세안 단일통관창구 및 수출입 단일문서 사용 시행의 기초가 됨<sup>182)</sup>
  - 제98류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너다운(Knock-down) 상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반제품(blank) 상태의 자동차 부품이 분류되며, 제99류에는 소프트웨어와 기타 디지털 상품이 분류됨
  
- 제98류에서의 자동차란 조립산업 또는 부품산업 사업자가 수입하는 제8702호의 승용자동차, 제8703호의 화물자동차 또는 제8711호의 이륜·삼륜자동차를 말함<sup>183)</sup>
  - 제98류의 물품은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과 제1류 내지 제97류의 주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지 않음<sup>184)</sup>
  - 조립산업 또는 부품산업 사업자가 수입하지 않는 경우 품목분류표의 적용가능한 호에 분류됨<sup>185)</sup>
  - 불완전한 형태의 너다운 상태란 미조립된 상태로서 자동차의 본질적 특성을 가

18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제1조

18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제2조

182)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www.beacukai.go.id/faq/faq-terkait-buku-tarif-kepabeanan-indonesia-btki-.html>(검색일자: 2018. 9. 7)

18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제98류 주2

18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제98류 주1

18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제98류 주3

지지 않은 형태를 말함<sup>186)</sup>

- 반제품이란 완성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가공을 통해서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함<sup>187)</sup>
- 제99류에는 수입된 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와 기타 디지털 물품이 분류되어 0%의 세율이 적용됨<sup>188)</sup>
  - 수입된 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타 디지털 물품은 해당 기계 또는 장치와 함께 분류됨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수입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수입관세를 산정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음<sup>189)</sup>
  - 수입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sup>190)</sup>
    - 수입업자가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품목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야 함
    - 품목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수입업자는 품목분류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서와 다음의 물품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sup>191)</sup>
    - 상표, 사진 또는 홍보자료, 카탈로그

18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제98류 주4

18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제98류 주6

18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17/PMK.010/2018에 의하여 개정) 별표 3. 제99류 주1

18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2조

19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3조 2항

19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3조 3항

70 제2편 통관제도

- 제품사양서, 화학적 성분 시험성적서(Mill-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분석증명서, 관세청 실험실 또는 기타 실험실의 검사 결과서
- 제품 제조공정도
- 기타 품목분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 세관공무원은 품목분류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기술적 자료를 심사하여야 함<sup>192)</sup>

-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견본, 추가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거절됨

□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사전 품목분류나 거절 통보서를 관세청 결정문으로 발급하여야 함<sup>193)</sup>

- 세관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거절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함께 명시하여야 함

□ 품목분류 세관공무원은 사전 품목분류상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함<sup>194)</sup>

- 사전 품목분류의 번호 및 일자 는 세관 공고에 고시되어야 하며, 결정문의 사본은 수입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함<sup>195)</sup>

19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4조

19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5조

19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9조

19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8조

- 사전 품목분류의 결정은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함<sup>196)</sup>
- 사전 품목분류의 결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sup>197)</sup>
  - 품목분류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사전 품목분류상의 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사전 품목분류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체된 경우
  - 사전 품목분류가 적용되는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 수입업자는 사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싶은 경우 사전 품목분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새로운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sup>198)</sup>
  - 세관공무원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사전 품목분류의 검토에 따른 결정문이나 거절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재심사에 따른 결정문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음

## 2. 관세율 제도

### 가. 관세율 수준

- WTO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sup>199)</sup>
  - 농산물에는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물,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제품, 직물 및 의류,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19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6조

19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6조

19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4/PMK.04/2016 제10조

199)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7

〈표 2-Ⅳ-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sup>1)</sup>

| 농산물   | 비농산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 동물(1류), 육류(2류) 및 이를 원재료로 가공식품(16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5류)</li> <li>- 낙농제품(4류)</li> <li>- 채소(7류), 과일(8류), 수액(13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14류)</li> <li>- 커피 등 차(9류, 18류)</li> <li>- 곡물 및 그 조제품(10류, 11류, 19류, 21류)</li> <li>- 종자 및 기름(12류, 15류)</li> <li>- 설탕 및 과자류(17류)</li> <li>- 음료 및 담배(22류, 24류)</li> <li>- 면섬유(52류)</li> <li>- 기타 농산물(23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3류),</li> <li>- 광물 및 금속제품(25류, 26류, 31류, 68~71류, 72~76류, 78~83류),</li> <li>- 석유제품(27류)</li> <li>- 화학제품(44~45류, 47~49류, 94류)</li> <li>- 목제품 및 종이(44~45류, 47~49류, 94류)</li> <li>- 직물 및 의류(50~63류, 65류)</li> <li>- 고무, 가죽, 신발 등의 제품(40류, 41~43류, 64류)</li> <li>- 기계류(84류)</li> <li>- 전자기기(85류)</li> <li>-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86~89류)</li> <li>- 기타 제조업 제품(46류, 66류, 67류, 90~93류, 95~97류)</li> </ul> |

주: 1) 대표적인 류를 기재한 것으로 세부적인 호, 소호에 따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p. 32~34;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8에서 재인용

- 인도네시아의 2017년 전체 품목 평균 양허관세(Bound duty)<sup>200)</sup>는 37.1%, MFN 실행관세는 8.1%로 양허관세보다 실행관세가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관세 16.5%, MFN 실행관세 13.7%로 차이가 2.8% 정도 나지만, 일본(4.5%, 4.0%), 미국(3.4%, 3.4%), EU(5.0%, 5.1%)은 그 차이가 1% 미만이거나 차이가 없음
  
- 양허관세는 농산물의 경우 47.1%, 비농산물은 35.5%로 농산물의 세율이 11.6% 정도 높았음

20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의하여 적용되는 세율(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p. 205; 신상화 외 2인(2017), p. 90에서 재인용)

- 농산물의 양허세율은 우리나라(57.9%)보다 낮지만, 일본(18.0%), 미국(4.9%), EU(11.8%)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비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9.8%), 일본(2.5%), 미국(3.2%), EU(3.9%) 모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세율로 양허되었음
- 2017년 농산물의 MFN 실행관세는 8.7%, 비농산물의 경우 8.0%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세율차는 크지 않음
- 2017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 8.1%는 우리나라(13.7%)보다는 낮지만, 일본(4.0%), 미국(3.4%), EU(5.1%)보다 높은 수준임
    - 농산물의 경우 8.7%로 우리나라(56.9%), 일본(13.3%), EU(10.8%)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농산물의 8.0%는 우리나라(6.8%), 일본(2.5%), 미국(3.1%), EU(4.2%)보다 높음
  - 2016년 평균 MFN 실행관세와 비교해보면 전체 품목은 7.9%에서 8.1%로 0.2% 상승하였으며, 농산물 및 비농산물도 각각 0.3%, 0.2% 상승하였음

〈표 2-Ⅳ-2〉 인도네시아 관세율 수준

(단위: %)

| 구분   | 기준   | 인도네시아 | 우리나라 | 일본   | 미국   | EU   |      |
|------|------|-------|------|------|------|------|------|
| 전체품목 | 양허관세 | 37.1  | 16.5 | 4.5  | 3.4  | 5.0  |      |
|      | MFN  | 2017  | 8.1  | 13.7 | 4.0  | 3.4  | 5.1  |
|      |      | 2016  | 7.9  | 13.9 | 4.0  | 3.5  | 5.2  |
| 농산물  | 양허관세 | 47.1  | 57.9 | 18.0 | 4.9  | 11.8 |      |
|      | MFN  | 2017  | 8.7  | 56.9 | 13.3 | 5.3  | 10.8 |
|      |      | 2016  | 8.4  | 56.9 | 13.1 | 5.2  | 11.1 |
| 비농산물 | 양허관세 | 35.5  | 9.8  | 2.5  | 3.2  | 3.9  |      |
|      | MFN  | 2017  | 8.0  | 6.8  | 2.5  | 3.1  | 4.2  |
|      |      | 2016  | 7.8  | 6.8  | 2.5  | 3.2  | 4.2  |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 79, 95, 98, 102, 174;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 82, 98, 101, 105, 177

- 양허관세(Bound duty)와 MFN 실행관세의 범위를 구간별로 나눈 후 각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Tariff lines)이 전체 품목<sup>201)</su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비농산물 모두 양허관세는 25~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은 반면, MFN 실행관세는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양허관세 기준 0%, MFN 실행관세 기준 8.4%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각각 2.8%, 13.8%로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를 초과하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농산물은 8.6%(양허관세)~1.1%(MFN 실행관세), 비율인 반면 비농산물은 50% 이하의 관세율만 적용되고 있음

〈표 2-Ⅳ-3〉 인도네시아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단위: %)

| 구분               |                           | 무관세  | 0%초과<br>5%이하 | 5%초과<br>10%이하 | 10%초과<br>15%이하 | 15%초과<br>25%이하 | 25%초과<br>50%이하 | 50%초과<br>100%이하 | 100%<br>초과 |
|------------------|---------------------------|------|--------------|---------------|----------------|----------------|----------------|-----------------|------------|
| 농<br>산<br>물      | 양허관세                      | 0    | 0            | 0.6           | 0              | 0              | 87.5           | 8.6             | 3.2        |
|                  | 2017년<br>MFN<br>실행관세      | 8.4  | 76.7         | 4.5           | 0.8            | 5.1            | 2.4            | 1.1             | 1.0        |
|                  | 2016년<br>수입 <sup>1)</sup> | 31.2 | 49.4         | 15.5          | 0.8            | 2.7            | 0.3            | 0               | 0.1        |
| 비<br>농<br>산<br>물 | 양허관세                      | 2.8  | 0            | 0             | 3.6            | 0              | 89.3           | 0               | 0          |
|                  | 2017년<br>MFN<br>실행관세      | 13.8 | 50.1         | 16.2          | 10.1           | 8.9            | 0.9            | 0               | 0          |
|                  | 2016년 수입                  | 39.7 | 35.9         | 13.6          | 7.2            | 2.3            | 1.2            | 0               | 0          |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2018), p. 95

201) 양허관세의 경우 미양허 품목은 제외한 품목(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 32; 신상화 외 2인(2017), p. 90에서 재인용)

- 각 산업군별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평균 양허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음료와 담배(81.3%), 낙농제품(74.0%)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어류 및 수산물(40.0%), 목제품 및 종이제품(39.4%)임
  - 농산물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었으며, 비농산물에서는 전기기계(23.2%)가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낙농제품 중 210%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으며, 비농산물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군은 60%의 화학제품임
  
- MFN 실행관세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음료와 담배(45.9%), 커피, 차(13.2%)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의류(23.9%), 운송기기(13.5%)임
  -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면사(20.0%)이며, 비농산물에서는 석유제품(95.8%)으로 나타남
    - 평균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인 음료와 담배, 커피, 차, 의류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음
  - MFN 실행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은 곡물 및 그 조제품, 음료와 담배, 화학제품으로 세 품목군 모두 150%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

〈표 2-IV-4〉 인도네시아 산업별 관세율 수준

(단위: %)

| 품목            | 양허관세  |                      |       | MFN 실행관세 |        |       | 수입               |                      |
|---------------|-------|----------------------|-------|----------|--------|-------|------------------|----------------------|
|               | 평균 세율 | 무관세 비중 <sup>1)</sup> | 최고 세율 | 평균 세율    | 무관세 비중 | 최고 세율 | 비중 <sup>2)</sup> | 무관세 비중 <sup>3)</sup> |
| 동물제품          | 43.7  | (0)                  | 50    | 7.1      | (8.1)  | 30    | (0.9)            | (1.2)                |
| 낙농제품          | 74.0  | (0)                  | 210   | 5.5      | (0)    | 10    | (0.6)            | (0)                  |
|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 45.6  | (0)                  | 60    | 5.7      | (5.6)  | 20    | (1.3)            | (0.3)                |
| 커피, 차         | 45.3  | (0)                  | 60    | 13.2     | (0)    | 20    | (0.4)            | (0)                  |

| 품목            | 양허관세     |                         |          | MFN 실행관세 |           |          | 수입               |                         |
|---------------|----------|-------------------------|----------|----------|-----------|----------|------------------|-------------------------|
|               | 평균<br>세율 | 무관세<br>비중 <sup>1)</sup> | 최고<br>세율 | 평균<br>세율 | 무관세<br>비중 | 최고<br>세율 | 비중 <sup>2)</sup> | 무관세<br>비중 <sup>3)</sup> |
| 곡물 및<br>그 조제품 | 44.8     | (0)                     | 160      | 7.5      | (9.6)     | 150      | (3.3)            | (45.9)                  |
| 종자, 기름        | 39.9     | (0)                     | 60       | 4.5      | (10.8)    | 10       | (2.2)            | (53.4)                  |
| 설탕 및<br>과자류   | 58.3     | (0)                     | 95       | 7.2      | (0)       | 20       | (1.8)            | (0)                     |
| 음료, 담배        | 81.3     | (0)                     | 150      | 45.9     | (0)       | 150      | (0.5)            | (0)                     |
| 면섬유           | 37.4     | (0)                     | 40       | 4.0      | (20.0)    | 5        | (0.8)            | (99.9)                  |
| 기타 농산물        | 40.7     | (0)                     | 60       | 4.1      | (17.1)    | 5        | (1.1)            | (46.0)                  |
| 어류 및<br>수산물   | 40.0     | (0)                     | 40       | 6.3      | (1.4)     | 20       | (0.3)            | (22.5)                  |
| 광물, 금속        | 38.8     | (0.1)                   | 40       | 7.1      | (17.7)    | 30       | (15.2)           | (35.3)                  |
| 석유제품          | 40.0     | (0)                     | 40       | 0.2      | (95.8)    | 5        | (12.3)           | (98.1)                  |
| 화학제품          | 37.9     | (0.1)                   | 60       | 5.3      | (14.9)    | 150      | (13.8)           | (24.0)                  |
| 목제품,<br>종이제품  | 39.4     | (0)                     | 40       | 5.0      | (31.1)    | 25       | (2.6)            | (44.8)                  |
| 직물            | 26.4     | (0)                     | 40       | 11.5     | (0.9)     | 35       | (5.3)            | (1.9)                   |
| 의류            | 35.0     | (0)                     | 40       | 23.9     | (0)       | 25       | (0.3)            | (0)                     |
| 가죽, 신발 등      | 39.7     | (0)                     | 50       | 9.9      | (14.4)    | 30       | (2.0)            | (16.1)                  |
| 비전기기계         | 35.0     | (6.5)                   | 40       | 5.4      | (1.3)     | 30       | (15.6)           | (25.8)                  |
| 전기기계          | 30.5     | (23.2)                  | 40       | 6.0      | (24.9)    | 20       | (11.2)           | (57.0)                  |
| 운송기기          | 38.8     | (0)                     | 40       | 13.5     | (29.3)    | 50       | (5.1)            | (25.6)                  |
| 기타 제조업<br>제품  | 35.4     | (9.4)                   | 40       | 7.5      | (8.0)     | 25       | (3.6)            | (14.4)                  |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2018), p. 95

나. 관세율 종류

1) 일반관세율

- 관세율표에 8단위 품목번호 및 품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임
- 제1류 내지 제99류까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 가능함

[그림 2-IV-1] 인도네시아 관세율표 예시

| No. | Pos Tarif/<br>HS Code | Uraian Barang                                  | Description of Goods                          | Bea Masuk /<br>Import Duty |
|-----|-----------------------|--|---|----------------------------|
| (1) | (2)                   | (3)  | (4)   | (5)                        |
|     | <b>01.01</b>          | <b>Kuda, keledai, bagal dan hinnie, hidup.</b> | <b>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b> |                            |
|     |                       | - Kuda :                                       | - Horses :                                    |                            |
| 1   | 0101.21.00            | - - Bibit                                      |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2   | 0101.29.00            | - - Lain-lain                                  | - - Other                                     | 5,0%                       |
|     | 0101.30               | - Keledai :                                    | - Asses :                                     |                            |
| 3   | 0101.30.10            | - - Bibit                                      |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4   | 0101.30.90            | - - Lain-lain                                  | - - Other                                     | 5,0%                       |
| 5   | 0101.90.00            | - Lain-lain                                    | - Other                                       | 5,0%                       |
|     | <b>01.02</b>          | <b>Binatang hidup jenis lembu.</b>             | <b>Live bovine animals.</b>                   |                            |
|     |                       | - Sapi :                                       | - Cattle :                                    |                            |
| 6   | 0102.21.00            | - - Bibit                                      |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 0102.29               | - - Lain-lain :                                | - - Other :                                   |                            |
|     |                       | - - - Sapi jantan :                            | - - - Male cattle :                           |                            |
| 7   | 0102.29.11            | - - - - Oxen                                   | - - - - Oxen                                  | 0,0%                       |
| 8   | 0102.29.19            | - - - - Lain-lain                              | - - - - Other                                 | 5,0%                       |
| 9   | 0102.29.90            | - - - Lain-lain                                | - - - Other                                   | 5,0%                       |
|     |                       | - Kerbau :                                     | - Buffalo :                                   |                            |
| 10  | 0102.31.00            | - - Bibit                                      |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11  | 0102.39.00            | - - Lain-lain                                  | - - Other                                     | 5,0%                       |
|     | 0102.90               | - Lain-lain :                                  | - Other :                                     |                            |
| 12  | 0102.90.10            | - - Bibit                                      |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13  | 0102.90.90            | - - Lain-lain                                  | - - Other                                     | 5,0%                       |
|     | <b>01.03</b>          | <b>Babi hidup.</b>                             | <b>Live swine.</b>                            |                            |
| 14  | 0103.10.00            | - Bibit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0%                       |
|     |                       | - Lain-lain :                                  | - Other :                                     |                            |
| 15  | 0103.91.00            | - - Berat kurang dari 50 kg                    | - - Weighing less than 50 kg                  | 5,0%                       |
| 16  | 0103.92.00            | - - Berat 50 kg atau lebih                     | - - Weighing 50 kg or more                    | 5,0%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PMK.010/2017 별표 3

2) 협정관세율

- 국제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로 일반관세율이 아닌 특혜관세율이며, 재무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02)</sup>

-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기준, 운송기준, 절차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sup>203)</sup>
- 원산지기준이란 협정국에서 생산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며, 하나의 협정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또는 품목별로 정해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을 말함<sup>204)</sup>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각 협약 또는 협정에 따름
- 운송기준이란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협정국에서 협정국 이외의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것을 의미함<sup>205)</sup>
  - 지리적인 이유 또는 수입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경우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환적할 수 있음
    - 해당 경우 또는 환적국가에서 상품이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적재 또는 하역 이외의 생산공정이나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이외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입물품이 운송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up>206)</sup>
- 절차적기준이란 원산지증명서가 협약 또는 협정에서 규정한 형식, 절차대로 작성·발급·제시되어야 함을 말함<sup>207)</sup>
  - 원산지증명서는 소급 발행되거나 수입물품이 수출국 및 수입국이 아닌 협정국을 경유한 경우, 제3국에서 상품송장이 발급된 경우 등에 협약 또는 협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20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2조

20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3조

20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4조

20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5조

20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6조

20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제7조

〈표 2-Ⅳ-5〉 인도네시아 협정관세율 관련 규정

| 구분   | 규정   |
|--|--|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br>(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5/PMK.010/2017 |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역<br>(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6/PMK.010/2017 |
|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역<br>(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4/PMK.010/2017 |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br>(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br>Agreement: IJPE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30/PMK.010/2017 |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역<br>(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7/PMK.010/2017 |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br>(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br>Area: AANZFT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8/PMK.010/2017 |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br>(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br>Agreement: IPPTA)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29/PMK.010/2017 |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br>(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br>Partnership: AJCEP) |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br>No. 18/PMK.010/2018 |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pab/fta.html>(검색일자: 2018. 9. 11)

### 3) 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율

#### 가) 덤핑방지관세

- 수입물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덤핑차액과 동일한 수준의 덤핑방지관세가 수입관세에 추가되어 부과될 수 있음(208)

- 수출가격은 인도네시아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며, 정상가격은 수출국내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덤핑차액이라고 함<sup>209)</sup>
- 실질적 피해란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동종물품의 국내산업 발전이 지연된 경우를 말함<sup>210)</sup>

(1)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 인도네시아 덤핑방지위원회(KADI<sup>211)</sup>)는 직권으로 또는 동종물품의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협회의 신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212)</sup>
  - 국내산업 생산자 등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덤핑사실,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초기증거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sup>213)</sup>
  - 직권조사는 덤핑사실, 실질적 피해,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예비증거를 KADI에서 확보한 경우에 가능함<sup>214)</sup>
- KADI는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신청서에 첨부된 초기증거의 정확성·정합성을 검토하여 조사의 승인 또는 거절의 결정을 해야 함<sup>215)</sup>
  -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사를 거절하며,

20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조

20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5항, 6항, 7항

21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13항

211) Komite Antidumping Indonesia

21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조

213)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4조

214)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5조

215)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조

신청자격과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사를 승인·개시함

-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 등이란 신청인과 조사반대를 밝힌 생산자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 중 신청인의 생산량이 50%를 초과하거나 신청인, 조사지지자, 조사반대자의 생산량 합계 중 신청인과 조사지지자의 생산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sup>216)</sup>
- 조사는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자·조사지지자의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25%, 직권에 의한 경우 조사지지자의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실시될 수 있음<sup>217)</sup>
- 또한 덤핑차액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이거나 물품이 한 국가에서 3% 미만으로 수입되고, 3% 미만으로 수입되는 국가들의 총수입량이 7% 미만인 경우 조사는 즉시 종결되어야 함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는 대중에게 공표된 때에 시작되고 최종조사보고서 일자에 종결되며,<sup>218)</sup>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되어야 함<sup>219)</sup>
  - 조사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덤핑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KADI는 즉시 조사를 종결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수출자, 수출생산자, 신청인, 수입자, 국내산업에 통보하여야 함

## (2) 잠정조치

- 조사과정에서 덤핑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KADI는 산업부 장관에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sup>220)</sup>

216)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4조

217)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6조

21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조

21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9조

- KADI의 권고를 받은 산업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있는 장관·차관급 정부기관의 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함
  - 산업부 장관의 서신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서신 수령일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KADI의 권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KADI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45 업무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KADI의 권고를 승인한 경우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액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첨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재무부 장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부과액과 부과기간을 결정함
- 잠정조치는 조사가 시작된지 적어도 60일이 경과된 후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4개월 동안 유효함<sup>221)</sup>
- 조사물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 또는 수출생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잠정조치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음
    -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이 덤핑차액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잠정조치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연장될 수 있음

### (3) 약속의 제안

-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거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수출자·수출생산자 또는 KADI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덤핑물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약속을 제안할 수 있음<sup>222)</sup>
- 수출자·수출생산자 또는 KADI의 제안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 또는 예비조

22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8조

221)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9조

22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2조

사 결과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KADI는 수출자 등의 제안이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고, 수출자 등과 양해각서를 작성함
  - KADI는 수출자 등의 제안을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고 수락·거절 여부를 수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의 수락·거절이 조사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음<sup>223)</sup>
- 약속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잠정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계속 진행됨

(4) 덤핑방지관세 부과

- KADI는 조사가 종결된 경우 최종조사 결과보고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수출자, 수출공급자, 수입자, 신청인, 국내산업에 통보하여야 함<sup>224)</sup>
  -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한 경우 KADI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권고함
    - 가격약속이 수락된 물품의 경우 해당 약속은 계속 유지됨<sup>225)</sup>
  -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KADI는 조사의 종결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함<sup>226)</sup>
    -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경우 산업부 장관은 최종조사 보고일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재무부 장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잠정조치의 종결을 결정함<sup>227)</sup>
    - 잠정조치가 종결된 경우 수입자는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납부액의 환급 또는 담

223)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3조

224)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0조

225)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3조

226)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0조

227)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1조

보의 반환을 재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약속이 수락된 경우 해당 약속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또한 종결됨<sup>228)</sup>

□ KADI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권고를 받은 산업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있는 장관·차관급 정부기관의 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함<sup>229)</sup>

- 산업부 장관의 서신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서신 수령일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KADI의 권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KADI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45 업무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KADI의 권고를 승인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액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첨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재무부 장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부과액과 부과기간을 결정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액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되며,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은 청구되지 않음<sup>230)</sup>

-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수입자는 재무부 장관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환급을 결정하여야 함

□ 덤핑방지관세는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함<sup>231)</sup>

- 잠정조치가 적용된 경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22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3조

22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5조

23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29조

231)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0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로 부터 소급부과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는 조사대상물품이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를 방지 하려는 덤핑방지관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물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경우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90일 로부터 소급부과될 수 있음
  - 다만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동종물품의 국내산업 발전이 지연된 경우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90일 전 소급적용은 불가능함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90일 전 소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전에는 적용될 수 없음

(5) 재심사

- 덤핑방지관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중단되면 실질적 피해 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KADI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232)</sup>
  - 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협력했던 수출자, 수출생산자, 신청 인, 국내산업, 수입자 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출하지 않 았던 수출자, 수출생산자가 신청한 때 또는 KADI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됨
  - 덤핑방지관세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재심사는 일몰 재심사,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단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따른 재심사는 중간 재심 사라고 함
- 중간 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12개월이 경과된 후 수출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KADI의 직권에 따라 실시될 수 있음<sup>233)</sup>
  - 중간 재심사는 다음의 자가 신청할 수 있음

23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1조

233)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2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를 원하는 수출자, 수출생산자, 수입자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에 덤핑물품을 수출하지 않은 자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자 하는 수출자, 수출생산자
- 덤핑방지관세 부과액의 변경을 원하는 수출자, 수출생산자, 수입자, 신청인, 국내산업

□ 중간 재심사 신청을 수락한 경우 KADI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중단되는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를 실시함<sup>234)</sup>

- 재심사는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재심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중단시키지는 않음
- 재심사 결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 KADI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부 장관에게 권고함
  - 수출자, 수출생산자, 수입자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신청 거절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에 덤핑물품을 수출하지 않은 수출자, 수출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신청 거절
  - 신청인, 국내산업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부과액의 변경 신청의 승인
- 재심사 결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KADI는 산업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결을 권고함

□ 일몰 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만료되기 15개월 전에 조사 신청인, 국내산업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KADI의 직권에 따라 실시될 수 있음<sup>235)</sup>

-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갱신에 추가하여 부과액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34)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3조

235)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4조

- 일몰 재심사 신청을 수락한 경우 KADI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중단되는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를 실시함<sup>236)</sup>
  - 재심사는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재심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중단시키지는 않음
  - 재심사 결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 KADI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산업부 장관에게 권고함
    -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액의 변경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상계관세

- 수입물품에 수출국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순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상계관세가 수입관세에 추가되어 부과될 수 있음<sup>237)</sup>
  - 보조금은 정부·정부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산업·산업군·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또는 수출을 늘리거나 관련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소득·가격에 대한 지원을 말함<sup>238)</sup>
    - 순보조금이란 보조금에서 신청비용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출물품을 대체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sup>239)</sup>
  - 실질적 피해란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관세양허를 통한 혜택의 취소 또는 축소를 말함<sup>240)</sup>

---

236)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5조  
 237)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7조  
 23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8항  
 23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9항  
 24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14항

- 상계관세의 조사, 잠정조치, 약속의 제안, 부과, 재심사 절차는 덤핑방지관세와 동일함<sup>241)</sup>
  - 다만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는 보조금이 종가기준 1% 미만인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물품의 수입물량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무시할 수준인 경우 실시되지 않음<sup>242)</sup>

다) 긴급수입제한조치

-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sup>243)</sup>
  - 동종물품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이 동일하거나 수입물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며,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은 수입물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말함<sup>244)</sup>
  -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중대하고도 전반적인 손실을 말하고, 심각한 피해 우려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백히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며 추측, 주장,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아야 함<sup>245)</sup>

(1)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

- 인도네시아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KPPI<sup>246)</sup>)는 직권으로 또는 국내산업 및 기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247)</sup>

241)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38조 내지 68조

24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41조

243)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0조

244)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10항, 11항

245)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1조 15항, 16항

246)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247)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1조

- 국내산업 등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동종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 증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초기증거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sup>248)</sup>
- 직권조사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라 발생했다는 충분한 예비증거를 KPPI에서 확보한 경우에 가능함<sup>249)</sup>
  
- KPPI는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조사의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함<sup>250)</sup>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사를 거절하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사를 승인·개시함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대중에게 공표된 때에 시작되고, 최종조사보고서 일자에 종결됨<sup>251)</sup>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 사실을 신청에 의한 조사인 경우 신청인 및 수입자협회에, 직권에 의한 조사인 경우 국내산업 및 수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수입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초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KPPI는 즉시 조사를 종결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신청인 및 수입자협회 또는 국내산업 및 수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2) 잠정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늦어지면 국내산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KPPI는 조사기

24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2조

24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3조

25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2조

251)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4조

간 중에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sup>252)</sup>

- KADI의 권고를 받은 산업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있는 장관·차관급 정부기관의 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함<sup>253)</sup>
  - 산업부 장관의 서신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서신 수령일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KADI의 권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부 장관은 KPPI의 권고를 기초로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관세액과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부 장관은 KPPI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재무부 장관에게 서신으로 발송하고, 재무부 장관은 서신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산업부 장관의 결정을 기초로 부과액과 부과기간을 결정함
- KPPI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신청인 및 수입자협회 또는 국내산업 및 수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sup>254)</sup>

□ KPPI의 최종조사 결과보고서가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는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sup>255)</sup>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 장관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부 장관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환급결정을 해야 함

### (3)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 KPPI는 최종조사 결과보고서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를

25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0조

253)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1조

254)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2조

255)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3조

초래함을 입증한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권고함<sup>256)</sup>

-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권고를 받은 산업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있는 장관·차관급 정부기관의 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함<sup>257)</sup>
    - 산업부 장관의 서신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서신 수령일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고려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KPPI의 권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부 장관은 KPPI의 권고를 기초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관세액과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KPPI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재무부 장관에게 서신으로 발송하여야 함
  - 재무부 장관은 서신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산업부 장관의 결정을 기초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관세액과 기간을 결정함
  - KPPI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신청인 및 수입자협회 또는 국내산업 및 수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액과 잠정수입제한조치 부과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 또한 청구되지 않음<sup>258)</sup>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대 4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은 추가로 최대 4년이 연장될 수 있음<sup>259)</sup>
- 연장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은 최대 2년간 갱신될 수 있음

(4) 재심사 및 재부과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중간 이전에 KPPI는

256)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77조

257)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1조

258)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5조

259)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6조

중간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260)</sup>

- 재심사 결과에 따라 KPPI는 산업부 장관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음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만료되기 상당한 기간 전에 KPPI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sup>261)</sup>
  - 연장신청을 받은 KPPI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함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조치 종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재부과될 수 있음<sup>262)</sup>
  - 첫 번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재부과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과된 지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일로부터 과거 5년간 2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

---

260)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7조

261)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8조

262) Regulation of Government No. 34/2011 제89조

## V. 감면 및 환급제도

### 1. 관세감면제도

#### 가. 면세

##### 1) 외교용 물품

- 인도네시아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외국 대표단 및 그 직원의 물품 또는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63)</sup>
  - 외국 대표단이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인한 외교·영사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단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도 포함함<sup>264)</sup>
  - 국제기구란 UN, 외국 또는 외국단체·협회 산하의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기구임<sup>265)</sup>
    - 국제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익목적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sup>266)</sup>

---

26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

26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9/PMK.04/2015 제1조

26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1조

26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2조

- 외국 대표단 면세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외국 대표단 공관의 설립·확장·수리, 외국 대표단의 공무, 주지사·대통령·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급을 가진 자의 공적 방문에 사용되거나 외국 대표단의 개인용품이어야 함<sup>267)</sup>
  - 개인용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대표단의 의무·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국적의 자로서 임명절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자여야 함
    - 개인용품에는 대표단 가족의 이사물품도 포함되며, 이사물품은 거주허가가 발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제기구 면세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제기구의 공무, 기술협력 수행에 사용되거나 전문장비 또는 개인용품이어야 함<sup>268)</sup>
  - 국제기구에서 직접 임명되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국제기구의 의무·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업무수행을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자의 개인용품은 면세가 가능함
    - 개인용품에는 가족의 이사용품이 포함되며, 이사물품은 거주허가가 발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면세가 가능함
    - 이사물품에 자동차가 포함된 경우 국제기구의 장에게만 면세혜택이 가능함
  
-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 대표단 물품은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기구 물품은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표 또는 장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269)</sup>
  - 면세는 직원의 수, 기관의 의무·기능·필요 등을 참조하여 면세를 부여하는 물품의 수량·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여됨<sup>270)</sup>

26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9/PMK.04/2015 제3조

26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4조

26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9/PMK.04/2015 제4조;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5조

27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9/PMK.04/2015 제5조;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6조

- 외국 대표단 물품 또는 국제기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면제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 결정문을 발급함<sup>271)</sup>
- 면세가 부여된 물품은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의 면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공익용 물품

### 가) 지식서적

-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과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서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sup>272)</sup>
- 지식서적이란 과학기술서적, 일반교과서, 경진, 종교교리책, 기타 과학도서를 포함함<sup>273)</sup>
  - 오락서적, 대중연애서적, 미술서적, 광고서적, 사업홍보서적, 교육 목적 이외의 분야 서적, 풍자만화서적, 공포서적, 만화책, 그림복제서적은 지식서적에서 제외됨
- 지식서적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면세신청서를 물품의 종류, 제목, 예상 과세가격 및 교육부 또는 종교부 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74)</sup>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함<sup>275)</sup>

27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9/PMK.04/2015 제4조;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PMK.04/2018 제5조

27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1조 내지 제2조

27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3조

27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4조

27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5조

- 면세를 승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결정문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문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예상 과세가격 및 지정된 하역항이 포함되어야 함
- 면세를 거절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거절통보서를 발급하며, 통보서에는 거절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

- 면세가 승인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세결정문상 물품의 수량, 종류가 다른 경우 수입관세는 납부되어야 함<sup>276)</sup>
- 또한 지식서적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는 추정되며, 적용가능한 행정제재가 부과됨<sup>277)</sup>

#### 나) 기부물품

##### (1) 종교·공공·자선·사회·문화 목적으로 기부되는 물품

- 종교·공공·자선·사회·문화 목적으로 기부되는 물품은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78)</sup>
- 면세가 가능한 기부물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함<sup>279)</sup>
  - 종교시설, 병원, 보건소, 학교를 설립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물품
  -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병원차, 이동도서관을 위한 운송수단, 의료종사자를 위한 운송수단
  - 문화 목적의 협회·단체가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필요한 물품
  - 주일에 사용하는 예배용품, 기도용 깔개·양탄자, 성물 등
  - 사회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 장비, 치료도구

27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6조

27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3/PMK.04/2007 제7조

27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2조

27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3조

-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음식,약품, 의류
- 공공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협회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학습장비
-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협회·단체는 다음에 한함<sup>280)</sup>
  -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법인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법인
  - 비영리기관
-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협회·단체는 면세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81)</sup>
  - 신청서에는 면세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종류 및 과세가격, 해외기부자의 증명서, 관련 기술기관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해외기부자의 증명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외화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은 기부물품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 기부물품이 수입금지·제한 대상물품인 경우 해당 금지·제한 규정을 제정한 관련 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282)</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 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기부물품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물검사를 시행함<sup>283)</sup>
  - 심사 결과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관세 및 소비세는 추징되며, 적용가능한 행정제재가 부과됨

28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4조

28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5조

28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5조

28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0/PMK.04/2012 제6조

(2) 자연재해 대처 목적으로 기부되는 물품

-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홍수, 가뭄, 허리케인,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부되는 물품은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84)</sup>
  -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가·지방 재해관리기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공표된 재해응급대응기간, 재활 및 재건으로의 전환기간, 재활 및 재건기간에 수입되어야 함
  - 또한 국가·지방 재해관리기관에서 국제원조 반입 지점으로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만 면세가 가능함
  
- 자연재해 대처 목적의 기부물품에 대한 면세는 종교·자선·사회·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및 협회,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비정부기구가 신청할 수 있음<sup>285)</sup>
  - 종교·자선·사회·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및 협회는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이 법인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비영리기관임
  - 재활 및 재건기간에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비정부기구가 면세를 신청할 경우 국제기구 물품 면세규정에 의한 면세가 적용됨
  
- 재해응급대응기간 또는 재활 및 재건으로의 전환기간에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286)</sup>
  - 국가·지방 재해관리기구, 재해영향권의 주지사, 재해영향권 밖의 물품반입 지역 주지사가 확인한 물품의 목록

28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9/PMK.04/2012 제2조

28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9/PMK.04/2012 제4조

28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9/PMK.04/2012 제5조

- 인도네시아에서 외화를 지급하지 않고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된 해외기부자가 발급한 기부증명서
    - 해외기부자의 기부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증명서 또는 진술서로 대체될 수 있음
  - 국가·지방 재해관리기구, 재해영향권의 주지사, 재해영향권 밖의 물품반입 지역 주지사의 추천서
  - 면세받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 금지·제한 대상물품인 경우 해당 금지·제한 관련 규정 제정의 권한이 있는 기술기관의 추천서
    - 또는 기술기관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재해관리기관이 합법화한 물품의 목록
- 재활 및 재건기간에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에게 물품명세 및 과세가격, 기부증명서, 국가·지방 재해관리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287)</sup>
- 면세받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 금지·제한 대상물품인 경우 해당 금지·제한 관련 규정 제정의 권한이 있는 기술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288)</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 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다) 공공장소용 물품
- 박물관, 동물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물품과 자연보호를 위한 물

28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9/PMK.04/2012 제6조

28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69/PMK.04/2012 제5조 내지 제6조

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89)</sup>

○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290)</sup>

- 공공장소의 주요 구성요소인 물품, 동물, 식물
- 물품, 동물, 식물을 보호·유지·보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공공장소의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정부기관은 공공장소용 물품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한 면세신청서를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91)</sup>

○ 관련 정부부처의 박물관, 동물원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대한 결정문

- 관련 정부기관이 면세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물품의 수량, 종류, 사용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재무부의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기술기관의 면세추천서

○ 물품의 수량, 종류, 원산지, 예상 과세가격, 입항지, 물품기능에 대한 설명

○ 기부된 경우 해외기부자의 기부증명서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4 업무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292)</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 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면세결정문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 면세받은 물품이 면세목적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세를 추징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벌금형태의 행정제재가 부과됨<sup>293)</sup>

28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90/PMK.04/2012 제2조

29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90/PMK.04/2012 제3조

29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90/PMK.04/2012 제4조

29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90/PMK.04/2012 제5조

29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90/PMK.04/2012 제6조

라) 기타 공익용 물품

-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이나 발전·향상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94)</sup>
  -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수량·종류, 예상 과세가격,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sup>295)</sup>
- 시각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및 재화는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96)</sup>
  -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수량·종류, 예상 과세가격,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sup>297)</sup>

3) 국방용 물품

- 무기, 탄약, 군 및 경찰장비 등 국가방위 및 안전을 위한 물품 또는 국가방위 및 안전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품 및 자재는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98)</sup>
  - 국방용 물품은 대통령산하기관, 국방부, 국군본부, 경찰본부, 국가정보국, 국가암호연구소, 국가마약국, 국가대테러국에서 수입·사용할 수 있으며, 면세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sup>299)</sup>
    - 국방용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제3자에 의

29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

295) Tanjung Emas 세관, <http://bctemas.beacukai.go.id/faq/pembebasan-bea-masuk/>(검색 일자: 2018. 9. 12)

29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

297) Tanjung Emas 세관, <http://bctemas.beacukai.go.id/faq/pembebasan-bea-masuk/>(검색 일자: 2018. 9. 12)

29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2조

29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3조

하여 수입될 수 있음<sup>300)</sup>

- 국방용 물품의 생산용 물품은 국가방위 및 안전을 위한 물품의 생산자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 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며<sup>301)</sup>, 해당 사업자가 국방부, 국군본부, 경찰본부와의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수입할 수 있음<sup>302)</sup>
  - 국방용 물품의 생산용 물품으로 면세 가능한 물품의 목록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sup>303)</sup>

□ 국방용 물품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공급계약을 맺은 제3자는 세관장에게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04)</sup>

- 면세신청 시 물품의 명세와 목록, 구매에 따른 수입인 경우 구매서류, 기부에 따른 수입인 경우 기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정부기관과의 공급계약을 맺은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계약가격에는 수입관세 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또한 면세신청서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정부기관의 장 또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서명이 필요함
  - 대통령 산하기관에서 수입한 경우는 내무부 장관 또는 내무부의 2급 이상 공무원의 서명이 필요함

□ 국방용 물품의 생산용 물품을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05)</sup>

- 면세신청서에는 공급계약서, 사업허가증사본, 국가방위 및 안전을 위한 물품의 생산자로 지정된 결정문 사본, 납세식별번호증 사본, 수입등록번호증 사본, 물품 수입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30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5조

30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4조

30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5조

30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4조

30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6조

30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9조

-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가격에 수입관세 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물품수입계획은 국방부 장관, 국군참모총장, 경찰총장 또는 이들이 지정한 2급 이상의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확인된 특정 기간 내에 국가방위 및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및 자재의 목록임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면세신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통보서를 발급함<sup>306)</sup>

- 면세결정문에는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장소 등이 기재되며, 거절통보서에는 거절의 이유가 명시됨

□ 국방용 물품 또는 국방용 물품의 생산용 물품으로 면세가 가능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면세를 받고자 하거나 국방용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자가 면세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면세를 신청하여야 함<sup>307)</sup>

- 이 경우 재무부 장관이 면세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며, 관세청장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결정문 또는 거절신청서를 발급함<sup>308)</sup>

#### 4) 비상업용 물품

##### 가) 비매용 견본

□ 수출 또는 국내영업을 하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시로 특별히 수입되는 견본은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309)</sup>

30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6조 내지 제9조

30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7조 내지 제8조, 제11조

30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91/PMK.04/2016 제7조 내지 제12조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견본은 신제품 도입을 위한 것으로 하나의 상표·규격·종류에서 3개 이내의 물품이 품질조사 또는 개발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국내에서 양도·판매·소비되지 않아야 함<sup>310)</sup>
  - 어떤 종류·형태의 물품이든지 중장비를 포함한 자동차는 견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수량·종류, 예상 과세가격,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나) 이사물품

-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자동차와 상업용 물품을 제외한 이사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sup>311)</sup>
-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면세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sup>312)</sup>
  - 인도네시아 국군 또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최소 1년 이상의 해외업무 또는 해외연수를 한 경우 관계기관의 파견·복귀 서신 또는 증명서로 증빙되어야 함
  -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유학생은 학위완료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함
  - 외교부와의 업무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1년 이상 인도네시아 대표단으로 일하는 자는 외교부의 서신으로 증명됨
  - 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해당 국가에 주둔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확인한 물품의 명세·설명서가 필요함

30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

310) Tanjung Emas 세관, <http://bctemas.beacukai.go.id/faq/pembebasan-bea-masuk/>(검색 일자: 2018. 9. 12)

31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08 제2조

31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08 제3조

- 직장이 인도네시아 관세영역 내로 이전된 외국국적의 자로서 이민청에서 임시 거주를 허가 받은 자 또는 노동부에서 임시취업을 허가 받은 자는 1년 이상의 임시거주허가증 또는 임시취업허가증으로 증빙되어야 함

- 이사물품은 소유자와 같이 반입되거나 소유자의 인도네시아 도착 전후 3개월 내에 반입되어야 함<sup>313)</sup>
  - 이사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세관에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여권사본 및 면세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sup>314)</sup>
  - 수입신고된 이사물품은 물리적 검사대상이 됨<sup>315)</sup>

#### 다) 여행물품

- 여객 또는 승무원의 개인용품으로 관세영역 밖에서 취득한 후 다시 관세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 물품은 수입 시 과세가격 한도 내에서 또는 일정량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됨<sup>316)</sup>
  - 여객 또는 승무원의 개인용품으로 관세영역 내에서 취득한 것은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됨
  - 여객 또는 승무원의 개인용품으로 관세영역 밖에서 취득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사용하다가 여객 또는 승무원이 출국할 때 관세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일시수입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세 또는 감세됨
  - 여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용품 외에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됨<sup>317)</sup>

- 여객의 개인용품 중 관세영역 밖에서 취득한 것은 여객 1인당 과세가격이 FOB

---

31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08 제4조  
31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08 제5조  
31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08 제6조  
31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1조  
31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6조

가격 5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며, 면세한도 초과분은 관세 및 소비세가 과세됨<sup>318)</sup>

- 소비세 대상물품은 성인 1인당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비, 잎담배·조각잎담배·기타 담배조제품 100g, 에틸알코올 함유 음료 1ℓ가 면세됨<sup>319)</sup>
  - 2종 이상의 담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량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됨
  - 면세한도 초과분은 여객의 참관과 관계없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즉시 폐기됨

□ 승무원의 개인용품 중 관세영역 밖에서 취득한 것은 1인당 과세가격이 FOB 가격 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며, 면세한도 초과분은 관세 및 소비세가 과세됨<sup>320)</sup>

- 소비세 대상물품은 성인 1인당 담배 40개비, 시가 10개비, 잎담배·조각잎담배·기타 담배조제품 40g, 에틸알코올 함유 음료 350ml가 면세됨<sup>321)</sup>
  - 2종 이상의 담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량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됨
  - 면세한도 초과분은 승무원의 참관과 관계없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즉시 폐기됨

## 5) 의료용품

□ 정부예산으로 수입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적 질병·상처·이상을 진단·예방·경감·제거·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sup>322)</sup>

- 면세되는 의약품은 보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련 장관급·비장관급 부처 또는 정부기관, 병원, 장관·비장관급 부처 또는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제3자가 수입할 수 있음<sup>323)</sup>
  -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계약가격에는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31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2조

31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3조

32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2조

32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03/PMK.04/2017 제13조

32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2조

32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3조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신청서에 예산이행등록목록, 관련 기술기관의 추천서,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24)</sup>
  -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업무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25)</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수입된 물품의 수량, 종류가 면세결정문과 다른 경우 차이분에 대한 관세는 추징됨<sup>326)</sup>
  - 수입된 의약품이 면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세가 추징되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됨<sup>327)</sup>
  
- 인간 치료물질, 혈액응고물질 및 조직물질은 수입관세가 면세될 수 있음<sup>328)</sup>
  - 면세될 수 있는 물품은 다음의 것에 한함<sup>329)</sup>
    - 인간에서 유래한 치료물질로 전혈, 건조 혈장 알부민, 감마글로블린, 피브리노겐과 같은 혈액 및 유도체 및 인체조직
    - 인간, 동물, 식물 기타 원천에서 추출된 혈액응고물질

32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4조

32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5조

32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6조

32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2/PMK.04/2007 제7조

328)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

329) Tanjung Emas 세관, <http://bctemas.beacukai.go.id/faq/pembebasan-bea-masuk/>(검색 일자: 2018. 9. 12)

- 인간, 동물, 식물 기타 원천에서 추출된 조직물질

## 6) 재수입 물품

- 수출되었다가 동일한 품질로 재수입된 물품, 수리·보수작업·시험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음<sup>330)</sup>
  - 동일한 품질, 수리, 보수작업, 시험목적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함<sup>331)</sup>
    - 동일한 품질이란 추가가공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객의 개인용품, 전시·공연·경연물품, 인수거절물품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는 것을 말함
    - 수리란 손상되거나 오래된 부분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함
    - 보수작업이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개선작업을 말함
    - 시험은 표준에 따라 기술·품질·성능요건을 시험하는 작업을 말함
  - 동일 품질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최초 수입 시 면세되었거나 수출 시 환급된 경우 면세분 또는 환급분은 과세됨<sup>332)</sup>
  - 수리 또는 보수작업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대체부분·추가부분과 수리·가공비, 운송비, 보험료는 관세 및 소비세가 과세됨
-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종류·수량, 과세가격, 수출신고서, 수출승인, 검사결과보고서 또는 검수보고서, 기타 수출증명, 수입·수출 시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33)</sup>
  - 수리 또는 보수작업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대체부분·추가부분의 가격, 수리·가공비가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33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6/PMK.04/2007 제2조

33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6/PMK.04/2007 제1조

33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6/PMK.04/2007 제2조

33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6/PMK.04/2007 제4조

- 동일 품질로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을 반송하는 이유가 설명된 관련 해외 담당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험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의 시험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승인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관세 및 소비세 면세 결정문을 발급하고, 면세를 거절한 경우 거절통보서를 발급함<sup>334)</sup>

## 나. 조건부 감면<sup>335)</sup>

### 1) 산업 개발 및 발전용물품

-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산업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물품·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될 수 있음<sup>336)</sup>
- 산업 개발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회사 또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 발전이란 제품의 생산량, 종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를 포함한 설비를 추가·현대화·재건·재구성하는 등 기존의 회사 또는 공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함<sup>337)</sup>
  - 면세 가능한 기계, 물품·원재료는 아직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국내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주요사양이 불충분한 것 또는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생산량이 업계수요에 충분하지 않은 것에 한함<sup>338)</sup>
- 산업 개발용 기계는 면세결정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투자승인서에 명시된 산업 개발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할 수 있음<sup>339)</sup>

33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6/PMK.04/2007 제4조

335) 특정 요건이나 목적에 근거하여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됨(「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6조 해설)

33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2조

33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1조

33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2조

- 산업 개발용 기계의 수입을 완료하여 생산준비가 된 재화생산 업체는 2년 동안 생산 가능한 물품·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입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 2년 내에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면세기간 만료 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년의 기간에서 지연된 기간은 차감함
  
- 산업 발전용 기계는 면세결정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투자승인서에 명시된 산업 발전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할 수 있음<sup>340)</sup>
- 산업 발전용 기계의 수입을 완료하여 생산능력이 30% 이상 향상된 재화생산 업체는 2년 동안 생산 가능한 물품·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입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 2년 내에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면세기간 만료 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년의 기간에서 지연된 기간은 차감함
  
- 산업 개발용 또는 발전용 기계를 수입한 재화생산 업체가 국내생산기계를 총기계 가치의 30%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품·원재료에 대한 면세기간을 4년으로 부여할 수 있음<sup>341)</sup>
- 4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물품·원재료의 수입을 할당 등 무역시스템에 의하여 4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세기간은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될 수 있음<sup>342)</sup>
  - 재무부 장관은 연장된 1년의 기간 동안 수입이 필요한 수량 등을 고려하여 할당량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산업 개발 또는 발전용 기계, 물품·원재료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대표가 서명한 면세신청서를 투자조정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43)</sup>

33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3조

34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4조

34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5조

34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5A조

34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7조 내지 제8조

- 기계의 면세신청 시 법인설립증명서, 투자승인서, 납세의무자 식별번호 및 과세사업자로서의 제출영수증, 통관식별번호, 수입자식별번호, 물품의 수량·종류·기술사양, 수입항구 등이 기재된 기계목록을 첨부하여야 함
    - 재화생산업체의 경우 가공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용역제공업체의 경우 사업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추가됨
  - 물품·원재료의 면세신청 시 물품의 수량·종류·기술사양, 수입항구 등이 기재된 물품·원재료의 목록, 산업 개발용 기계의 수입신고서 또는 국내구매송장을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투자조정위원회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 업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44)</sup>
- 면세신청을 승인한 경우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기계, 물품·원재료의 수량·종류·사양, 예정가격을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거절한 경우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거절의 이유가 명시된 거절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함
  - 투자조정위원회장은 면세결정문의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7 업무일 이내에 관세청장과 물품수입예정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2) 환경오염 방지물품

-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345)</sup>
- 환경오염 방지 장비 또는 자재란 환경오염이나 손상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기계 및 그 부분품과 물리적·화학적 물품을 말함<sup>346)</sup>

34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88/PMK.010/2015 제9조

34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2조

34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1조

- 면세를 받고자 하는 폐기물가공회사, 제조업체·병원 등 폐기물을 생산하는 활동·가공을 하는 업체는 면세신청서를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47)</sup>
  - 면세신청서에는 법인설립증명서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사업허가서, 납세의무자 식별번호, 과세사업자로서의 제출영수증,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명세서,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추천서에는 폐기물을 환경오염이나 손상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진술과 환경오염을 방지·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가 명시되어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48)</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수입된 물품의 수량, 종류가 면세결정문과 다른 경우 차이분에 대한 관세는 추징됨<sup>349)</sup>
  -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면세가 가능함<sup>350)</sup>

### 3) 농림축수산물

#### 가) 모종 및 종자

-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분야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번식용 또는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모종 및 종자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sup>351)</sup>

34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3조

34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4조

34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5조

35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1/PMK.04/2007 제6조

- 변식용 모종 및 종자는 농림축산업, 수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변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입하여야 함
  - 연구용 모종 및 종자는 관련 기술기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기타기관이 수입하여야 함
- 모종 및 종자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52)</sup>
- 변식용 모종 및 종자는 법인설립증명서, 납세의무자 식별번호 및 과세사업자로서의 제출영수증, 관련 기술기관의 추천서, 원산지국가에서 발급한 동·식물의 건강증명서,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구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sup>353)</sup>
  - 연구용 모종 및 종자는 관련 기술기관의 추천서, 원산지국가에서 발급한 동·식물의 건강증명서,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구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54)</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수입된 물품의 수량, 종류가 면세결정문과 다른 경우 차이분에 대한 관세는 추징됨<sup>355)</sup>
  - 수입된 모종 및 종자가 면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세는 추징되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됨<sup>356)</sup>

35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2조 내지 제3조

35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4조

35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5조

35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4조

35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6조

나) 해양수산물

-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해양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sup>357)</sup>
  -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입자는 수산업 자격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경제수역 내의 해양수산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 해양수산물이란 생선, 갑각류, 새우, 게 등 식용에 적합한 해양식물, 해양동물로 포획시설에서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함<sup>358)</sup>
  
- 해양수산물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신청서를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59)</sup>
  - 면세신청서에는 관련 기관의 사업허가서, 납세의무자 식별번호 및 과세사업자로서의 제출영수증, 어획자격증, 해양수산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목록,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구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60)</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수입된 물품의 수량, 종류가 면세결정문과 다른 경우 차이분에 대한 관세는 추징됨<sup>361)</sup>

35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05/PMK.04/2007 제7조

35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13/PMK.04/2007 제2조

35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13/PMK.04/2007 제1조

35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13/PMK.04/2007 제3조

36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13/PMK.04/2007 제4조

36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13/PMK.04/2007 제5조

#### 4) 손상물품

- 손상, 가치저하, 파손, 중량·부피 감소 등이 이루어진 수입물품은 수입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음<sup>362)</sup>
  - 물품의 손상 등은 관세영역으로 운송되었을 때와 사용을 위한 수입신고 승인이 된 때의 사이에 자연적 원인에서 발생하여야 함
  
- 면세 또는 감세를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관세청장에게 면세 또는 감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63)</sup>
  - 신청서에는 물품 상태에 대한 증거와 면세 또는 감세를 신청한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면세 또는 감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sup>364)</sup>
  - 물품의 상태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은 평가를 수행할 권한 있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관세청장은 물리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65)</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36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07 제2조

36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07 제3조

36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07 제4조

36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07 제5조

## 5) 정부용품

- 중앙·지방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sup>366)</sup>
  -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업무협약을 맺은 제3자에 의한 수입도 면세받을 수 있음
  - 수입물품은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이나 해외 기부·원조금으로 수입되어야 함<sup>367)</sup>
  
- 면세받고자 하는 중앙·지방정부 또는 중앙·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은 제3자는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68)</sup>
  -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예산집행등록목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수입물품이 수입금지·제한대상인 경우 관련 기술기관의 허가서
    -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업무 협약서 또는 계약서
    -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 관련 정부기관의 2급 이상 공무원이 서명한 예산집행실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로 예산집행등록목록은 수입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
  - 해외 기부 또는 원조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중앙·지방정부에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기부한다고 명시된 기부증명서
    - 수입물품이 수입금지·제한대상인 경우 관련 기술기관의 허가서
    - 물품의 수량·종류,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 면세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69)</sup>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

36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11 제2조

36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11 제3조

36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11 제4조

36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8/PMK.04/2011 제5조

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6) 운동용품

- 운동지도·발전·훈련 또는 국내·국제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물품을 체육단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370)</sup>
  - 체육단체란 체육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체육단체를 말함
    - 국가체육단체에는 국가체육회, 인도네시아 올림픽 체육회가 포함됨
  - 면세를 받은 물품은 국가체육단체에 의하여 체육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국가체육단체, 체육 분야 업무 담당 장관과의 업무협약을 맺은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도 면세가능함
  
- 운동용품을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71)</sup>
  - 면세신청서에는 체육 분야 담당 부처의 2급 이상 공무원의 추천서, 물품의 수량·종류·사양, 과세가격 및 하역항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업무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며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는 계약가격에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 관세청장은 면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업무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72)</sup>

37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56/PMK.04/2016 제2조

37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56/PMK.04/2016 제3조

37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56/PMK.04/2016 제5조

- 면세를 승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을 대리하여 물품의 명세, 과세가격, 하역항과 유효기간이 기재된 면세결정문을 발급하며,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포함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면세결정문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입된 물품의 수량이 면세결정문과 다른 경우 차이분에 대한 관세는 추징됨<sup>373)</sup>
  - 수입된 물품의 종류·사양이 면세결정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됨
- 체육단체에 의하여 체육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해당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됨<sup>374)</sup>

## 7) 수출용 원재료

- 수입원재료가 수출을 위한 물품으로 가공·조립·설치되는 경우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사치품 판매세는 면제될 수 있음<sup>375)</sup>
  - 원재료는 관세영역 밖, 보세창고,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또는 정부기관에서 설립한 기타 경제구역에서 수입되어야 함<sup>376)</sup>
- 면세받고자 하는 업체는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sup>377)</sup>
  -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과 세관식별번호가 필요함
    -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 여부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신설법인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설명서로 증빙되어야 함
    - 관세청에 접속할 수 있고 세관세류와 링크되어 있는 재고정보시스템의 증빙에

37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56/PMK.04/2016 제6조

37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56/PMK.04/2016 제7조

37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2조

37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8조

37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3조

는 시스템 사용설명서와 해당 시스템의 캡처 화면이 필요함

- 법인의 유형이 제조 산업임은 제조 산업허가증으로 증명되어야 함
- 생산 활동 장소, 원재료·생산품의 보관 장소를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통제 증빙서류로 증명되어야 함
- 생산계획은 가공공정, 수입·수출 계획, 원재료·생산품 목록, 생산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 목록으로 증명되어야 함

-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78)</sup>
  - 신청요건의 증명서류는 스캔 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 수입규모가 가장 큰 공장이 소재하는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는 형식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79)</sup>
  - 승인한 경우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명시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취득한 업체는 공장에 취득일, 업체명, 등록번호를 게시하여야 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입신고서의 수입편의 요청사항란에 면세용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sup>380)</sup>
  - 수입신고서와 함께 면세기간 및 책임보고서 심사기간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함께

37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3조

37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3조

38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9조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금액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에 해당하여야 함<sup>381)</sup>

- 수입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보복관세가 포함됨

□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심사를 실시함<sup>382)</sup>

- 심사 결과 세율, 과세가격의 불일치가 면세용 업체등록번호에서 명시한 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수입업자는 보증서의 담보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물품의 수량·종류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면세는 허용되지 않음

□ 면세기간이란 생산품의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간으로 물품의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함<sup>383)</sup>

- 물품의 생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보다 초과하여 면세기간이 주어질 수 있음
- 면세기간은 해외구매자에 의하여 수출이 지연되거나 해외구매자에 의하여 수출이 취소·대체된 경우,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항력 상황인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면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업자는 면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책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84)</sup>

- 책임보고서에는 수입신고서류, 수출신고서류, 수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8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10조

38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11조

38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7조

38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17조

수출검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세관장 등은 관련 서류의 완전성, 면세기간, 수출입의 진위, 책무보고서 내용의 진위, 원재료 소요량, 제품의 생산량, 가공공정의 적합성 등을 심사함
    - 책무보고서 심사 결과 원재료 소요량이 다른 경우 면세는 불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벌금형태의 행정제재가 부과됨
  - 가공공정상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세영역 내에서 판매한 경우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금은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됨
    - 일반관세율이 5% 이상인 원재료의 경우 5%의 관세가, 5% 미만인 원재료인 경우 적용 가능한 세율이 적용됨
-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는 책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 업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85)</sup>
- 책임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수입업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반환됨
  - 책임보고서를 거절한 경우 수입관세 등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벌금형태의 행정제재가 부과됨
    - 책임보고서를 부분적으로 거절한 경우 거절된 부분에 한하여 면세가 되지 않으며, 벌금형태의 행정제재가 부과됨

## 2. 관세환급제도

### 가. 과오납 환급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는 환급됨
- 다음의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납부된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함<sup>386)</sup>

38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6/PMK.04/2013 제17조

- 수입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세관공무원이 결정한 경우
  - 수입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재결정한 경우
  - 행정오류로 수입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관세법」 제25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관세 면제 또는 경감대상인 경우(수출용 원재료로 관세가 환급된 경우는 제외함)
  - 특정사유로 세관공무원의 감시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수입업자의 의지에 따라 재수출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관세영역 내로 반입할 수 없어 재수출되어야 함)
  - 수입신고 수리 전 결함, 주문오류,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대상보다 실제물량이 더 적은 경우
  - 수입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납부된 수출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함<sup>387)</sup>
- 취소되거나 수출되지 않은 경우
  - 행정오류로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세관공무원이 결정한 경우
  -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재결정한 경우
  -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이의제기 결정이 난 경우
  - 수출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서명이 있는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서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sup>388)</sup>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세관신고서, 위촉장, 이의제기 결정문, 법원 결정문, 관세면제·경감결정문, 물품취소 관련 서류의 사본

38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74/PMK.04/2014 제2조

38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74/PMK.04/2014 제3조

38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74/PMK.04/2014 제6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납부영수증 또는 지급 증명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환급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
- 수익자의 계좌가 사용 중이라는 은행의 서신
-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요청하는 서류

-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형식 및 실질심사를 수행함<sup>389)</sup>
  - 형식심사는 신청서의 형식·기재사항의 적정성, 요청서류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며, 형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함
    - 형식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형식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도록 신청서를 반환함
  - 실질심사 시에는 이미 환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관련 서류, 납부의 증명, 환급을 주장하는 세액과 근거서류·납부서류의 적정성, 반환계좌, 체납 여부,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규격·수량 해당 여부 등의 심사가 이루어짐
- 세관장은 환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결정을 하여야 함<sup>390)</sup>
  - 환급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가 체납한 사실이 없다면 환급결정문을 발급하고 결정문은 신청인에게, 그 사본은 관세청 행정부서, 세관 등에 발송함
  - 환급신청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명시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나. 수출용 원재료 환급

- 수입원재료가 수출을 위한 물품으로 가공·조립·설치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수입관세는 환급될 수 있음<sup>391)</sup>

38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74/PMK.04/2014 제8조

39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74/PMK.04/2014 제10조

39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2조

- 원재료는 관세영역 밖, 보세창고,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또는 정부기관에서 설립한 기타 경제구역에서 수입되어야 함<sup>392)</sup>
  
- 환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sup>393)</sup>
  -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과 세관식별번호가 필요함
    -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 여부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신설법인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설명서로 증빙되어야 함
    - 관세청에 접속할 수 있고 세관세류와 링크되어 있는 재고정보시스템의 증빙에는 시스템 사용설명서와 해당 시스템의 캡처 화면이 필요함
    - 법인의 유형이 제조 산업인 것은 제조 산업허가증으로 증명되어야 함
    - 생산 활동 장소, 원재료·생산품의 보관 장소를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통제 증빙서류로 증명되어야 함
    - 생산품·원재료에 대한 계획은 생산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 목록, 생산 공정을 수행할 장소에 대한 명세로 증명되어야 함
  
-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94)</sup>
  - 신청요건의 증명서류는 스캔 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 수입규모가 가장 큰 공장이 소재하는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는 형식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

39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6조

39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3조

39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3조

- 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sup>395)</sup>
- 승인한 경우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명시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취득한 업체는 공장에 취득일, 업체명, 등록번호를 게시하여야 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입신고서의 수입편의 요청사항란에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sup>396)</sup>
- 수입신고서에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서에 포함된 수입물품·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는 환급되지 않음
    - 환급되는 수입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보복관세가 포함됨<sup>397)</sup>
- 생산품의 수출은 물품의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sup>398)</sup>
- 물품의 생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보다 초과하여 수출이행기간이 주어질 수 있음
  - 수출이행기간은 해외구매자에 의하여 수출이 지연되거나 해외구매자에 의하여 수출이 취소·대체된 경우,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항력 상황인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일 또는 수출검사를 받은 경우 수출검사보고서

39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3조

39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7조

39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13조

398)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13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sup>399)</sup>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sup>400)</sup>

- 환급신청서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수입신고서류와 수입관세계좌를 통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 수출신고서류, 수출거래의 증빙서류, 수출검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는 서류의 구비 여부, 수출요건·신청시기 준수 여부, 원재료 소요량, 제품 생산량, 생산과정의 적합성을 심사함<sup>401)</sup>

- 세관장 등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 업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함
- 환급신청을 승인한 경우 수입관세 환급결정문을 발급하고, 거절한 경우 거절의 이유를 명시한 거절통보서를 발급함

---

399)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13조

40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14조

401)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77/PMK.04/2013 제15조

## VI. 원산지 제도

-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국내법령 또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sup>402)</sup>, 인도네시아는 무역부 장관 규정 77/M-DAG/PER/10/2014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구성됨<sup>403)</sup>

### 1. 특혜 원산지 규정

- 특혜 원산지 규정은 하나의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와의 협약에 의하거나 특정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관세 면제 또는 경감과 같은 특혜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임<sup>404)</sup>
- 따라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규정과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을 모두 포함함<sup>405)</sup>

---

402)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Word=%ec%95%84&type=2&vocalId=3910>(검색일자: 2018. 10. 31)

403)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2조

404)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3조 1항

405)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4조 1항

- 물품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운송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sup>406)</sup>
  - 원산지 결정기준은 국제협약 또는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됨<sup>407)</sup>
    - 인도네시아는 국제협약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재무부 장관 규정 229/PMK.04/2017에서 명시하고 있음
  
-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됨<sup>408)</sup>
  -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은 체약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됨
  
-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당사국의 원천에서 획득되거나 체약국의 원천에서 획득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말함<sup>409)</sup>
  - 완전생산물품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함
    - 당사국에서 채취한 광물 및 기타 자연물질
    - 당사국에서 수확 또는 채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 동물 및 해당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렵·어획·어업을 통해 획득한 물품
    -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역 밖 바다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해당 어획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직접 가공한 물품
    - 당사국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채취한 물품
    - 당사국에서의 제조·가공공정 또는 소비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처분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

406)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4조

407)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7조 1항

408)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6조

409)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8조

- 부가가치기준은 수입 원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당사국 영역 내에서 창출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sup>410)</sup>
  - 수출자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직접법 또는 간접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법 또는 간접법은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Regional Contents: RC)<sup>411)</sup>으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아세안-한국,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협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세안-일본, 인도네시아-일본 협정에서는 간접법을 사용함<sup>412)</sup>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Import Contents: MC)<sup>413)</sup>은 아세안-중국, 아세안-인도, 인도네시아-파키스탄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아세안-중국, 아세안-인도 협정에서는 직접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sup>414)</sup>
  
- 세번변경기준은 수입 원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재료의 세번과 일정 단위가 다른 세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로 인정함<sup>415)</sup>
  - 세번변경기준은 류가 변경되는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호가 변경되는 4단위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소호가 변경되는 6단위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으로 구분됨
    - 세번이 변경되는 수준은 국제협약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하여 물품별로 규정됨
  
-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수입 원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특정한 생산공정을 거친 물품을 말함<sup>416)</sup>

410)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9조

411)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원산지결정기준』, 2010, p. 410

41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부속서 1

413)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10

41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부속서 1

415)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0조

416)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1조

- 특정한 생산공정이란 국제협약에 따라 화학반응 또는 특정 가공 단계 등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은 국제협약에서 물품별로 개별적으로 규정한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어떤 기준이 어떤 수준으로 적용될지 결정됨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됨

〈표 2-VI-1〉 인도네시아 FTA별 불완전 생산물품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 구분                          | 일반기준 <sup>1)</sup>                 |
|-----------------------------|------------------------------------|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 RC(BD/BU) <sup>2)</sup> 40% or CTH |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역(ACFTA)        | RC(BU) 40% or MC <sup>3)</sup> 60% |
|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역(AKFTA)        | RC(BD/BU) 40% or CTH               |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IJ EPA)   | -                                  |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역(AIFTA)        | RC(BU) 35%+CTSH or MC 65%+CTSH     |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AANZFTA) | RC(BD/BU) 40% or CTH               |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 MC 60%                             |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   | RC(BD) 40% or CTH                  |

주: 1)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2) BD: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3) 기준가격은 FOB 가격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운송요건에 따라 특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

접 운송되어야 함<sup>417)</sup>

- 지리적인 이유 또는 운송상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를 경유한 경우 경유국에서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않은 물품만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결정기준과 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sup>418)</sup>

- 인도네시아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IPSKA: Issuing Agency Certificate of Origin)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표 2-VI-2〉 인도네시아 FTA별 원산지 증명서 양식

| 구분                          | 양식               |
|-----------------------------|------------------|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 Form D           |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역(ACFTA)        | Form E           |
|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역(AKFTA)        | Form AK          |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A)     | Form IJEPA/JIEPA |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역(AIFTA)        | Form AI          |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AANZFTA) | Form AANZ        |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 Form IP          |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   | Form AJ          |

자료: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29/PMK.04/2017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7)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2조

418)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3조

##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과 같은 특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수출자,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임<sup>419)</sup>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국제협약에 따라 규정되기도 하지만, 국제협약 없이 적용되기도 함<sup>420)</sup>
    - 비특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국제협약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물품의 도착국 내의 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sup>421)</sup>
    - 국제협약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는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sup>422)</sup>
  
-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의 해외무역총국(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규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물품 중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수입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부 양식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됨<sup>423)</sup>
    -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특혜 국가로 수출
    - 특혜 국가로 수출하지만 특혜가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가 한정되거나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인도네시아는 국제커피협회(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의 회원국으로

419)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3조 2항

420)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4조 2항

421)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7조 2항

422)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o. 77/M-DAG/PER/10/2014 제10조 3항

423)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7.B

모든 커피를 수출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sup>424)</sup>

- 원산지 증명서는 원두 및 그 가공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재배·수확·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됨

□ 인도네시아는 EU와의 협약을 통하여 농산물, 수제 섬유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농산물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sup>425)</sup>

- EU에 수출되는 수제 섬유제품으로서 지방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된 다음의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sup>426)</sup>

- 손이나 발로 움직이는 장치를 사용하여 직조한 것
- 기성복 또는 기타 완성된 섬유제품에 기계의 힘을 쓰지 않고 수를 놓은 것
- EU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한 손으로 만든 섬유제품
- 전통 바틱(batik)양식<sup>427)</sup>으로 기계의 힘을 쓰지 않고 손으로 완성한 섬유제품

- EU에 수출하는 섬유 및 섬유제품으로 할당을 적용받는 바틱제품 또는 EU의 일반특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sup>428)</sup>

□ 캐나다, 노르웨이, 멕시코로 수출하는 섬유 및 섬유제품 또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간 쌍무협정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되는 섬유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sup>429)</sup>

424)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1.B

425)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2.B

426)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3.B

427) 인도네시아 전통 기법으로 나염한 천

428)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6.B

429)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4.B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지방 산업에서 생산된 수제 섬유제품은 노르웨이와의 쌍무협정에 의하여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sup>430)</sup>
  - 지방 산업에서 생산된 수제 섬유제품이란 지방에서 바느질하거나 재봉틀을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손으로 그리거나 바틱양식으로 염색된 직물, 손으로 짠 직물, 손으로 수를 놓거나 장식한 직물 또는 FOB 가격의 25% 이상을 손으로 수를 놓거나 장식한 직물을 말함
  - 바틱은 직물에 수작업으로 색을 입히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천에 왁스칠을 하고, 염색 또는 인쇄한 후 천을 삶거나 끓여서 왁스를 제거하는 세 가지 공정을 거쳐서 생산됨
- 멕시코로 수출하는 섬유제품, 의류, 신발의 경우도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sup>431)</sup>

---

430)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5.B

431)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2/DAGLU/PER/6/2015 부속서 2 8.B

## VII. 보세제도

### 1. 보세구역

- 보세구역(TPB)은 필요 요건을 충족할 시 관세를 유예받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와 구역임<sup>432)</sup>
  
- 보세지역(KAWASAN BERIKAT, KB)이란 수출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공과 조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을 보관하는 곳임<sup>433)</sup>
  - 보세지역(KB)은 봉제·전자·완구·타이어 등 다양한 물품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조립은 국내 주요 물품을 수입한 물품이나 다른 보세지역의 완제품과 결합함
  - 보세지역(KB)은 세관 관할구역임
  
- 보세창고(GUDANG BERIKAT)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물품을 공급함<sup>434)</sup>

---

43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11 제1장 제1조

433)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11 제1장 제1조

43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11 제1장 제1조

□ 보세지역 반입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음

- 관세영역 외부
  - 관세영역 외부의 수입물품은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 관할하의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전산시스템의 허가 후 가능함
- 타 보세지역
- 보세창고
- 보세전시장
- 보세경매장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획득한 보세지역사업장이 시행하는 자유무역지역
- 국내영역

□ 보세지역 생산품의 관세영역 외부 반출은 다음과 같음

- 관세영역 외부
- 보세창고
- 타 보세지역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세지역 사업자
- 국내영역
- 정부가 지정한 타 경제구역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용 샘플을 수입하여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수입제세(PDRI)<sup>435)</sup>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생산물품 소개 또는 신상품 개발이 목적이어야 함
- 1개의 종류, 브랜드, 모델, 타입별 최대 세 가지 물품까지 가능함
- 추가가공 목적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단 연구개발용 물품은 제외)
- 국내영역의 타 장소로 이관, 판매 또는 소비는 금지됨

---

435) 부가가치세, 소비세, 수입소득세를 뜻함

- 견본품에는 증장비, 모든 종류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 보세지역에 반입 시 견본품은 최소 2년 동안 보관됨
  
- 보세지역 사업자(Pengusaha Kawasan Berikat, PKB)란 보세지역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임
  
- 보세지역 사업자와 보세지역 사업장은 다음 의무가 있음<sup>436)</sup>
  - 공개된 장소에 보세지역 사업자 및 보세지역 사업장 회사명, 허가번호가 포함된 명패를 게시해야 함
  - 정기적으로 물품, 자재 및 기계 반출입 관련 요약서를 작성하며 관련 요약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알림
  - 세관장의 관할하에 전자적 자료교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보세지역 내 보세 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을 위한 전자적 자료교환 장비 및 설비를 제공해야 함
  - 검사를 위해 관세청장의 접속이 가능한 물품반출입 관련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함
  - 보세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사업자 번호를 보유해야 함
  - 인수 또는 합병 이외의 회사명 변경, 생산물품 변경 및 보세지역 면적 변경 시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
  - 회사나 납세자와 관련한 변경이 생기면 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알려야 함
  - 관세 및 소비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1년 1회 관할 세관 감독하에 재고 실사를 실행해야 함
  - 사업 관련 장부 및 관련 문서는 사업장에 10년간 보관함
  - 보세지역 내 물품 이동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기입해야 함

---

43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7/PMK.04/2011, 제1장 제1조

-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세지역 사업과 관련한 활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세구역 운영자는 다음을 지켜야 함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에 존재하거나 보세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관세영역 외부로부터의 물품 관련 미납 수입관세 또는 소비세와 수입제세에 대해 책임이 있음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에 존재하거나 보세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국내영역으로부터의 반입물품 관련 미납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에 대해 책임을 짐
- 세금 미납물품이 아래와 같은 경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책임을 면제받음
- 고의가 아닌 경우의 분실 또는 소실
- 수출 또는 재수출
- 관세 및 소비세 의무를 이행한 사용 목적의 수입
-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보세지역사업장으로 반출 또는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파기

□ 관할 세관장이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보세지역 사업장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 허가가 취소됨

- 허가된 사업 활동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상이한 종류의 원자재 반입
  - 기 부여된 보세지역 허가과 관련없는 수입품을 반입함
  - 부여된 허가에 배치되는 물품의 생산
- 보세지역 운영 또는 사업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 6개월 동안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 동안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
  - 보세지역 생산품 국내영역 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보세구역 허가 취소 시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함
- 모든 수입관세 채무액 납부
  - 보세구역 내 물품 재수출
  - 보세구역 내 물품을 타 보세구역으로 이관
-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정지는 관련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관세청의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임
- 허가 정지 기간 동안 보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이 허가되지 않음
- 보세구역 업체의 위험도는 다음에 따라 결정됨<sup>437)</sup>
- 세관등록 내역
  - 규정위반 내역
  - 의무이행 내역
  -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의 활용
  - 장치 화물이나 생산물의 유형
  - 보세구역업체의 소재 위치 등에 따라 결정
- 보세구역 위험도는 총 3등급으로 분류되며, 3등급인 Red가 가장 높은 위험도를 가짐
- Green(1등급)
  - Yellow(2등급)
  - Red(3등급)

---

437) Regulation of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No. PER - 20/BC/2013 제2조

## 2.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 보세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을 시행하고 있음<sup>438)</sup>
  - 관세청은 업체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줄이고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을 활용하도록 권장함
  
- 보세지역 업체는 관세청에서 정한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sup>439)</sup>
  - 업체는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유무에 따라 최하 등급인 Red(3등급) 평가를 받게 되며, 최하 등급 평가를 연속해서 두 번 받으면 물품의 수출입을 할 수 없음
  - 세관은 6개월마다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운영에 따라 업체를 Green(1등급), Yellow(2등급), Red(3등급)로 평가하여 관리함
  
- 업체는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운영 시 다음을 기록해야 함
  - 물품반입
  - 물품반출
  - 재고기록
  
-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을 설치한 업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이 있음
  -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 물품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438)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3421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3421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검색일자: 2018. 8. 8)

439)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3421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3421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검색일자: 2018. 8. 8)

- 혜택(세금 등)받는 물품은 1년에 최소한 1회 재고조사를 해야 함
- 4개월마다 작성된 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세관에게 제출해야 함
- 물품반입 장소에 CCTV와 세관 전산시스템과 연결하여 세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CCTV를 언제라도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함

### 3.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er)

-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er, PLB)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440)</sup>
  -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는 물품을 수입자와 수출자가 인도네시아 관세구역으로 저장하는 곳임<sup>441)</sup>
  - 다양한 기능(재포장, 재분류, 판매, 수리, 단순가공, 경매, 통관, 전시 등)을 가진 물류창고임
  - 인도네시아 세관은 보세구역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다양한 작업을 허용하고 운영을 유연하게 하도록 독려하며 해외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보세물류센터(PLB)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법인(고정 사업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함
  - 보세물류센터(PLB)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
    - 소유권이 지도에 명확히 경계선을 가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사업 허가증
  - 최근에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였다는 증명

440)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2146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12146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검색일자: 2018. 8. 8)

441) CKB, <https://www.ckb.co.id/bonded-logistics-center>(검색일자: 2018. 8. 8)

- 보세물류센터(PLB) 물품의 저장기한이 3년이며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 연장가능함<sup>442)</sup>
  - 보세창고의 경우 저장기한은 1년임<sup>443)</sup>
  
- 보세물류센터(PLB)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444)</sup>
  - 보세물류센터(PLB)에서 반출될 때까지 수입세의 지불기한 연장
  - 고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판매세 면제
  - 소비세 면제
  - 인도네시아 항구에서의 하선, 핸들링 비용(Handling Cost)을 절감할 수 있음<sup>445)</sup>
  - 운반시간이 단축됨
  - 단순작업(유지를 위한 보수, 가공)을 보세물류센터(PLB)에서 허가함
  - 화물 재수출이 가능함
  - 재고 저장비용 감소
  - 현금흐름 증가
  - 증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절감
  - 서류확인 작업을 하는 동안 화물을 보세물류센터(PLB)에 장치할 수 있음
  - 물품의 스케줄에 따라 보세물류센터(PLB)에서 반출하여 부분 선적이 가능함
  
- 43개의 운영업체가 76개의 보세물류센터(PLB)를 운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내용을 추가한 규정을 발표함<sup>446)</sup>

---

442) Latifah Dwi Handayani<sup>1</sup>, Raden Didiet Rachmat Hidayat<sup>2</sup>, THE ROLE OF BONDED LOGISTICS CENTER TO ESTABLISH INDONESIA AS THE HUB OF COLD CHAIN AND HALAL LOGISTICS BUSINESS, Advances in Engineering Research, 2018. 1.

443) Deloitte, "Indonesian Tax Info," 2016. 3, p. 4

444) Deloitte(2016), p. 4

445) CKB, <https://www.ckb.co.id/bonded-logistics-center>(검색일자: 2018. 8. 8)

446)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5966&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7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

- 매번 소규모로 수출과 수입절차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우나 보세물류창고를 사용하게 되면 통과과정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세물류창고(PLB)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생산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PLB)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세관은 전자상거래용 제품에 대해 수량, 적절한 관세부과, 규정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 100달러 이하의 물품 또한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PLB)를 통해 들어오면 수입 관세를 면제받지 못함<sup>447)</sup>
- 중국의 대량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를 통해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No 182/2016의 미소금액(de minimis value) <sup>448)</sup>제도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면제 혜택이 가능함
  - 재고확보가 중요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여 창고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함

---

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검색일자: 2018. 8. 8)

447)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5966&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7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검색일자: 2018. 8. 8)

448) 통관 시 최소 허용되는 금액

## VIII. 수출입규제

### 1. 수입규제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년간 비관세장벽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함
  -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통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속에서 내수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수입규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음<sup>449)</sup>
  - 철강 분야같이 인도네시아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sup>450)</sup>
  - 세관통관 강화
  -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등록 강화

---

449) 산업통상자원부, 『2017 외국의 통상환경』, 2017, p. 398

450) 산업통상자원부(2017), p. 398

- 통관 시 SNI 인증 강제 강화
- 인도네시아 세관 통관심사관의 권한을 강화시킴
  - 민원인 대면을 못하게 함
  - 신고가격 심사 후에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음
- 2018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냉연코일, 석도강판, 질산암모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부과되고 있음

〈표 2-VIII-1〉 인도네시아 반덤핑 현황

| 품목명                     | 한국 HS CODE           | 조사개시일       | 규제내용         |
|-------------------------|----------------------|-------------|--------------|
|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 7209.16.<br>7209.17. | 2011.06.24. | 반덤핑<br>(규제중) |
| 석도강판(Tin plate)         | 7210.12.             | 2012.06.25. | 반덤핑<br>(규제중) |
|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3102.30.             | 2015.06.01. | 반덤핑<br>(규제중)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3907.60.             | 2016.08.22. | 반덤핑<br>(규제중) |

자료: 수입규제통합센터,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D&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D&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검색일자: 2018. 8. 23)

- 2018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비합금 평판 강판, I-H형 합금강, 광택지 및 판지에 부과되고 있음

〈표 2-VIII-2〉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현황

| 품목명   | 한국 HS CODE           | 조사개시일       | 규제내용        |
|---|----------------------|-------------|-------------|
| 비합금 평판 강판(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 7210.61.             | 2012.12.19. | 세이프가드 (규제중) |
| I-H형 합금강(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 7228.70.             | 2014.02.12. | 세이프가드 (규제중) |
| 광택지 및 판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                     | 4810.13.<br>4810.14. | 2014.06.20. | 세이프가드 (규제중) |

자료: 수입규제통합센터,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D&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D&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검색일자: 2018. 8. 23)

## 2. 수입허가 및 인증

### 가. 수입허가

- 인도네시아 내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면허(SIUP)가 필요함
  - 무역면허(SIUP)에는 회사의 활동 및 대표자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
  -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간편업체서비스(One Stop Shop Service)에서 신청 가능함
- 산업무역부는 무역면허(SIUP)를 신청한 업체의 대표자에게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적정시민인증서(letter of good conduct)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수입업체들은 기본 서류로 제조업 수입 허가서(API-P) 또는 무역업 수입 허가서(API-U)를 구비해야 함
- 수입 허가 API의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sup>451)</sup>

451)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

- 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 Kepala Dinas Provinsi
- 그 밖에 수입업자는 납세자번호(NPWP), 관세청 등록증(NIK)이 필요함
-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는 일반적으로 NPWP로 통칭됨
    - 발급기관은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임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등록증(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을 부여받아야 함<sup>452)</sup>
  - 수입업자는 신청서에 임원, 담당자의 신원,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대략 14일의 처리기간이 필요함
  -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진행 중으로 세관의 승인을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해 수입통관이 가능함
- 특정 물품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은 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만 이용가능함
- 수입규제품목은 핸드폰, 테이블 PC 같은 전자제품
  -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도 있음
  - 인가받은 검사기관의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함
  -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품목군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 Belawan 항구(메단)
    -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

nationIdx=49(검색일자: 2018. 8. 23)

452)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59/PMK.04/2014

-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 지정된 공항
  - Polonia(Medan)
  - Soekarno-Hatta(Tangerang)
  - Ahmad Yani(Semarang)
  - Juanda(Surabaya)
  - Hasanuddin(Makassar)

#### 나. 국가표준인증(Standard National Indonesia)

-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은 국가품질표준제도이며 인증제도 관리기관은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sup>453)</sup>임
  - SNI 인증은 품질 적합성 평가기관(Lembaga Penilaian Kesesuaian, LPK)의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과하여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인증임
    -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기준평가를 받음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국제 품질보증 ISO 9000을 기본으로 규격화한 것임
  
- 2007년 7월 1일부터 SNI를 강화하면서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인증획득이 중요함
  - SNI 인증이 필수가 아니더라도 SNI 인증을 받아놓으면 비즈니스 거래 시 유리함

---

453)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전화: 62-21-574-7043, 팩스: 62-21-574-7045, e-mail: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www.bsn.or.id

- SNI 인증을 받을 때 국제적인 인증인 ISO나 CE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적용됨
  - 일부 품목 인증은 SNI 인증이 의무이지만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SNI 인증은 인증의무가 있는 강제인증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인인증품목으로 구분됨
- 국가표준 규격취득이 의무화된 SNI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 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함
-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함
  - 해당 기관으로부터 표준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함
- 통관 시 SNI 인증 강제적용품목 385개가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해마다 가공 품목 위주로 SNI 강제적용품목을 새롭게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공 품목 수입이 매년 줄고 있음
  - 2016년 강제적용품목으로 음식, 음료류인 비스킷, 크래커, 웨이퍼, 파이가 신규로 적용됨
  - 산업부가 율활유에 SNI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SNI 강제인증에 영향받는 10대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석유화학, 기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비금속 제품, 식음료, 섬유봉제, 전기 장비, 수송기계, 비기계금속, 고무, 플라스틱이 있음
- SNI 인증의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제출, 서류심사, 기술심사, 패널최종검사로 구성

됨<sup>454)</sup>

- SNI 인증 신청서를 제출함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 품질매뉴얼
    - 품질절차서
    - 인도네시아 수입자서류
    - 인도네시아 지재권 부처에 등록된 상표
  - LSPRO에 규격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가능함
    - 인허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번역본을 요구함
    - 신규 신청하거나 또는 연장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음
    - SNI 인증신청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소유한 기업만 가능함
  
- LSPRO에서 서류심사 과정을 거침
  - LSPRO에서 잘못되었거나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함
  - SNI 등록에 맞는 비용을 청구함
  
- 서류심사가 끝난 후 기술심사를 받게 됨
  - 서류심사 후에 신청업체에 샘플 테스트 검사관과 공장실사 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며 규모에 따라 공장실사는 약 3일이 소요됨
    - 2명의 공장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생산국 공장에 파견되며 파견비용을 신청자에게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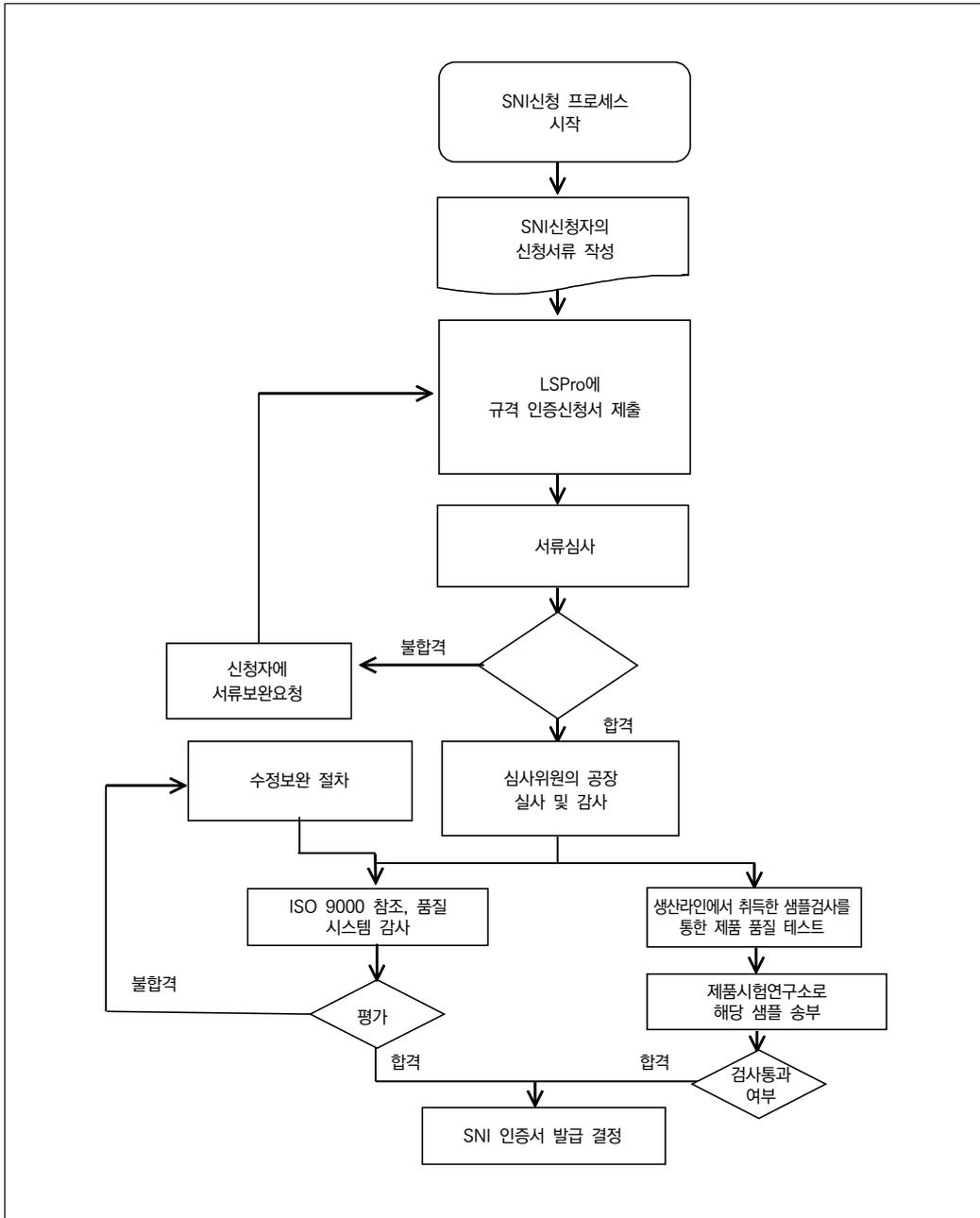
---

454)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2350&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7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검색일자: 2018. 8. 23)

- LSPro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집한 샘플을 시험하며 SNI 인증요건에 맞춰 검사함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므로 ISO 9000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 인증심사에 유리함
  
- 마지막으로 패널이 심사함
  - 의장 1인과 7명 전문가 패널이 심사함
  - 신청자는 패널들의 수정요청을 반영해야 함
  
- 마지막으로 SNI 인증서가 발급됨
  - LSPro는 모든 테스트 후에 SNI 인증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SNI 사용 승인서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Tanda SNI, SPPT SNI)를 발급함
    - 제품, 제품포장지, 라벨에 SNI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서비스, 시스템, 인력에 같은 곳도 사용이 가능함
  - 일정 기준에 맞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음
    - 등록번호
    - 추가마크
    - 안정성
    - 제품기능 평가완료를 입증하는 마크
    - 기능 설명
  
- SNI 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정을 맺은 국가의 품질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음
  -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에서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서류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일부는 IEC 또는 ISO와 호환이 가능하나 CB 성적서와 인증서는 SNI 인증과 호환이 불가능함

-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인증서를 발급한 후에도 자격요건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함
  
- SNI 인증서 발급비용은 2000만루피아에서 1억루피아까지 품목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나는 편임
  - 공장 실사 위치의 국내외 여부, 인증기관,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SNI 인증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비용
  - 심사 감사원 서비스 비용
  - 품질·기술 심사 수수료
  - 인증허가 발급 프로세스 비용
  - 신규 신청에 대한 수수료
  - 인증서 유지 비용
  - 행정 비용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밀수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밀수입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시장에 위협을 가하지 않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SNI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음
  - 물품의 수출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그림 2-VIII-1] SNI 인증절차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2016 할랄 식품시장동향 인도네시아』, 2016, p. 117

### 다. 할랄인증

- 할랄제품이란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에는 2억명이 넘는 사람이 이슬람교도로 할랄인증이 필수임<sup>455)</sup>
  - 할랄은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이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할랄인증기관 MUI(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Majelis Ulama Indonesia)는 민간 주도의 이슬람 총연합단체로 LPPOM MUI(Li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할랄을 발행함
  - LPPOM MUI는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할랄인증기관임<sup>456)</sup>
  -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에 의해 형성된 기관임
  
- 할랄인증의 과정과 이행에 있어 LPPOM-MUI는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종교부, 농업부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무역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광부와 협력함

〈표 2-Ⅷ-3〉 식품통제 책임 정부기관 외 협력 정부기관 및 주요 임무

| 기관                                     | 임무                              |
|--|---------------------------------|
| 종교부<br>(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 인도네시아의 종교적인 업무 관리<br>산업자원부      |
| 산업자원부<br>(Ministry of Industry)        | 정부의 산업분야 업무 수행<br>무역면허(SIUP) 발급 |

455)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5

456)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5

| 기관   | 임무  |
|--|---|
| 관광부<br>(Ministry of Tourism)   | 문화, 관광정책의 구현 및 공식화                                  |
| 무역부<br>(Ministry of Trade)   | 무역업무 관할<br>각종 수입인증, 라벨링 등 담당<br>원산지 규정 관련 규정발표 관할   |
| 국제무역협력국<br>(Directorate General of International<br>Trade Cooperation) | 소규모 산업 및 무역관리                                       |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br>(Ministry of Cooperative and SEMs)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및<br>공식화                          |
| 관세소비세총국<br>(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br>and Excise)              | 통관업무 및 관련법규의 시행<br>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br>업무 책임 |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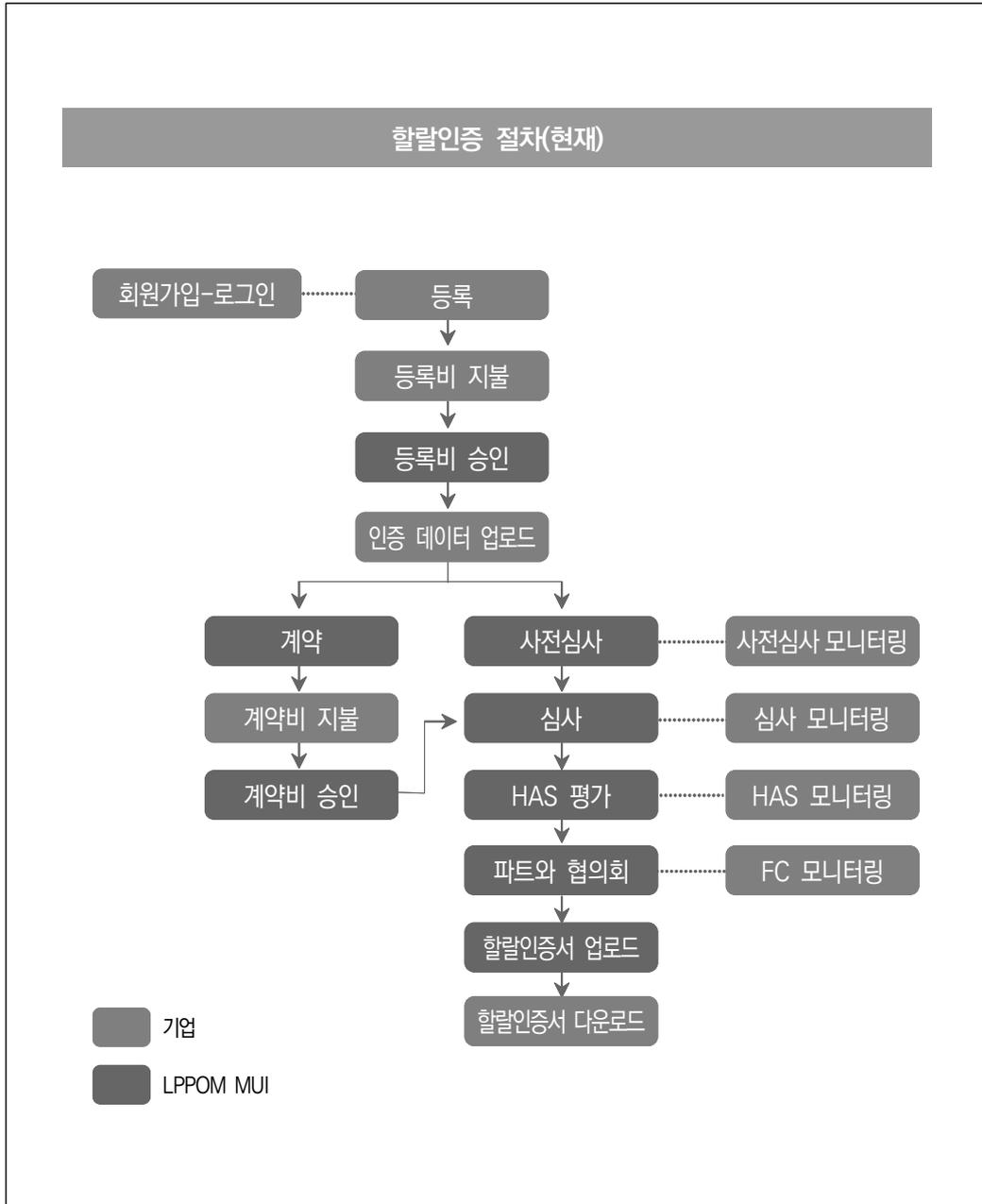
- MUI 파트와(Fatwa) 위원회에서 할랄로 결정되면 할랄인증서가 발행됨
  - 인증서의 서명은 MUI 회장, MUI의 파트와 위원회 대표 및 LPPOM MUI 디렉터가 함
  - 기업은 Cerol에서 할랄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 LPPOM MUI에서 할랄인증서 원본을 받을 수 있음
  
- 할랄인증 시 서류 준비는 다음과 같음
  - 제품에 대한 목록
  - 재료 리스트와 재료에 관한 문서
  - 정육점 목록
  - HAS 매뉴얼 과정
  - 생산설비가 위치한 주소 목록
  - 할랄정책 보급에 대한 증거
  - 내부교육을 실시한 내용 및 내부 심사

- 할랄인증 서류의 설명은 e-LPPOM MUI 홈페이지에서 'Cerol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할랄인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sup>457)</sup>
  - 온라인 등록은 LPPOM MUI의 사이트(www.e-lppommui.org) 시스템에서 가능함
  - 각 등록서류는 심사 담당 부서 및 HAS 부서에서 처리하며, 등록서류가 처리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심사가 진행됨
  
- 기업심사는 사전심사 통과 후 인증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심사함
  - 현장심사 실시 중점사항은 등록된 정보를 기본으로 LPPOM MUI가 정한 인증 규정준수를 하는지 심사함
    - HAS 관리
    - 원료에 관련된 문서들
    - 생산 전체 과정
  - 심사는 최소 두 명이 함
    - 제품, 생산공정, 공장 등을 심사하며, 공식적인 양도증명서와 함께 제공됨
  
- 한국에서 할랄인증 신청을 원하면 우선 LPPOM MUI 온라인에서 신청함
  - LPPOM MUI은 한국의 대행기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인니할랄코리아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침
  - LPPOM MUI에서 할랄인증 신청업체 방문
    -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결과보고 작성
  - 파트와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할랄인증 발급 승인
  - LPPOM MUI에서 할랄인증서 발행과정을 거침

---

457)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6

[그림 2-VIII-2] 온라인 할랄 인증절차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7

-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임<sup>458)</sup>
  - 할랄인증서 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함
  - 1년에 한 번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됨
  - 갱신 요청은 HAS 상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
    - HAS 상태는 가장 좋은 평가 순으로 A, B, C로 구성됨
    - HAS 인증은 HAS A 우수 상태를 3회 연속으로 받아야 함
  -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 두 곳 다 갱신이 가능함
  - MUI는 할랄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체를 공개할 수 있음
  
- 할랄인증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는 LPPOM MUI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재료, 제품, 시설 등 할랄인증 데이터에 입력된 정보 변경 시
  - 업체는 LPPOM MUI에 수정처리가 되도록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업체가 할랄인증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인증과정 진행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 종료될 수 있음
  - 할랄인증 심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이 없는 경우, 기업은 할랄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과정은 신규 등록 제출로 진행됨

### 3. 수출규제

- 인도네시아는 국내의 자원을 보호하고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하고 있음
  - 수출세는 0~40%까지 부과함

---

458) 한국식품연구원(2016), p. 116

- 수출규제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광석 또는 원료 등임
- 인도네시아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최소한 1차적으로 가공한 목재제품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음
  - 목재산업의 부흥과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재무부 장관령 No. 223/PMK.011/2008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는 모든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도 목재인증제(SVLK)를 받아야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함
  - 목재 관련한 인증을 받기가 쉽지는 않음

#### 4. 라벨링

- 규정 No.69/1999-식품 라벨 및 광고에 특정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이 규정 됨<sup>459)</sup>
  - 생산 혹은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경우 포장할 때 의무적으로 라벨이 있어야 함
- 라벨링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라틴어만 가능함<sup>460)</sup>
  - 인쇄는 명확하게 쉽게 보일 수 있어야 함
  - 라벨링의 중요한 정보는 라벨링의 다른 이미지의 색깔, 형태,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가려져서는 안 됨

459) 한국식품연구원(2016)

460) Regulation of The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 12 of 2016

- 폰트사이즈는 정확하게 GR 69로 지켜야 함
  - 최소 크기는 1mm(Arial 6 point)로 Arial 폰트의 소문자 'o'와 같거나 커야 함
- 라벨은 소비자의 눈에 쉽게 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sup>461)</sup>
- 제품명칭
  - 재료목록(구성성분)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 제품의 유통기한
  - 생산일 또는 생산코드
- 돼지고기 재료가 들어간 식품은 빨간네모 안에 돼지그림을 넣고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그림 2-Ⅷ-3] 돼지고기 함유 라벨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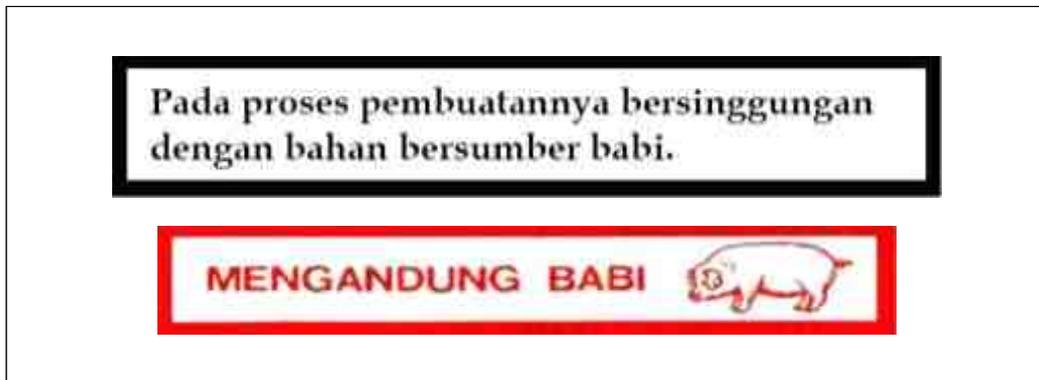


자료: 수입제도모니터링

461) 한국식품연구원(2016)

- 돼지 파생 원재료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의약,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흰색 배경에 검정색 라인 및 글자
  - 식품의 경우: 흰색 바탕에 붉은색 라인, 글자 및 돼지그림

[그림 2-VIII-4] 돼지 원재료 접촉 시 라벨링



자료: 수입제도모니터링

- 알코올 음료는 라벨링에 “MINUMAM BERALKOHOL, DI BAWAH UMUR 21 TAHUN ATUA WANITA HAMIL DILARANG MINUM”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A 그룹은 5% 미만, B 그룹은 5~20% 미만, C 그룹은 20~50%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음
  - 모든 제품에는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21세 미만 또는 임산부 음용 금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알코올의 함량 표기: “Mengandung Alkohol ± … % v/v”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출에 주의해야 함
  - 가당연유는 빨간색 사각박스 안에 빨간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Sampai Usia 12 bulan”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뜻의 문구를 넣어야 함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ARA : PANGAN IRADIASI(방사선 조사식품)”의 문구가 있어야 함
- 유전자 조작식품은 “PANGAN REKAYASAGENETIKA(유전자 조작식품)”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포장식품 업체가 식품에 ‘할랄(Halal)’을 넣기를 원하면 별도의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함
  - 제품 라벨링 의무에 대한 무역부 No.62/M-Dag/Per/12/2009에 따라 규정을 지켜야 함
  - 제품의 할랄 라벨링의 경우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서를 받은 제품에만 허용되고 있음
  - 할랄 라벨 신청은 식품의 등록심사 시 할랄인증서와 제품디자인 라벨링을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할랄 라벨은 포장재에 ‘Halal’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서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로고나 할랄 표기를 할 경우 통관에 있어 불허를 받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 재료 라벨링을 할 때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재료 순으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함
  -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보충제는 제외함
  
-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라벨에 정보를 명시하도록 해야 함<sup>462)</sup>
  - 식품에 비타민, 미네랄, 다른 종류의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함
  - 영양성분은 다음순으로 정보를 넣어야 함

---

462) 한국식품연구원(2016)

-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부터 파생된 에너지양에 기초한 총에너지 양
-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소, 설탕,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의 총양

- 일일 권장 섭취량은 각주로 라벨 하단의 영양정보박스 가장 마지막에 위치함
  - 일일 권장 섭취량은 2,000kcal의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계산됨
  - 기울임체(Italic)로 작성

## IX.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는 「인도네시아 관세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7/2006 AMENDMENT OF CUSTOMS LAWS No. 10/1995에 규정되어 있음
  - CHAPTER XIII(OBJECTION, APPEAL, AND APPEAL INSTITUTION)에는 이의제기, 불복, 이의제기 기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FINANCE No. 217/PMK.04/2010 이의제기 판정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세관의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는 주로 2심으로 종결됨
  - 1심의 경우 세금을 부과한 세관당국에서 진행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소속 조세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됨
  
- 세관판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세납부 후 조세법원(PENGADILANPAJAK)으로 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sup>463)</sup>
  - 소송은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 소송을 제기해도 세금징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

463)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시 부과되는 제반 세금의 종류와 추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2014. 3, p. 23

- 조세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1년 이내에 종료됨
  
- 이의신청 기한은 관세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함
  - 부과한 수입관세액의 100% 담보금을 제공해야 함
  
- 세관이 정한 세율 또는 세금에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SURAT KEBERATAN)를 제출할 수 있음
  - 납세고지
  - 과세처분
  - 추가고지
  
- 이의신청 시 다음과 함께 제출함<sup>464)</sup>
  - 세액에 대한 계산
  - 세관의 결정서류
  - 부족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 세관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판결해야 함<sup>465)</sup>
  - 세관이 이의신청을 거절하면 담보금은 현금화됨
    - 수입관세 납부 또는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담보금은 반환됨
    - 30일 후 담보금 반환 발생 시, 담보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정부는 매월 2%의 이자를 최대 24개월 간 지급하도록 해야 함
  - 세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추가적 설명, 자료,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한 자는 추가로 요청된 자료, 증거, 설명을 요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464)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17/PMK.04/2010

465)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17/PMK.04/2010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관의 결정이 없다면 이의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함<sup>466)</sup>
- 이의신청 후 70일 이후에 결정받지 못한 자는 진행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음<sup>467)</sup>
- 조세불복과 관련된 당사자는 판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에 불복신청(Peninjauan Kembali, PK)이 가능함
  - 불복신청은 다음 조건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해야 가능함
    - 소송 상대방의 위증·거짓 증거에 의해 잘못된 판결이 나온 경우
    - 조세법원에서 중요한 문서 증거가 있었으나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
  - 판결이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상고해야 함
    - 이유없이 일부 증거가 무시되었을 경우
    -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 판결이 현재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 때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에 의한 자발적인 세액보정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확하고 성실한 가격신고 및 수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 및 제출해야 함

---

466)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17/PMK.04/2010

46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17/PMK.04/2010

[그림 2-IX-1] 이의신청서(contoh surat pengajuan keberatan)



LAMPIR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 146/PMK.04./2007  
TENTANG TATA CARA PENGAJUAN  
KEBERATAN KEPABEANAN

**CONTOH**

**SURAT PENGAJUAN KEBERATAN**

Nomor : ..... (1) ..... (2) ..., tgl. ... (3)

Lampiran : ..... (4) .....  
Hal : Keberatan atas .....(5) .....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lalui  
..... (6) .....

Kami yang bertanda tangan di bawah ini:

Nama : ..... (7) .....  
Jabatan : ..... (8) .....  
Nama Perusahaan: ..... (9) .....  
Alamat : ..... (10) .....  
NPWP : ..... (11) .....

dengan ini mengajukan keberatan atas penetapan ..... (12) ..... seperti  
dimaksud pada:

- Surat penetapan nomor ..... (13) ..... tanggal ..... (14).....
- tentang .....(15).....

yang mengakibatkan:

- a. kami diwajibkan untuk membayar bea masuk/bea keluar/cukai/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bunga/pajak dalam rangka impor sejumlah Rp. ... (16) ... (.....)\*).
- b. ....(17).....

Permohonan keberatan ini kami ajukan dengan alasan sebagai berikut

.....  
.....(18).....  
.....  
..... \*\*)

## X. 벌칙

- 관세 관련 처벌은 「인도네시아 관세법」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7/2006 AMENDMENT OF CUSTOMS LAWS No. 10/1995에서 다루고 있음<sup>468)</sup>
  - 제102조~제111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벌금, 몰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제112조에는 조사에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음
  
- 관련업자가 벌을 어겨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 또는 소득으로 대체하여 벌금을 징수함<sup>469)</sup>
  -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벌금은 최장 6개월 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세관 관련 형사범죄는 세관신고서 제출일 또는 범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소될 수 없음<sup>470)</sup>
  
- 다음의 행위로 국가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됨

---

468) 「인도네시아 관세법」

46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0조

470)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1조

- 적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 운송
- 세관신고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역
- 지정된 또는 허가된 목적지 외 장소에 세관 감독하의 수입물품을 하역하거나 또는 장치하는 경우
- 불법으로 수입물품을 은닉
- 세관지역 또는 보세지역 또는 세관 감독하의 기타 장소로부터 세관공무원의 허가 없이 관세의무가 완납되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여 본 법령에서 정한 국가 추징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 하선장소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운송이 목표지 세관까지 도착하지 못했으며 상기사항이 본인 능력 밖의 사항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의로 세관신고서상 수입물품 종류 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 세관신고서 제출없이 물품 수출
- 고의로 세관신고서상 수입물품 종류 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하여 수출 분야의 국가 징수금 미추징이 초래된 경우
- 세관장의 허가 없이 세관지역 외부에서 수출물품을 선적함
- 세관장의 허가 없이 관세영역 내부에서 수출물품을 하역함
- 합법적 세관신고 서류 없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수출 분야 관련 밀수를 범한 혐의로 최소 1년 최장 10년간 징역형 및 최소 5천만루피아, 최고 50억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 범법행위에 사용된 수입물품, 운송수단은 국가가 몰수함
  - 형사법 위반행위에 이용된 운송수단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음
  
- 수입 분야 관련 밀수를 범한 혐의는 최소 1년 최장 10년간 징역형 및 최소 5천만 루피아, 최고 50억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 위반행위를 정부 관련자 및 법집행자가 범한 경우 법령에 규정하는 형사처벌 외 추가로 1/3이 추가됨
  
- 고의로 허가 없이 세관공무원이 설치한 자물쇠, 봉인 또는 안전표식을 개봉, 누락 또는 훼손한 자는 최소 1년, 최고 3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5억루피아, 최고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sup>471)</sup>
  
-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이 규정에 정한 형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됨
  - 기본 형사처벌은 행정벌금 최고 15억루피아이며 해당 범법행위가 징역형 대상의 범죄인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이 함께 구형됨
  
- 범법행위를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 명의로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아래의 자에게 부과됨<sup>472)</sup>
  - 상기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또는 협동조합
  - 범죄를 지시한 자 또는 지도자 또는 예방하지 못한 자
  -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 대상으로 형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소는 해당 법인의 법적 책임자인 경영진에 의해 진행됨
  
- 관세 부족을 추징할 때,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족한 세액에 따라 징수할 금액의

---

47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5조

47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8조

100~1,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됨

- 벌금부과대상의 적용 관세율이 0%일 경우에는 신고건당 5백만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됨<sup>473)</sup>

〈표 2-X-1〉 인도네시아의 추정액에 따른 벌금액

| 벌금대상 기준금액                  | 벌금액          |
|----------------------------|--------------|
| 부족액이 기 납부액의 25%보다 적을 경우    | 추징세액 × 100   |
| 부족액이 기 납부액의 25 ~ 50% 해당 시  | 추징세액 × 200   |
| 부족액이 기 납부액의 50 ~ 75% 해당 시  | 추징세액 × 400   |
| 부족액이 기 납부액의 75 ~ 100% 해당 시 | 추징세액 × 700   |
| 부족액이 기 납부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 추징세액 × 1,000 |

자료: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시 부과되는 제반 세금의 종류와 추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2014. 3, p. 19

- 관세청 내 특정 직책 공무원에게는 「형사소송법」 관련 1981년 법령 제8호에 규정된 세관 관련 형사 위반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사권자로서의 특별권한이 부여됨<sup>474)</sup>
  - 세관 관련 형사 위반행위 발생에 대한 신고자의 보고 접수 또는 설명 청취
  - 피의자 또는 증인 소환 및 조사
  - 세관 분야 형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장소 또는 시설 수색 및 해당 장소 내 물품 검사
  - 세관의 형사법 위반 행위 조사, 수색 및 탐문
  - 세관 관련 형사법 위반 피의자 체포 및 구금
  - 세관 관련 형사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심문 및 증거 요청
  - 세관 분야 형사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는 증거물품 압수

473) Presidential Regulation No. 28 of 2008

47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2조

- 세관 분야 형사법 위반 증거물품에 대한 안전표식 및 보호 조치
  - 세관 분야 형사법 위반 사건조사를 위한 전문가 호출
  - 세관 분야 형사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지 명령
  - 조사중지
- 국가 재정수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은 세관 분야 형사법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sup>475)</sup>
- 조사중지는 관련자가 수입관세 미납분 또는 부족분 납부 및 수입관세 부족분의 4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을 완납한 이후에 시행됨

---

47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3조

## XI. AEO제도

-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관세청의 일정한 기준을 기업이 충족할 때 통관절차 간소화 및 혜택을 주는 제도임
  - AEO 인증을 받게 되면 위험도가 낮은 기업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과정에서 신속한 통관절차를 받게 됨
  
- 인도네시아 세관은 2010년 AEO와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령(Ministry Decree No 219 of 2010, Customs Treatment towards AEO)을 제정함
  - 인도네시아의 AEO제도의 시작은 세관명령준수프로그램(Customs Compliance Program: Main Partner Priority Lane)<sup>476)</sup> 이었음
  
-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44개의 업체가 AEO에 등록되어 있음<sup>477)</sup>
  - 50개의 업체가 AEO 신청 중에 있음
  
- AEO 관련 내용은 229/PMK. 04/2015, PER-04/BC/2015에 규정되어 있음

---

476) Main Partner Priority Lane의 통관상 혜택: 세관검사 면제, 부두직통관, 사전신고, 관세납부 유예 등이 있음

477)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SOSIALISASI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17. 3.

- 2014년 11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성실무역업체(AEO) 및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가 열림<sup>478)</sup>
  -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통관혜택을 주는 상호인정약정(MRA)에 대해 논의하며 각 국가 간 연락관을 지정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함

## 1. AEO 신청 조건 및 절차

- AEO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음<sup>479)</sup>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관세사
  - 선박회사(Shipper)
  - 임시 보세업자
  - 보세업자
  - 국제물류 관련업자

---

478) 인도네시아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7890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7890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검색일자: 2018. 8. 1)

479)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www.beacukai.go.id/arsip/pab/aeo.html>(검색일자: 2018. 8. 1)

[그림 2-XI -1] 인도네시아 A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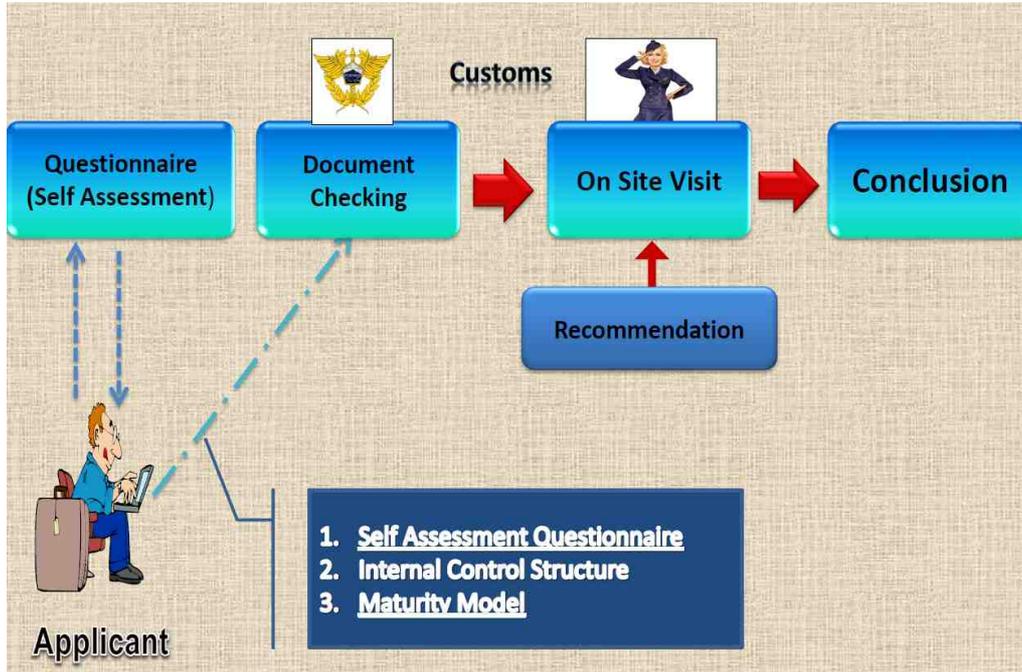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SOSIALISASI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17. 3.

□ AEO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청기업은 Self assessment를 작성하고 AEO 필요서류를 확인제출함
  - 기업의 구조
  - 표준운영과정에 대한 기술
  - 사무실, 공장, 창고정보
  - 작년 기준의 감사보고서 복사본 2부
  - 물류체인에 대한 목록, 연락처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 AEO 기업 선정

[그림 2-XI -2] 인도네시아 AEO 절차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2017)

- AEO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위법행위 여부
  - 최근 2년 동안 세금, 벌금을 미납금 없이 성실히 납부했는지 여부
  - 회계감사이행 성실도
  - 적절한 시스템 보유
    - 내부통제시스템
    - 물품이동에 대한 안전시스템
    - 직원교육을 위한 시스템 보유
    - 무역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유무
  - AEO 전담직원

-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보유
- 화물안전 감시
- 직원들의 안전 보장

## 2. AEO 혜택

- AEO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480)</sup>
  - 최소한의 서류제출과 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 통관심사 우선권을 가짐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최우선 서비스를 받음
  - 새로운 세관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함
  - 기업 보증
  - 세금기한 연장
  - AEO 전담 매니저 배치
  - 근무 외 시간에도 혜택 가능
  -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음
  - 보안사고가 줄어들음
  - 보안, 물류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함

---

480)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PMK 227/PMK.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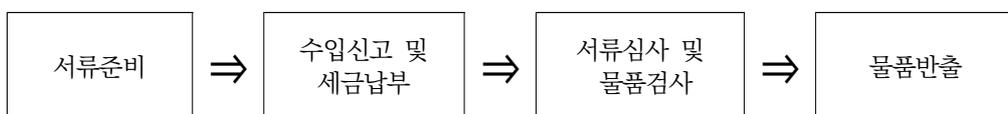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수입 통관절차

#### 1. 수입 통관절차

-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은 ① 서류준비 ②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③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④ 물품반출의 절차를 거칩

[그림 3-1-1] 수입 통관절차



#### 가. 서류준비

- 수입허가 API(Angka Pengenal Impor)는 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함<sup>481)</sup>

- API-U(Angka Pengenal Impor Umum)는 일반적인 수입허가로 무역업체를 위한 것임
  - API-P(Angka Pengenal Impor Produsen)는 원자재나 다른 재료를 수입하여 회사의 제조를 위한 허가임
  - 회사가 API-U, API-P를 동시에 허가받을 수 없음
  - API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함
  - API-U, API-P 허가회사는 수입할 때마다 실적신고를 해야 함
  - 서류상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수입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API, 관세청등록번호(NIK)를 통합하여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설함<sup>482)</sup>
- 2018년 7월 이후 신규 등록을 하려는 기업은 API, NIK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NIB를 신청해야 함
  - NIB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에서 신청가능함<sup>483)</sup>
- 일부 물품은 의무적으로 선적 전 검사(SGS 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유의해야 함
- 중고기계 수입 시는 제조업 허가를 가진 실수요자 업체에 한하며 선적 전 검사(SGS 검사)를 실시하며 무역부 발행한 중고기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직물을 재료로 한 일반소재 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SGS 검사)가 의무적임
    -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
  - 도자기 제품을 수입할 때도 선적 전 검사(SGS)를 받아야 함

481) Embassy of Pakistan, "Import Procedures of Republic of Indonesia," *A Guide Line for Pakistani Companies*, 2016. 4, p. 7

482) OSS Republik Indonesia, <https://oss.go.id/oss>(검색일자: 2018. 11. 15)

483) OSS Republik Indonesia, <https://oss.go.id/oss>(검색일자: 2018. 11. 15)

- 운송사는 수입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

## 나.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시스템(EDI)을 이용해서 세관에 제출함
  
- 수입신고서(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에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함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선박명칭
  - 물품가격
  
- 수입통관 시 다음의 서류준비를 해야 함<sup>484)</sup>
  - 상업송장
  - 보험증서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허가
  -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FORM AK(한-아세안 FTA혜택을 받는 경우)

---

484) ASEAN Briefing, <https://www.aseanbriefing.com/news/2018/03/29/import-export-procedures-indonesia-best-practices.html>(검색일자: 2018. 11. 16)

- 세관에 제출된 서류와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수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의 통관절차를 시작함
- 수입신고를 마친 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반출될 것인지와 물품의 통관거부 여부를 알 수 있음
- 수입 시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10%, 소득세(Corporate Tax) 2.5%,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등을 납부해야 함
-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이 걸리면 차액에 대해 최대 1000% 벌금이 부과됨
  - 수입신고 가격과 세관 데이터와 불일치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하며 물품검사 여부를 결정함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자의 법규준수도와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통관행정 서비스 등급은 고위험(Red), 위험(Yellow), 우수(Green) 그리고 최우수(MITA) 등급으로 나뉨<sup>485)</sup>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며 통관소요시간이 등급별로 달라짐
    - 고위험(Red)은 신고 후 약 7일
    - 위험(Yellow)은 약 4일
    - 우수(Green)는 약 1일

---

485) 산업통상자원부(2017), p. 401

- 수입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규정에 맞추어 서류 제출 여부와 화물검사를 심사함
- 약 2년 동안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고위험(Red)에서 위험 등급(Yellow)으로 상향됨
  
- 위험(Yellow) 등급 상태에서 선적 서류심사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수입물품은 다시 고위험(Red) 등급으로 되고 통관을 재심사받아야 하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sup>486)</sup>
  
- 현실적으로 최우수(MITA) 등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더 많은 수입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ITA Non-Priority'를 만들
  - MITA Priority와 Non-Priority의 관세유예 여부가 차이임
    - MITA Priority 업체는 105개임
    - Non-Priority 업체는 200개임
  - 업체가 MITA Priority로 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시스템과 신뢰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어야 함
    -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라. 물품반출

- 통관 행정서비스 등급에 의해 고위험(Red)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세관의 검사관이 실제 화물을 검사하게 됨
  - 대부분 기업들이 고위험(Red)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관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와 물품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486) 산업통상자원부(2017), p.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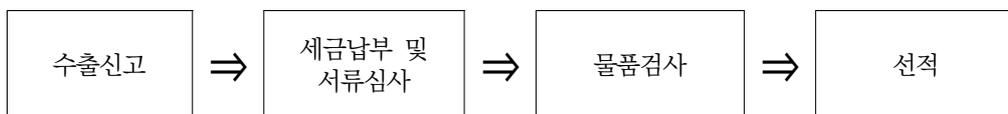
-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며, 화물출고 동의서를 발급함
  - 관세납부 후 일반적으로 3~4일 내 통관가능함
  
- 화물출고 동의서 받은 후 물품창고에 제출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음
  
- 수입된 물품은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최대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에 보관이 가능하나 기간 내에 통관을 하지 못한 물품은 세관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 Tanjung Priok 항구는 최대 1개월 보관이 가능함
  - 규정된 기간 동안 통관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세관에서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됨

## II. 수출 통관절차

### 1. 수출 통관절차

- 인도네시아 수출 통관에 관해서는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FINANCE No. 148/PMK.04/2011에 규정되어 있음
- 수출 통관절차는 ① 수출신고 ② 세금납부 및 서류심사 ③ 물품검사 ④ 선적 절차로 이루어짐<sup>487)</sup>

[그림 3-11-1] 수출 통관절차



-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납세자식별번호 NPWP(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하며 다음 중 하나의 사업 허가증이 필요함<sup>488)</sup>

487) DGNEP, [http://djpen.kemendag.go.id/app\\_frontend/contents/49-flowchart-of-customs-clearance](http://djpen.kemendag.go.id/app_frontend/contents/49-flowchart-of-customs-clearance)(검색일자: 2018. 11. 15)

- 수출식별번호 APE(Export Identity Number)
  - 무역 라이선스 SIUP(Trading Business License)
  - 제조허가증
  - 국내사업 투자허가증(PMDN) 또는 외국 투자허가증(PMA)
-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서 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 또는 BC 3.0)에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해야 함<sup>489)</sup>
- 수출자, 수입자, 대리인(관세사) 정보
  - 운송수단
  - 물품설명(타입, 수량, 컨테이너 번호, HS 코드 등)
  - 수출목적
  - 물품가격(CIF 가격 기준 신고)
- PEB의 제출방식은 신고서류에 직접 작성(PEB Manual), 전자 신고방식 PDE (Pertukaran Data Elektronik),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sup>490)</sup>
- PEB 제출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승객, 승무원, 개인물품은 PEB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sup>491)</sup>
-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500만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됨<sup>492)</sup>
-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취소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수출신고서상 품목 및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최소부족 관세액의 100%, 최고부족 관세액의 1000%의 벌금이 부과됨<sup>493)</sup>

488) Global business guide, [http://www.gbgingonesia.com/en/main/business\\_guide/2016/export\\_procedures\\_in\\_indonesia\\_11439.php](http://www.gbgingonesia.com/en/main/business_guide/2016/export_procedures_in_indonesia_11439.php)(검색일자: 2018. 11. 15)

489)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A조

490) KPPBC TIPE PRATAMA PANTOLOAN, <http://bcpantoloan.net/layanan-ekspor>(검색일자: 2018. 11. 18)

491)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A조

492)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A조

49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82조

-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다음의 목적으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PEB 신고서 제출 전까지 납부해야 함<sup>494)</sup>
  - 국내수요 충족 보장<sup>495)</sup>
  - 천연자원 보호
  - 국제시장에서 특정 물품의 급격한 가격인상 대비
  - 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 수출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는 가죽, 목재, 라탄,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광석 또는 원료 등이 있음

〈표 3-11-1〉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적용대상과 세율

(단위: %)

| 구분                       | 세율                                |          |
|--------------------------|-----------------------------------|----------|
| 가죽과 목재                   | 소·양·염소 원피                         | 25       |
|                          | 소·양·염소의 무두질한 가죽                   | 15       |
|                          | 베니어용 단판                           | 15       |
|                          | 포장박스용 Wood Chips                  | 5        |
| 코코아두와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 코코아두(국제시세 또는 국내시세기준)              | 0 ~ 15   |
|                          | 팜열매                               | 40       |
|                          | 팜오일 케이크 및 기타 팜열매·팜씨의 잔류물          | 20       |
|                          | 기타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기준가격과 종류별) | 0 ~ 22.5 |
| 광석 또는 그 원료               | 금속광물(철광석, 망간석, 구리석 등 21종)         | 20       |
|                          | 비금속광물(석영, 석회석 등 10종)              | 20       |
|                          | 석재(대리석, 화강암 등 34종)                | 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494) KPPBC TIPE PRATAMA PANTOLOAN, <http://bcpantoloan.net/layanan-ekspor>(검색일자: 2018. 11. 18)

49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A조

- 수출통관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함<sup>496)</sup>
  - 상업송장
  - 보험증서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허가서
  -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of goods, PEB)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
  
- 세관은 온라인상으로 수출자가 제출한 신고서류를 심사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수출 승인(NPE)을 수출자에게 통보함
  - Tanjung Priok, Tanjung Perak, Soekarno, Tanjung Emas, Belawan in Medan 세관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의 80%를 처리하고 있음
  
- 수출물품 검사비율은 10%이며 다음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음<sup>497)</sup>
  - 재수입물품
  - 수입 시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
  -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물품검사 후 물품을 선적하면 통관이 마무리됨

---

496) ASEAN Briefing, <https://www.aseanbriefing.com/news/2018/03/29/import-export-procedures-indonesia-best-practices.html>(검색일자: 2018. 11. 16)

497)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8/PMK.04/2011 제8조

## 참고문헌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곽성일·김제국,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제16-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2.
-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 2.
-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원산지결정기준』, 2010.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2017. 6.
-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시 부과되는 제반 세금의 종류와 추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2014. 3.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외국의 통상환경』, 20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 결과」, 2014. 2. 28.
- \_\_\_\_\_,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 개최」, 2018. 8. 24.
- \_\_\_\_\_,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2018. 11. 15.
-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2017. 12.
- 외교부, 『인도네시아 개황』, 2017. 10.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4.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2015. 12.

- 한국무역협회,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 『Trade Brief』, 제67호, 2015. 12. 31.
-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한-인도네시아 CEPA』, 2018. 11
- 한국식품연구원, 『2016 할랄 식품시장동향 인도네시아』, 2016.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SOSIALISASI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17. 3.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5,” 2016. 1.
- \_\_\_\_\_,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6,” 2017. 1.
- \_\_\_\_\_, “Statistic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Based On Capital Investment Activity Report by Sector 2017,” 2017.
- \_\_\_\_\_,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2017,” 2018. 1.
- \_\_\_\_\_,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I and January-June 2018,” 2018. 8.
- Deloitte, “Indonesian Tax Info,” 2016. 3.
- Embassy of Pakistan, “Import Procedures of Republic of Indonesia,” *A Guide Line for Pakistani Companies*, 2016. 4.
- Latifah Dwi Handayani·Raden Didiet Rachmat Hidayat, “THE ROLE OF BONDED LOGISTICS CENTER TO ESTABLISH INDONESIA AS THE HUB OF COLD CHAIN AND HALAL LOGISTICS BUSINESS, ” *Advances in Engineering Research*, 2018. 1.
-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 수입규제통합센터, <http://ntb.kita.net>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  
코트라, <http://news.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http://www.beacukai.go.id>  
ASEAN Briefing, <https://www.aseanbriefing.com>  
CKB, <https://www.ckb.co.id>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DGNEP, <http://djpen.kemendag.go.id>  
Global business guide, <http://www.gbgindonesia.com>  
IMF, <http://www.imf.org>  
KPPBC TIPE PRATAMA PANTOLOAN, <http://bcpantoloan.net>  
OSS Republik Indonesia, <https://oss.go.id>  
Tanjung Emas 세관, <http://bctemas.beacukai.go.id>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인도네시아 편 -

---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정다운 · 양지영 · 이재선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7-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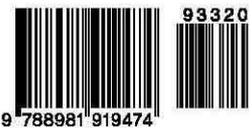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9 788981 919474

ISBN 978-89-8191-947-4